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연구·조사·변론활동 등을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만들어졌다.

민변은 그동안 비민주적 법률과 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

최근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나라 법률가단체들과 연대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보호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8 현대오피스텔 404호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론▶ 제도보다 양심이 더 문제다 / 한승천

특집▶ 한국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한국 법원의 위기상황과 법원개혁의 방향 / 정종섭

검찰, 일이 깨어지는 아픔 / 안상수

사법부의 과거 청산과 개혁 / 최병모

우리 사법이 걸어온 길과 앞날의 과제 / 이범렬

특별기고▶ 화상: 황인철과의 40년 / 김병의

세계인권대회 보고▶ 세계인권대회와 한국민간단체의 활동 / 천정배  
아시아 지역의 국가보안법 기관 / K.S. Venkateswaran

세계의 인권단체▶ 아시아 와치 / Sydney R. Jones

논문▶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 / 김선수

판례평석▶ 국정교과서제도 한법소원 사건 / 이석태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과 단체협약 변경명령 / 이경우

●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희고 ② ● 피고인석에서 바라본 재판

● 우리 말로 바로 잡아본 헌법 ② ●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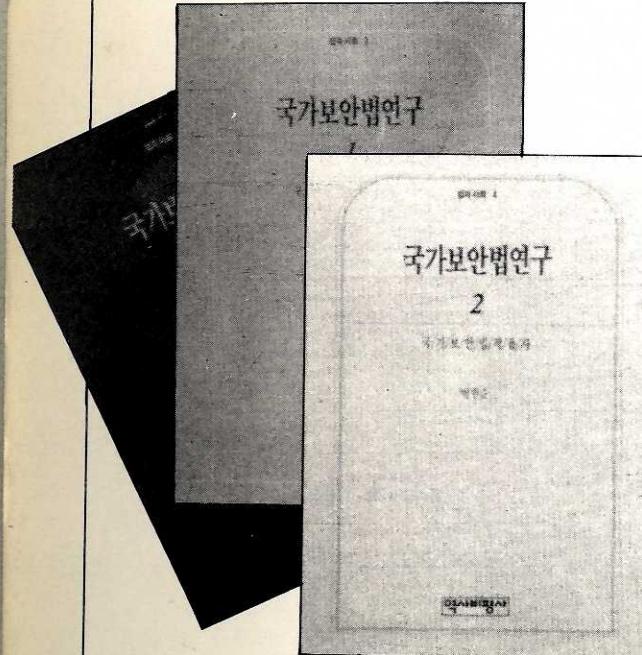
역사비평사

‘막걸리 국가보안법’을 아십니까?

법과 사회

# 국가보안법연구 1 · 2 · 3

박원순



8년간 인권변호사로서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저자가 손과 발과  
뜨거운 가슴으로 쓴  
국가보안법의 산 역사!!

## ① 국가보안법 변천사

1권, 320쪽, 5,300원

## ② 국가보안법 적용사

2권, 605쪽, 9,800원

## ③ 국가보안법 폐지론

3권, 259쪽, 5,300원

역사비평사

서울 중구 풀동 2가 120-1  
전화(02) 279-0157~0158

역비의 책 15

왜 다시 친일부역배를 따지는가?

# 인물로 봄 친일파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편

영구보관



이완용·송병준/이광수·최남선/  
박홍식·문명기/김활란·모윤숙/  
김은호·심형구

신국판/284쪽/값5,400원

친일파는 아직도 살아있다!!

친일부역배 청산문제는 민족정기를 세우고 조국을 배반한 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응징을 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는데 있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경제·여성·문화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명인사들의 친일행적들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친일의 길을 걸었으며 이들이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산파로서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역사비평사

서울 중구 풀동 120-1  
전화(02)279-0157~8

반년간지 / 1993·제2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차례

시론▶ 제도보다 양심이 더 문제다 / 한승현	10
<b>특집 한국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b>	
한국 법원의 위기상황과 법원개혁의 방향 / 정종섭	15
검찰, 알이 깨어지는 아픔 / 안상수	44
사법부의 과거 청산과 개혁 / 최병모	68
우리 사법이 걸어온 길과 앞날의 과제 / 이범렬	79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 ② / 유현석	93
특별기고▶ 회상 : 황인철과의 40년 / 김병익	106
세계인권대회 보고▶ 세계인권대회와 한국민간단체의 활동 / 천정배	136
아시아지역의 국가보안법 개관 / K. S. Venkateswaran	153

세계의 인권단체▶ 아시아 와치(Asia Watch) / Sydney R. Jones	171
판례평석▶ 국정교과서제도 현법소원 사건 / 이석태	175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과 단체협약 변경명령 / 이경우	208
논문▶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 / 이선수	222
피고인석에서 바라본 재판▶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재판 법정유감 / 유원호	243
전대협 제5기 의장단사건 변론기 / 안상운	259
우리 말로 바로잡아 본 헌법 ② / 이오덕	282
<b>자료</b>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단체 선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이에나가 교과서 검정소송사건 의견서 / 지명관	305 325 356

# 새롭게 쓴 한국고대사

김기홍 지음

건국대 시학과 교수



고대사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국사를 가르치는 중고교 선생님들도  
자신있게 추천하는  
한국고대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

여러분은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스·로마의 역사에 대해서는 줄줄 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역사,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고대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서 잠을 잤으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여기 한국 고대인간이 태어나 자라고,  
사랑하고, 일하다 죽어가는 삶의 전과정과  
고대사회, 고대국가에 대한 모든 것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사비평사

## 책을 내면서

인권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조촐한 이름의 단체를 만든 지도 벌써 5년여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민변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대다, 비판이다, 충고다 하며 권력자들에게 삶은 소리만 하는 분명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

더구나 올해 초(2. 25)에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마치 이 나라의 수많은 인권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 것처럼, 인권운동 단체들의 목소리를 대충 귀등으로 흘려버리는 듯한 분위기를 접하면서 착잡한 느낌을 멀칠 수가 없다.

개혁의 이름 아래 한국의 인권상황은 과연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이른바 시국사법과 양심수의 숫자가 많이 줄고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좀 가벼워졌다 고 해서 이 땅의 인권문제는 이제 좀 뒷전으로 밀어놓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 앞에는 아직도 반민주악법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고, 인권탄압의 명소인 안기부가 아직도 수사권을 움켜쥐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그대로이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도 여전히 해묵은 안보논리와 경제우선주의의 엄호 아래 질긴 수명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개혁의 실체는 무엇이며 변화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지난 6월 비엔나에서 열렸던 세계인권대회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지구촌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의 실상과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 느낀 점의 하나는 이제 세계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

는 인권문제의 갈등요인은 주로 민족문제, 민족간의 대립으로 인한 영토분쟁 그리고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분규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체제나 이념분쟁이 아직껏 인권문제의 갈등요인으로 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가 거의 유일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서글픈 사실의 확인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해묵은 이념문제의 족쇄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념대립의 문제, 남북분단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 민족의 앞날은 밝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한 혈통의 단일민족으로 민족이나 부족간의 영토싸움도, 서로 다른 종교간의 극한적인 대립 같은 것도 없다. 남북의 분단, 이념의 갈등문제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인권선진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아련한 희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비엔나 인권대회의 수확이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제도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하에서 여러 측면으로 개선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또한 인정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참으로 이제는 더이상 꾋발 선 눈빛으로 목청 높여 외치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웃을 주변의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힘을 합하여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어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인권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관심이 어떠하건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용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 앞에 열려울 것이라고 믿는 그 인권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이라는 자그마한 책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함성을 전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위해 좋은 글을 써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짐필과 번역을 위해 고생하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편집과 출판을 맡아 힘써주시는 역사비평사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 시론

# 제도보다 양심이 더 문제다

한 승 헌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슨 일로 분쟁이 격화되어 마침내 소송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재판은 천국 쪽의 패소로 끝났다. 뜻밖의 결과에는 뜻밖의 원인이 있었다. 천국에는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종을 앞둔 신부님이 누구의 문병도 거절하시더니 한 법조인의 간청만은 받 아들였다. 대단한 예외였다. “저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그 법조인이 감격한 어조로 사의를 표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고마워할 것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 같은 법조인들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읽고서(듣고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평탄하지가 못하다.

이 나라의 법조인들이 국민의 비판과 규탄의 표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산발적이거나 일과성의 목소리에 그쳤다. 특히 유신 이후 수많은 시국사건 재판을 강행하면서,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판사들조차도 국민과 헌법의 기대를 저버리고 추종과 보신(保身)에 ‘열성’을 발휘한 탓으로 재조법조가 원색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自省) 개혁의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목소리’에 그쳤을 뿐이다. 1970년과 1988년에 있었던 두 번의 사법파동의 뒤끝이 어떠했는가를 되새겨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법부는 ‘사법

부’라는 명부만으로 안팎으로부터의 비판에 귀를 막거나 방패를 쳤다.

그처럼 불감증세를 견지하던 사법부가 지금 여론과 언론의 비판 앞에 그동안 가리웠던 나신(裸身)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다. 문민시대를 표방하는 정권 아래서 군사통치의 사법적 장식에 공연한 인물들을 거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백번 논리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 국정의 여러 분야에 개혁 사정(司正)의 희오리바람이 세차게 불어쳐도 사법부만은 새삼 ‘독립’이라도 쟁취한 듯이 버티고 있었다. 정치판사는 물려가라는 요구에, “정치판사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 정치판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판사더러 물려가라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법관의 신분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라고 응수한다.

역시 사법부는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다만 양심과 염치가 결핍되어 있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정치판사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사건을 맡았대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비위와 눈치에 합당한 정치적 판결을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시국사건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사람을 지목하는 뜻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 정작 사법권의 독립이 짓밟힐 때는 그것을 외치지도 지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허물을 문제삼아 도에 넘칠 만큼의 비난을 가한 데는 평소 사법불신의 감정이 증폭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산공개 과정과 정치판사 인체론은 정권 앞엔 모래성이요, 국민 앞엔 철옹성 같은 사법부의 실체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재력의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투기성 부동산 취득까지 드러나자 법관의 도덕성마저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법관의 재산을 문제삼아 도에 넘칠 만큼의 비난을 가한 데는 평소 사법불신의 감정이 증폭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부동산 때문에 옷을 벗었건만, 그보다 훨씬 본질적 문제인 ‘정권추종재판’을 뉘우치고 물려간 사람은 법원에도 겸찰에도 없다. 아직은 없다. 재판 때마다 ‘개전(改悛)의 정’을 중요시하는 법관들이 자신의 행위를 두고서는 개전의 정을 보일 줄 모른다. 일관되게 부인하는 피고인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 엄하게 다스리는 법관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정치재판 혐의에는 극구 부인을 서슴지 않는다.

사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했는지의 여부는 누구보다도 판사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러므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처신이 일차적인 기대치가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자진 사퇴는 법관 신분보장 규정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만도 하다. 새로 들어선 법원이나 겸찰의 수장(首

장)은 나름대로 '반성과 개혁'을 강조했지만, 취임사나 취임 소감을 그대로 믿기에는 우리의 아픈 경험, 속은 경험이 너무도 심각했다.

과연 김도언 검찰총장은 일부에서 제기한 시국사건 담당 공안검사의 인책 주장에 일축하고 "그 시대 상황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검찰총장 밑에서 앞으로도 이 나라의 검찰이 '그 시대상황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검찰의 개혁은 말잔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집권세력의 이익과 주문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를 '검사의 참다운 소임'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김총장 취임 후의 첫 검찰간부 인사를 보면 새 시대의 검찰에 합당한 인적 청산은 흔적도 없으며, 김총장 자신이 '검찰에 요구되는 과제'라고 내걸었던 "철저한 자기성찰과 부단한 자기혁신" 역시 부도(不渡)의 조짐을 보였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권력 시녀성 전통을 계승해나갈지는 여전히 분명치가 않다.

한편 사법부 쪽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이해적 장고(長考) 끝에 새로 임명된 윤관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관련된 현실인식이 비교적 철저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사법권의 독립' 등은 '품목' 그 자체로는 역대 대법원장이 두루 써먹은 단골 메뉴에 속하거니와 문제는 그런 각오가 빈 말에 그치지 않고 얼마만큼이나 실천에 옮겨지느냐에 있다. 취임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사법부의 위상에 대해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한 심경"이라고 실토했 후 "사법부의 대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부의 위기상황은 제도의 탓도 아니며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소될 바도 아니다. 이 말은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가벼이 보는 뜻이 결코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매사가 법관의 양심과 의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령 법관계급제 때문에 판사들이 승진과 보직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소신있는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승진이나 보직의 불리함을 면하고자 소신을 굽히고 압력이나 청탁에 흔들리는 법관이라면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양심을 결고 재판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행여 제도의 결함에서 면죄부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법관다운 신념의 결핍을 문제삼아 자책해야 한다.

사법부의 인적 청산에 관하여 신임 윤대법원장은 "정치권력에 영합했거나 영전의 기회로 재판을 이용한 법관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을 더이상 맡을 수 있는지를 따져 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진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한

데서 이런 한계를 예감하게 되는데, 자칫 양심적인 법관만 사임을 하고, 물러나야 마땅한 인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변호사의 비리와 타락에 대해서는 미처 언급할 겨를이 없거니와 적어도 지난 수임료 등 금전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정화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보겠으며 제조법조만 탓하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조인들은 얼마쯤의 좋은 머리와 행운과 권능을 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추구하며 일해왔는지를 되새겨보아야 한다. 군사정권을 위한 기능공으로, 압제자들의 탄압을 합리화하는 하수인으로, 출세주의의 챔피언으로 전락한 나머지, 견제해야 할 것에 영합하고, 섭겨야 할 대를 향하여 교만을 부린 일은 없었던가. 물론 법조인도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삶의 방식과 주안점이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약수로서의 어떤 소명(召命)의식만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실천적 요체는 권리에 대한 견제와 인권보호, 올바른 법치주의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은 버리고 벼려야 할 것을 추구한 일이 없었는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일찍이 라드브르흐는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법의 궁극적 가치로 보았다. 그러나 지난날의 일그러진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는 그 어느 것도 구현될 수가 없었다. 오로지 벌거벗은 권력과 무력에 의존하는 변태적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강요되었을 뿐이며, 정의의 실현은 실체면에서나 절차면에서 무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법이 정의실현의 이기(利器)가 아니라 불의를 지키는 흉기 노릇을 더 많이 감당했다는 점을 깊이 깨닫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법조인들은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통스런 거듭남을 치러야 할 것이다.

천국이 지옥한테 패소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신부님을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법조인으로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변호사)

특집 : 한국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 한국 법원의 위기상황과 법원개혁의 방향

### 제3차 사법파동에 대한 분석

정 종 섭

건국대 법대 교수

법관의 정신은 모든 회생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서라도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 Gustav Radbruch

판사들은 판결로써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하기도 하였고,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동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법부는 고립되어 서로를 불신하기도 하였고, 서로를 경원하기도 하였으며, 서로를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법부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 중에서

#### 1. 개혁시대의 국민적 합의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의 전영역에 걸친 광범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이후 국민을 억압하였던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축적되어온 구악(舊惡)을 일소하는 것을 의미했다. 김영삼 대통

령은 취임후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에 관하여 '제2의 건국', '혁명에 준하는 개혁', '지속적인 개혁'이라고 천명하였다. '제2의 건국'은 개혁의 성격을 말해 주고, '혁명에 준하는 개혁'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혁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개혁'은 개혁의 방법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견해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완수라는 과제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국민들 역시 이에 동의하고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어도 좋다고 하며 호응하고 있다.

개혁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하여 재산을 공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에 비추어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정치사회에서 고백과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국가개혁운동을 위해서부터 선도한 것이다. 이 과정은 정치권을 강타하였다. 정치권에 재산공개운동이 확산되어가면서 새로 임명된 각료들이 물러나는가 하면, 시민사회에까지 그 여파가 미쳐 종교단체까지 재산공개운동에 참여하는 상황을 창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법원이었다. 그 거부의 논리는 재산을 공개해야 할 실정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자율적 운동에 대하여 법을 들고 나와 맞섰다. 당시 재산공개운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패를 최결하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자이고 백이고 따라서 자율을 근거로 전개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 상충부는 근거가 되는 실정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이때의 재산공개운동은 단순히 재산을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와 해묵은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는 운동이라는 합의를 강하게 띠고 있었으므로 법원 상충부의 거부는 곧 그러한 신정부의 과거청산의 물결이 법원으로 물결쳐오는 것에 대한 완강한 저지로 보였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언론이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근거가 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때에는 법원 상충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론은 지켜보게 되었다. 드디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고 재산공개가 시작되자 판사들의 위법행위와 부도덕한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었다.<sup>1)</sup> 재산공개운동때 법원이 내세웠던 '법에 따라서 하자'는 논리를 이번에는 여론이 법원에 요구하였다. 법원은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

1) 재산공개 결과 여론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과 그 사실에 관한 자세한 것은,『조선일보』1993년 9월 8일자, 31면;『조선일보』1993년 9월 9일자, 30면, 31면;『조선일보』1993년 9월 11일자, 30면;『한겨레신문』1993년 9월 8일자, 5면;『한겨레신문』1993년 9월 9일자, 1면;『한겨레신문』1993년 9월 11일자, 3면;『한겨레신문』1993년 9월 13일자, 15면 참조

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sup>2)</sup>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1993년 9월 10일에는 드디어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3)</sup>

신정부가 출범한 후 국민이 개혁을 요구하는 때, 개혁시대에 걸맞게 법원에서도 자기성찰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역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좁은 안목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였다. 여기에는 단순히 일과성의 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점은 앞으로 법원이 자기변신을 하여 '국민의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개혁시대에 전개된 숨가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법원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맥락과 생점, 그리고 개혁을 둘러싼 현실적 역학관계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법원개혁에 관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과 논의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3차 사법파동

한국 법원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병폐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거론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때워나갔다. 그런 과정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법원의 권위는 급전직하로 추락하여갔다. 법원의 자성과 개선을 위한 법원내 일부 판사들이 간간히 개선을 위한 약간의 노력도 하였지만 법원 상충부는 번번이 좌천

2) 『조선일보』1993년 9월 12일자, 19면;『한겨레신문』1993년 9월 12일자, 1면, 3면 참조. 이 와중에서 광주지방법원장(朴英植)은 9월 13일 사임하였다. 『조선일보』1993년 9월 14일자 31면 참조. 또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정판사(趙胤)는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여 '저는 재산공개와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혹 저의 양심을 의심해 재판받기를 거부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조선일보』1993년 9월 11일자 30면;『한겨레신문』1993년 9월 10일자, 19면 참조

3) 이 무렵인 9월 13일에는 검찰총장(朴鍾喆)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선일보』1993년 9월 14일자, 1면 참조. 이어 9월 14일에는 서울고등검사장(金有厚)과 대검찰청 총무부장(張應洙)이 사퇴했다. 『조선일보』1993년 9월 15일자, 31면 참조

이나 사임이라는 보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은 당해 판사들에 대한 웅정이라는 효과를 거두었을지는 몰라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법원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특히 그러한 조치를 대법원이 하면서 대법원은 판사들의 권한과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비쳐지기도 했다. 법원의 구조적 모순은 때로 국민이 재판받기를 거부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는가 하면 때로는 당사자들의 야유 속에 법관이 수모를 겪는,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법원의 위기 상황까지 야기시켰다. 그러나 고착화된 법원 내부의 모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방희선(方熙宣) 판사는 법관으로서 진지한 고뇌 끝에 1992년 8월 법원의 자성과 개혁을 용기있게 촉구하고 나왔다. 그에게 쏟아진 온갖 모함과 비방 속에서 그는 신념을 가지고 설득력있고 논리정연하게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법원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sup>4)</sup> 이러한 방판사의 노력에 대하여 주위의 판사들은 동조 또는 비방하면서 보고만 있었다. 언론은 방판사를 지원하였고, 이 사실을 아는 국민들의 다수도 방판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드디어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통치하던 권위주의 통치가 끝나고 민주화를 위하여 줄곧 야당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해온 김영삼 후보가 국민의 손에 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개혁은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나갔다. 정치권, 군, 관료조직 등 '위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법원을 향해 서도 국민들은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가능한 한 기존의 행태를 유지해보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국민들의 비난은 법원에 집중되어갔다. 법원으로서는 숨막히는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더욱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4) 법원개혁을 위하여 외로운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의 잠을 깨운 방희선 판사의 그간의 노력은 다음의 문헌을 통하여 그 일말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방희선, 「사법부여, 나는 통곡한다」, 『신동아』, 1992년 10월 호, 342쪽 이하; 방희선, 「권위주의와 관행, 무소신으로 안된다」, 『신동아』, 1993년 5월호, 320쪽 이하; 방희선, 「법관은 판결로만 말하는가」, 『법과 사회』, 제8호 (1993. 7), 21쪽 이하; 『주간조선』, 1992년 7월 12일자 68면, 69면; 『시사저널』, 1992년 9월 10일자 24면 이하; 『법률신문』, 1992년 9월 28일 3면; 『동아일보』, 1992년 10월 1일자 12면; 『시사저널』, 1992년 10월 29일자 8면; 『한겨레신문』, 1992년 12월 11일자 10면; 『한겨레신문』, 1992년 12월 30일 13면; 『시사저널』, 1992년 12월 31일자 42면 이하; 『한겨레신문』, 1993년 1월 30일자 1면; 『시사저널』, 1993년 2월 11일자 36면, 96면; 『한겨레신문』, 1993년 2월 15일자 11면; 『광주매일신문』, 1993년 2월 15일자 11면; 『전남일보』, 1993년 6월 15일자 7면; 『한겨레신문』, 1993년 7월 1일자 14면; 『광주일보』, 1993년 7월 3일자 5면 등.

간의 과거지사가 세인들의 입에 심심찮게 오르내렸다. 그만큼 법원을 둘러싼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였다. 법원의 개혁과 법원 상충부 인사들의 퇴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만 관심의 초점으로 남았다.

1993년 4월 29일 드디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단독 김종훈(金宗勳) 판사가 법원 상충부에 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그 내용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다.<sup>5)</sup> 그는 「개혁시대의 사법부의 과제」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먼저 법원의 과거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법원의 독립을 위하여는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내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는 의견서에서 법원 내부의 개혁이 시급함을 진지하고도 솔직한 심경으로 펴력하였는데, 제3차 사법파동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 법관들 중 누가 감히 국민들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이 위 헌법정신에 투철하였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안기부(중정), 검찰, 심지어는 기무사(보안사) 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재판권을 행사하였는가. 인사권을 통한 간접통제는 없었는가. 왜 법관이 국보위나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나가 있었는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생긴 배경, 그 관할이 거듭 바뀌면서도 여전히 안기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의 대응기관으로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수석부장이 형사합의 및 단독항소부의 재판장을 겸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권이 독립되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고, 나아가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법관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관료주의이고,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것은 사법부 내부의 민주주의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능률과 편의, 신속이라는 가치를 너무 앞세우느라 가치의 전도는 없는가. 법관계급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급속히 비대해가는 일면, 법관이 자신의 의사를 사법부 내부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토의,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우리의 현실, 개인이기주의에 더하여 향판(鄉判)이니, 경판(京判)이니 백판(白判), 흑판(黑判)이니, 민판(民判), 형판(刑判)이니, 유학파(留學派), 비유학파(非留學派)니, 행정처 출신, 비행정처 출신이니 하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법관 사이의 동

5) 『동아일보』, 1993년 4월 29일자 29면; 『조선일보』, 1993년 4월 29일자, 31면 참조

료에가 사라지고, 법률보다 예규(例規)를 소중히 여기고, 윗사람 눈치나 살피면서 기계적으로 처리전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우리의 자화상, 마루타.<sup>6)</sup>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법원개혁에 대하여 누구나 한마디씩 하게 되는 분위기가 도래하였다. 그와 함께 법원 주위에서도 법원 상충부의 대응을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었다. 법원 주위에 이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서 4월 29일 대법원은 개혁에 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사무장의 법원 출입허가제, 판사와 변호사의 골프교제 규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개혁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sup>7)</sup> 이날은 김수환 추기경조차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날이기도 하다.<sup>8)</sup> 김판사의 의견서가 보도되자 언론도 법원의 개혁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4월 29일 대법원이 제시한 법원개혁안이 미온적임을 지적하고 법원의 체질개선을 위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sup>9)</sup>

5월 3일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였다. 여기서 대법원은 사법부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법관회의의 제도적 확립, 법관의 직급구조 개선, 변호사없는 소송당사자 등에 대한 배려, 비리의 제거와 부조리 척결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것은 법원의 문제는 법원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5월 14일에는 대법원의 태도가 지엽적인 문제만을 거론하고 있다 고 여간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었다. 그들은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을 논의하려면 개혁이 필요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한 반성과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sup>10)</sup> 5월 19일에는 국내 법률가들의 최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李世中)가 대법원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들은 평소의 체험을 통하여 법원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집단이었다.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근원적 개

6) 김판사의 의견서 전문은 『법정신문』 1993년 5월 10일자, 1면에 실려 있다.

7) 『동아일보』 1993년 4월 30일자, 30면 참조

8) 『동아일보』 1993년 4월 30일자, 30면

9) 예컨대 『동아일보』 1993년 5월 1일자, 3면 사설

10) 이들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자세한 것은 禹鍾昌, 「서울민사지법 소장 판사들 '사법부개혁' 주체로 나섰다」, 『조선일보』 1993년 6월 24일자, 24면 이하 참조. 이 부분을 역사에 바로 남기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당사자들을 만날 수 없어 위 글에 의존한다.

혁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밝힌 사법부개혁 방안을 보고 우리는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스며있는 권위주의시대의 잔재와 비민주적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은 사법부에 대하여도 구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과거 군사문화에 의존한 권위주의시대 사법부는 권력의 위세에 스스로 움츠러들고,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기보다는 먼저 현실에 영합하려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투철한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내부에서는 폐기있는 법관들로 하여금 자조와 불만을 쌓게 하고 외부로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 오늘날 사법부내의 여러가지 부조리와 비리의 원천은 아마도 사법의 관료화와 개혁지향적인 의식과 자세의 결여에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법부개혁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해결이나 근원적인 개혁에는 전혀 접근하지 아니한 채 한낱 지엽적인 문제만을 거론하고, 특히 변호사가 사법부부조리의 원천인 것처럼 내세운 것은 실로 본말을 전도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사법부개혁 방안이 발표된 후, 소장법관들이 근원적 개혁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법부의 전전한 발전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며, 대법원은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용하기 바란다. 사법부는 과거 과행적 사법운영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사법부내에 내재된 구조적인 병폐와 인사비리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권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sup>11)</sup>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 30여 명이 모임을 가지고 법원개혁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등 법원내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점차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 5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신평(申平) 판사도 법원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비장한 심정에서 법원개혁이 필요한 근본적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여 언론에 밝혔다. 그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점차로 견고해져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 사법부의 관료화와 계급화를 현재 사법부 병폐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계급주의와 서열주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태를 고백하였다. 그의 고백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출세욕에 들뜬 일부의 정치판사들이 후배법관들을 권력을 가진 자의 의사에 영합

11) 이 성명서의 전문은 『인권과 정의』 제202호(1993. 6), 126쪽 이하 참조

하도록 세게 다그치며 자신은 영달의 길을 걸어왔고, 대부분의 법관은 별 거부감 없이 이에 따라온 것이 얼마전까지의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었다. 이 왜곡된 현상을 무리없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관조직을 굳건한 관료화·계급화의 체계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법부에서는 획일적 수직적인 상명하달식의 사고방식이 횡행하는 관료화·계급화의 오래된 병폐가 떳떳하고 양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며 모나지 않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식으로 법관들을 몰아왔다. 참신하고 고상한 정열과 순수한 이상은 매몰되어버리고 그 자리는 자조와 불만, 반문화적 자태가 차지했다. 이러한 지배적 분위기는 많은 전도 양양한 젊은 법관들에게서 용기과 창조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혼까지 앗아가버렸다.<sup>12)</sup>

언론에서도 대법원의 태도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13)</sup> 상황이 긴박감을 더해가는 상태에서 6월 7일에는 제2차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여기서는 대법원의 개혁안에 대하여 각급 법원에서 논의한 내용을 법원장들이 전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오고간 법원장들의 개인적 발언을 보면 대부분이 법원의 개혁논의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법원 상충부는 소장판사들의 움직임을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장들에게 각 법원의 소속법관들이 돌출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막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당시 공개회의에서 법원장들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발언을 대략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판사들이 판결만 잘하면 되지 대체 뭘 의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속셈은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테 있는 것 같다./여태까지 법관의 전의사항은 물론이고 신분상의 사소한 애로사항까지 하의상달이 안된 적이 있나 굳이 이런 공식 의사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하나./직급제를 없앨 경우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판사들이 '내가 언제 서울 가나' 하는 것만 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시골에 가면 서울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경향교류제도와 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다./법관들의 많은 요구를 보면서 내 몫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이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완전한 법관의 판결을 원하고 판사는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사법은 그 속

12) 신평 판사의 고뇌에 찬 고백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신평, 「법관조직의 관료화·계급화가 사법부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주간조선』 1993년 5월 27일, 36쪽 이하 참조

13) 예컨대 『시사저널』 제187호(1993. 5. 27), 36면 이하

성상 민주화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당파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조직을 파괴하고 뒤흔드는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된다. 소수 법관의사가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방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각 법원장들이 막아주기 바란다.<sup>14)</sup>

법원의 상황은 법원 상충부의 태도로 인하여 점차 본질적인 부분을 일탈하여 갔으며, 더 나아가 과거와 같이 법원개혁을 거론한 판사들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려는 상황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언론에서는 계속 사법부개혁의 근본문제 중의 하나는 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sup>15)</sup>

6월 26일 오후 그간 모임을 거듭해오던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 40명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투표에 부쳐 28명의 찬성(반대 10명, 의견불표명 2명)으로 「사법부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장(李元培)을 거쳐 대법원장(金德柱)에게 전달했다.<sup>16)</sup> 이때까지만 해도 문건의 내용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는데, 6월 30일에 이 내용이 일제히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일이 생겨나자 대법원은 당초에 일정이 잡혀 있었던 서울민사지방법원장과 대법원장간의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발끈하였다.<sup>17)</sup> 단독판사들은 의견서에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법원의 개혁이 철저한 자기반성과 과거청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법원내에 견고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도적 개혁의 방향에 대하여는, 첫째 대법원장의 인사독주를 견제하는 방안 마련, 둘째 법원의 관료화와 계급화를 방지하는 현행의 직급제도와 승진제도의 조정·폐지, 셋째 법관회의의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sup>18)</sup> 이 성명서는, 제1차 전국법원장회의 이

14) 이는 「2차 전국법원장회의에 나온 각 법원장 발언(요약)」이라는 문건에 의한 것이다. 이 문건은 공개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4절지 3장에 터져되어 있다. 요약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 인지는 단연할 수 없다. 원 회의록과 대조할 필요가 있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는 문서작성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5) 예컨대 『시사저널』 제189호(1993. 6. 10), 36면 이하

16) 『중앙일보』 1993년 6월 30일자, 1면, 3면; 『조선일보』 1993년 7월 1일자, 31면 참조. 이 과정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내에서는 일부의 부장판사들과 단독판사들간에 의견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종창, 앞의 글, 25쪽 참조

17) 崔英勳, 「정치판사 정치재판」, 『신동아』 1993년 8월호, 266쪽 이하 참조.

18) 「사법부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의 전문, 『법정신문』 1993년 7월 5일자, 1면, 2면 참조. 이 성명서의 전문은 『주간조선』 1993년 7월 15일호, 26면 이하에도 실려있다.

후 단독판사들이 자신들의 개혁의견서를 냈으나 제2차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의 상충부의 논의가 반개혁적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자 법원개혁의 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sup>19)</sup> 그래서 이 성명서에는 문맥 속에 개혁의 논의를 저지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퇴진을 합축하고 있었다. 이 성명서가 나오자 언론은 성명서의 행간에서 이 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그 함의를 보도하였다.<sup>20)</sup>

같은 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徐晨)의 발표를 통하여 집단행동으로 의견을 표출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sup>21)</sup> 이러한 단독판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중견판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반면 언론은 단독판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sup>22)</sup> 민주당도 단독판사들의 성명서 발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sup>23)</sup>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같은 날 정오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다음날 전국회장단연석회의를 긴급소집하기로 하였다. 7월 1일 낮 대한변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 별관에서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개혁과 개편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변호사회 회장단연석회의'를 열어 소장판사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대법원의 전면 개편과 '정치판사'의 자진퇴진, 개편된 수뇌부에 의한 개혁추진을 요구하는 「사법부의 개편과 개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sup>24)</sup>

19) 『조선일보』 1993년 7월 1일자, 30면 참조

20) 『중앙일보』 1993년 6월 30일자, 1면, 3면 ; 『동아일보』 1993년 7월 1일자, 1면, 3면 참조.  
이 성명서의 작성과정에서 판사들간에는 '정치판사'들에 대한 문제문제를 명시화할 것을 두고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것은 『중앙일보』 1993년 6월 30일자, 3면 참조

21) 『중앙일보』 1993년 6월 30일자, 3면 ; 『조선일보』 1993년 7월 1일자, 30면 참조

22) 『조선일보』 1993년 7월 1일자, 3면 ; 『동아일보』 1993년 7월 1일자, 3면 ; 『중앙일보』 1993년 7월 1일자 3면

23) 『동아일보』 1993년 7월 1일자, 1면 참조

24) 대한변협의 「사법부 개편과 개혁에 관한 결의문」의全文은 『중앙일보』 1993년 7월 2일자, 5면 참조. 이 결의문의 3개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하였던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사법권독립의 의지가 투철하고 사법부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사법부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간사 洪性宇)도 같은 날 상임간사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법원 수뇌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는, 현재의 법원 수뇌부는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권위주의정부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됨으로써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구태와 타성을 젖어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법원 수뇌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sup>25)</sup> 대한변협과 민변의 이러한 견해표명에서는 당면한 우리나라의 법원개혁은 인적 청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대한변협이 대법원장을 불신임하고 사퇴 등을 요구한 것으로서는 해방 이후 김병로(金炳魯) 대법원장, 1971년 1월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민복기(閔復基) 대법원장, 1985년 유태홍(俞泰興)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사태가 좀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어들자 대법원은 7월 1일 법원행정처장(安又萬)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한변협이 법적 근거도 없이 현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퇴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안처장은 이날 사법부에는 정치판사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며 강한 불만과 함께 정면으로 대한변협과 민변의 견해에 반박하였다. 대법원의 일부 중견판사들도 이에 동조하여 대한변협을 비난하고 나왔다.<sup>26)</sup> 이러한 논의의 와중에 법조계의 한편에서는 김대법원장이 과거 서울민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979년 김영삼 신민당총재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대법관 재임시에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의 보석을 허가해준 전력을 들어 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무성하였다.<sup>27)</sup> 그런데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단독판사 18명과 서부지원 판사들은 서울민사지방 단독판사의 성명서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원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였다.<sup>28)</sup>

대법원이 정치판사문제에 대하여 강한 불만과 함께 변호사계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서자 대한변협은 정치판사 30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였다.<sup>29)</sup>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을 중심으

25) 『동아일보』 1993년 7월 2일자, 31면 ; 『중앙일보』 1993년 7월 2일자, 23면 참조

26) 『동아일보』 1993년 7월 2일자, 31면 ; 『조선일보』 1993년 7월 2일자, 30면 참조

27) 이에 관한 것의 일면은 『동아일보』 1993년 7월 2일자, 2면을 참조

28) 『중앙일보』 1993년 7월 2일자, 23면 ; 『동아일보』 1993년 7월 3일자, 23면 참조

29) 『조선일보』 1993년 7월 3일자, 23면 참조

로 한 중견판사들의 일부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며 맞섰고, 대한변협은 사태의 핵심을 더욱 분명히 하여 7월 5일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사퇴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30)</sup> 언론이 파악한 「정치판사」의 범주는 박정희정권때 김영삼 신민당총재 직무집행가처분사건, 민청학련사건, 권인숙성고문 관련 재정신청 기각 결정, 유성환 의원 통일국시발언사건, 6공의 안기부 흑색선전물살포사건, 강기훈유서대필사건 등에 관여한 판사와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시국사건을 조정·통제한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및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청와대와 안기부의 창구역할을 맡아 각종 시국재판에서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한 판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sup>31)</sup>

사태가 본격적인 국면으로 치달자 7월 5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 각급 법관회의를 대법원규칙으로 명문화하고, 변호사의 판사실출입을 통제하며, 인사위원회에 각급 법원장을 포함시키고,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정도였다.<sup>32)</sup>

7월 16일에는 사법연수원 제23기와 제24기의 연수생들이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의 개혁과 사법연수원의 교육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조개혁과 사법연수원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사법연수원장에게 제출하였다. 이 건의문은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노력과 움직임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sup>33)</sup>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원 상충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을 벌면서 적당한 선에서 개혁요구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은 쉽없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일시가 다가오고 있었고, 국민들은 법원 고위층들에 대해 시선을 집중

30) 『조선일보』 1993년 7월 4일자, 19면; 『인권과 정의』 제204호(1993. 8), 151쪽 이하 참조

31)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한겨례신문』 1993년 7월 4일자, 14면 15면; 최영훈, 앞의 글, 268쪽 이하 참조

32) 『중앙일보』 1993년 7월 5일자, 1면 참조. 7월 12일 대법원은 5명의 대법관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그간의 법관인사위원회에 대구고등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을 포함시켜 6인에서 9인으로 늘렸다. 『법률신문』 1993년 7월 15일자, 1면 참조. 대법원은 7월 12일 「법관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절차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였고, 7월 19일에는 「사법제도심의위원회내규」를 시행하였다.

33) 『法曹改革과 司法研修院 교육제도의改善에 관한 우리의 의견』, 『법률신문』 1993년 7월 22일자, 4면 참조

시키고 있었다. 7월 20일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하였다. 새 법원행정처장에는 박우동(朴禹東) 대법관이 임명되었다.<sup>34)</sup> 인적 교체로 악화된 여론과 대한변협과의 심화된 갈등을 다소 누그러뜨려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변협은 8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변호사대회를 열었고, 거기에서도 법원의 개혁을 다루었다.<sup>35)</sup>

9월 1일 법원에는 62명의 판사가 임기가 만료하여 그들에 대하여 연임(재임용)발령을 내게 되어 있었다. 대법원장은 62명 중 신평 판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재임용하였다. 법원 상충부는 법관재임용제도를 이용하여 신평 판사를 법원에서 축출하였다. 그리고 당일 판사들의 전보발령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서울지역으로의 발령에서 광주지방법원의 방희선 판사를 제외시켰다.<sup>36)</sup> 사법파동으로 법원이 여론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재산공개 후 문제된 판사들과 대법관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9월 10일 드디어 대법원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법원과는 조화되지 않는 소수의 문제의 판사들로 인하여 법원은 반사법성(反司法性)과 반도덕성(反道德性)이라는 명예를 뒤집어쓰고 끝없는 추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었다. 법원 상충부는 개혁에 저항하다가 결국 법원의 발전을 갈망하는 다수 판사들의 명예까지도 한꺼번에 매도당하는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대법원이 미리 이 사태를 예견하고 법원개혁을 요구한 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남은 문제는 법원개혁에 알맞게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어 인적 청산을 이루어내고 제도의 개혁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때에는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9월 13일 대한변협은 즉각 「새 대법원장 인선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로 대법원장을 맡을 인물의 자격과 인선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의 내용은, 첫째

34) 『법정신문』 1993년 7월 26일자, 20면 참조

35) 趙準熙「司法府의改革」, 『인권과 정의』 제204호(1993. 8), 28쪽 이하 참조

36) 1993년 9월 20일 필자와 방판사의 전화통화에서 방판사는 자신이 이번에 서울로 발령이 되어야 다른 판사와 형평이 맞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방판사는 이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발령될 때에도 서울로의 발령에서 배제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방판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법원개혁을 주장하고 노력해온 그의 행동에 대한 법원 상충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권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용기가 있을 것, 둘째 사법부를 새롭게 개혁해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구비할 것, 셋째 전체 법조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일 것, 네째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청렴할 것, 다섯째 정당에 참여한 경력이 없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 등이었다.<sup>37)</sup>

누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 앉힐 것이냐 하는 것이 새로운 관심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은 열흘이 넘는 오랜시간 동안 고심한 끝에 9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유판(尹館)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sup>38)</sup> 국회는 9월 24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되어(투표자 268명, 찬성 252명, 반대 13명, 기권 2명, 무효 1명) 9월 25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sup>39)</sup> 10월 5일에는 최종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었다.<sup>40)</sup> 법원의 인적 청산과 제도개혁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전임 대법원장이 현법상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도한 개혁의 흐름 속에 말려 사퇴하고 새로이 등장한 대법원장에게 기대가 집중되는 현상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법원행정처장도 두번째로 교체되었다.

그런데 막상 인적 청산에서는 10월 12일에 있은 대폭적인 법관인사에서도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나 국회의 대법원감사석상 등에서, 사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명령이라든지, 정치권력에 영합했거나 판결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인사가 있다면 퇴진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의사표명이 있었음에도<sup>41)</sup>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것은 인적 청산의 방법에 대하여 더 철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10월 5일에 있은 대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법원 인적 청산문제가 주된 관심사항이 되었다.<sup>42)</sup>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재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신평

37) 대한변호사협회, 「새 대법원장 인선에 관한 우리의 의견」(1993년 9월 13일) 참조.全文은『인권과 정의』제205호(1993. 9), 143쪽 이하에 실려 있다.

38) 『한겨레신문』1993년 9월 24일자, 1면

39) 『조선일보』1993년 9월 25일자, 2면 참조

40) 『조선일보』1993년 10월 5일자, 31면 참조

41) 『한국일보』1993년 10월 6일자, 4면 참조

42) 강수림(姜秀琳), 이원형(李沅衡), 정상천(鄭相千) 의원은 법원의 개혁은 정치판사로 거론되고 있거나 재산공개로 물의를 빚은 판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문제판사들의 처리에 관하여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은 여론이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양심과 자율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중앙일보』1993년 10월 5일자, 2면; 『동아일보』1993년 10월 6일자, 4면; 『한국일보』1993년 10월 6일자, 4면 참조. 이 당시 『한겨레신문』은 1993년 10월 6일자

판사사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고,<sup>43)</sup> '정치판사'의 문제가 여전히 관심의 중심을 이루어 과거 정치와 관련된 행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의 명단이 대법원에 의하여 공개되었다.<sup>44)</sup>

제도의 개혁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추진하게 될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구상이 공표되었다.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관해서는 이미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설치하여 법원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법관과 '정치판사'에 대한 처리 등 인적 청산문제와 제도의 개혁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sup>45)</sup> 이러한 구상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법조계 14명, 학계 6명, 정치계 2명, 행정부 2명, 언론계 6명, 사회단체 대표 1명 등 3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구성되었다.<sup>46)</sup> 10월 10일 사법제도발전 위원회의 첫회를 마친 현승종(玄勝鍾) 위원장은 내실있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sup>47)</sup>

사설에서 "인적 청산을 통해 사법부개혁의 물꼬를 터야 하며, 인적 청산의 지름길은 부정축재 판사와 정치판사의 축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43) 10월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재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신평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였는데, 그곳에서 답변한 법원행정처장의 주장과는 서로 상치되었다.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자신의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세한 것은 『한국일보』1993년 10월 6일자, 30면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당연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는 한 개인의 신상문제를 넘어 현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 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판사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평판사의 인사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사들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다.

44) 『동아일보』1993년 10월 5일자, 31면; 『한겨레신문』1993년 10월 5일자, 19면; 『국민일보』1993년 10월 5일자, 30면 참조

45) 『조선일보』1993년 9월 27일자, 2면 참조

46) 그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조계 : 李永模(서울고등법원장), 李容勳(법원행정처 차장), 權誠(서울고법부장판사), 金湜植(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 河哲容(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李東洽(사법연수원 교수), 李德秀(법원공무원 교육원장), 金基錫(법무부차관), 金賢哲(서울고검장), 咸正鎬(변호사), 金昌國(변호사), 李載厚(변호사), 韓勝憲(변호사), 洪性宇(변호사) 학계 : 玄勝鍾(전 국무총리, 건국대 이사장), 金哲洙(서울법대 교수), 徐元宇(서울법대학장), 宋相現(서울법대 교수), 尹厚淨(이화여대 총장), 金光雄(서울대행정대학원장) 정치계 : 姜喆善(국회의원·민주당), 朴憲基(국회의원·민자당) 행정부 : 金英泰(경제기획원차관), 沈字永(총무처 차관) 언론계 : 李種奭(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安秉勳(조선일보 전무), 劉承三(중앙일보 논설위원), 張明秀(한국일보 심의실장), 李洋吉(MBC 해설위원), 崔東鎬(KBS 보도본부장) 사회단체 : 孫鳳鎬(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서울대사법대 교수) 『동아일보』1993년 11월 4일자, 2면 참조

### 3. 사건에 대한 평가

제3차 사법파동에서는 그동안 '사법부독립'이라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나라 법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국민들의 시야 속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현재 당면한 법원개혁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표출되었다. 그리고 법원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인 관련 역할인자(役割因子)들의 행태도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 이 문제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법원개혁을 둘러싼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1) 법원 내의 개혁주창 세력

제3차 사법파동의 전체과정을 보면 법원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하여 젊은 판사들은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미 맹희선 판사가 법원의 모순과 대법원장의 인사독재에 대하여 현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선도적인 노력이 있었다. 법원의 관료주의 분위기 속에서도 방판사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동조하는 판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왔다. 법원내에서는 상충부에 대한 불만이 성숙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물밑에서만 조용한 움직임을 계속하였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신정부의 개혁의 물결이 사회의 전영역으로 퍼져가고, 여론이 이를 뒷받침하는데도 유독 법원만이 개혁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여론의 비난 속에 고립되어가자 국가개혁의 당위성에 동조하면서 법원 상충부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흐름이 법원내에 생겨났다. 그 한 예가 김종훈 판사의 고백형식으로 된 법원개혁에 대한 전의였다. 법원이 여론의 비난 속에 있을 때 김판사의 이러한 행위는 주목받기에 충분하였다. 김판사의 고백 속에는 그간 국민이 모르고 있었던 법원의 모순이 많은 부분 드러났다. 법원 상충부는 무마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언론은 김판사의 문제제기를 받아 본격적으로 법원개혁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평 판사도 법원개혁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왔다. 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개별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원내에서는 뜻을 같

47) 『중앙일보』 1993년 11월 11일자, 17면 참조

이하는 판사들에 의해 목소리를 한데로 집중시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점차 성숙되어갔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중에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의 성명서 발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어 소장판사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포착되는 점은 최소한 단독판사급 이하의 소장판사들이 법원내에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법원개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였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서 한결같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중증에 걸린 법원의 관료화와 계급화 현상이었다. 이 점은 앞으로의 법원개혁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원내에서 앞으로 개혁을 주도할 세력은 바로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반성은커녕 정치판사퇴진을 요구하는 대한변협에 대하여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하며 나선 일부 중견판사들의 태도에서 명백히 나타났듯이 법원내에서는 현상태를 고수하려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개혁과정에서 개혁세력과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협과 대치하며 일부 중견판사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코 판사의 품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또 한번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죽했다. 법관의 덕성에 비추어볼 때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물론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도 법원개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동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앞으로의 법원개혁에서는 이러한 상호 상반되는 시각을 가진 판사들 간의 경쟁이 법원개혁의 성격과 정도를 규정지을 것이다. 이 점은 곧 법원개혁에서 '인적 청산'이 왜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법원개혁의 성공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현 정부출범 이후 개혁의 조감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법원내의 이러한 역학관계를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법원개혁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원내의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간의 갈등은 생겨나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개혁세력이 반개혁세력을 제압할 때 개혁은 성공한다. 이러한 개혁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들을 잘 분석하고 그 극복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개혁세력들이 법원 밖의 건강한 시민세력과 협동하여 법원의 기능을 침해·왜곡시키는 세력들의 저항을 저지시켰다.

## 2) 법원 상충부의 행태

법원 상충부는 처음부터 현정부의 개혁에 대하여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만큼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에 대하여도 주변적인 문제만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거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한 태도는 제2차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한 발언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의 발언에서도 대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법원개혁에 대하여 법조계와 국민들의 요구가 빛발치는 가운데서도 61명의 판사를 재임용하면서 신평 판사 한 명만을 법원에서 축출한 것이나 법원개혁을 촉구한 판사에 대하여 전보인사에서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절정에 이른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보복인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 비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법원의 관료주의와 대법원장의 인사독재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은 법적으로 인사권 남용이라는 위법의 문제까지 걸려 있고, 위법임이 확인될 때에는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제3차 사법과동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중 중대한 의미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특히 법관재임용제도는 헌법 제10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라는 문언에 근거를 둔다. 헌법규정에 의하면 법관재임용 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3항에서는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헌법의 규정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이것뿐이다. 재임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분명히 헌법은 재임용을 법률유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유보의 경우에 요구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법원조직법에는 빠져 있다. 재임용사항이 법률유보일 경우 중요사항은 무엇보다 그 재임용기준이다. 바로 여기에 법관신분보장의 허점이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독재를 허용하고 있는 뒷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는다고는 되어 있지만,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이고 지금의 법원의 분위기상 대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판사임명권을 견제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

국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법관의 생명이 좌우된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 헌법상의 두터운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장이나 일반 판사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판사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휘두르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관재임용제도는 평소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제도라고 주장해온 것인데도 그 스스로 이러한 제도를 비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 모순이다. 법원이 법의 논리를 편의에 따라 왜곡한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아무튼 이러한 법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재임용 제도를 운용하면 그래도 법을 개정할 때까지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신평 판사를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를 보면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평소 신평판사가 재판을 엉터리로 하거나,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흔히 보이듯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제43조의 판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sup>48)</sup> 그렇다면 신평판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는 법원개혁을 촉구한 행위를 패션하게 여겨 법원에서 고의로 축출한 보복인사하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현재까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는 저간의 사정을 상세히 확정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는 법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 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된 사람들의

48) 신평판사가 그간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낸 것만 놓고 보면, 삶에 있어 매우 진지하고 겸허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고뇌하며 법관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법관연수로 일본에 머물면서 고뇌한 생각을 담은 「일본땅 일본바람」(서울: 世代, 1990)이나 「주간조선」 1993년 5월 27일호에 실린 申平의 앞의 글이나 「주간조선」 1993년 6월 10일, 76쪽 이하에 실린 그의 글을 보면, 독자로 하여금 법원내에 과연 이 정도의 진지성과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있는지를 묻게 만들기에 죽하다. 겸손이 인간에게 최대의 미덕이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한자(有限者)인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는 이 글들을 보며 신평판사를 단죄한 사람들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이는 인사권행사의 위법을 운위하기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외로운 법관의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에서 인간미까지 상실하여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결국 그가 법관의 신분으로서는 마지막 남긴 말이 되었지만, 그의 말 중 진지하게 음미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되살려보기로 한다. “미국의 저명한 법이론가이자 대법관을 지낸 홀즈(O. W. Holmes)는 ‘자신이 가진 제1원칙들에 대하여 회의하는 것은 문화인의 표지이다’(To have doubted one's own first principles is the mark of a civilized man)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한번 끔찍으며 우리의 처지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증언을 통해 이 역사적 사실은 철저히 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듯이 제3차 사법파동에서 법원 상충부는 법원개혁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원 상충부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법원개혁을 성공시키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법원개혁의 순서와 방법, 주도세력을 규정지어 주는 부분이다.

### 3) 변호사계의 방향설정의 타당성 여부

변호사계를 대변하는 대한변협은 이번 파동의 전과정에서 시기적절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하여 변죽만을 올리며 시간을 벌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대법원의 사법부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법원개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힌 것은 내용이나 시기면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개혁에 대한 논의가 소장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 상충부와 일부 중견판사들의 제동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일 때, 정치판사의 퇴진을 촉구한 것은 이번 파동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993년 2월 27일 이세중 변호사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새로 진용이 짜여진 대한변협은 개혁시대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여 변호사계의 개혁도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진행하였는데, 이번 사법파동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협이 사태의 진행중에 법학계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지 못한 점은 그 활동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음미해볼 여지를 남겼다고 하겠다. 법학계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경우에 따라 법조실무계의 실상을 상세히 알기 어려워 상황판단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한다면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법학교수회에 동참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 국가의 전체적 개혁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력적 집중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 점은 앞으로 법원개혁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될 때에 상호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소극적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서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론과 실천의 결합으로 법원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법학계와 변호사계의 긴밀한 유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4) 법학계의 태도

법조계 전체가 법원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한 데 비하여 법학계는 이번 파동의 전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 개별적으로는 일부 법학교수들이 발언한 것은 있으나 법학교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내지는 못했다.

물론 법학계에서는 30여 년에 걸쳐 법조계의 제도개선과 법학교육의 개혁에 관하여 연구하여왔으며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하여도 여러번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계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파동을 보면서도 법학계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여 먹혀들 집단이나 하고 아예 기대를 걸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잘하면 문제 판사들이나 몇 명 쫓겨 나가겠지 하고 생각하여 그냥 사태의 진행을 주시하는 것에 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개혁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성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법학계도 법원개혁의 본질과 논의의 핵심 그리고 선결과제 등에 대하여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어야옳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학계의 소극적인 태도는 앞으로 제도개혁에서 법학계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우려도 없지 않다. 법학이 관념의 학문이 아니고 그 자체 실천의 학문임을 인식한다면 이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작동시키는 법제도의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속에서 현실적 합성이 높은 이론도 개발된다.

시간적으로는 뒤늦게 있은 것이지만 제3차 사법파동과 관련하여 법학계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 대법원장이 아직 임명되기 전인 9월 17일에는 한국법학교수회(회장 金哲洙) 주최의 학술발표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법원의 개혁문제가 다루어졌으며,<sup>49)</sup> 9월 18일에는 한국공법학회(회장 金鐵容) 주최의 학술발표회에서도 법원개혁문제가 토론되었다.<sup>50)</sup> 늦었지만 여기서부터 법원개혁에 관한 논의에 법학계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 5)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설치 구상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는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법원개혁

49) 주제발표는 한상범, '법관과 법학교수의 개혁'

50) 주제발표는 정종섭, '사법부개혁의 구체적 방향'

의 구체적 실천방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적합한 인물들이 위원으로 많이 위촉되어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일단 기대를 걸어보아도 좋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명칭 자체에서부터 개혁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소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성패는 다시 대법원장의 진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도 이 제도의 발족 당시에 약속을 하였듯이 범국민적 개혁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운영도 그에 걸맞게 행해져야 한다. 위원회의 논의는 항상 공개되어야 하고, 항상 그 작업의 진행상황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법원내에 설치되었지만 이 위원회는 법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검토내용도 어느 하나의 모델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현실적합성이 있는 모델을 복수로 검토하여 공청회에서 공개적인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위원들의 의견이 항상 타당하다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법학계와 변호사계는 이 위원회와 별도로 경쟁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원회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음모는 판사들의 여론조사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위원회가 낸 개혁안에 대하여 현직 판사들이 부정한다는 논리로 이끌고 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 점은 법원 내부에서는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의 세력다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에는 법원내 개혁세력들을 분산시키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선행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따른 잘잘못의 책임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위원회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4. 한국 법원의 문제점

법원의 문제점은 이번 사법파동에서 거의 드러났다. 가장 주된 것이 법원의 관료화와 계급화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종래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 법원이 관료주의의 병폐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21세기에 접어드는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하는

데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관료화 이외에 법원의 전문성과 재판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 법원의 관료화·계급화 현상 문제

주지하다시피 법원의 관료주의 병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간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통치 속에서 이른바 '정치판사'들에 의해 그 운영구조가 짜여진 법원의 정치종속화는 권위주의적 병폐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법원 상층부는 법원이 왜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5월 7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표명된 법원장들의 발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요구에서도 법원의 관료화와 그에 따르는 법관의 독립성 침해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관료주의 병폐는 군인계급제도에 필적하는 피라미드식 다층적 직급제도와 법관의 인사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관의 직급제도는 재판의 본질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직급제도는 재판과 인사에서 상명하복의 부작용을 낳아왔고, 법원에 출세지향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착화시켰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급 법원장이 되기 위하여 인사권자의 눈에 거슬리는 재판은 하지 않으려고 든다. 국민의 억울함보다도 자신의 승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성격을 띤 재판의 결론은 재판하기 이전에 이미 언론에서 먼저 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재판은 하나의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급제는 알게 모르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원장은 소속법원의 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순수히 법형식적으로 보면 직급제는 계급제와 다르지만 인사와 재판에서 상급자의 영향력이 하급자의 의사를 지배하면 그것이 바로 계급제이다. 법원개혁을 주장하는 판사들이 법원의 계급제를 거론한 본질은 여기에 있다. 판사들에게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을 수 없다. 계급화가 지배하는 합의제는 이미 합의제가 아니다. 현행 합의제의 허상은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승진이나 세속적인 과워행사, 기관장으로서의 영향력 행사, 직급에 따른 차량의 차별화 등등의 행태는 군이나 경찰과 같은 계급조직과는 달리 법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법관은 항상 겸허하고 사유하는 자세로

재판에 충실하는 것으로 존재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인사독재와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인사(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보복인사' 포함), 정치판사 우대(서울형사지방법원제도, 법원내의 귀족판사들 문제 등)에 따른 법원의 독립성 침해 등은 이미 많이 지적된 것과 같다. 이러한 인사문제는 법관의 재임용이나 의원면직형식의 법관사임, 경향교류인사 그리고 해외연수파견자 선발 등에서 적지 않은 예들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살살이 공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피라미드식 구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대법관직을 판사들의 승진자리로 보는 것은 법원의 기능을 왜곡할 뿐 아니라 대법원의 기능도 변질시키는 것이다. 법원에는 행정상 보직인 각급 법원의 원장만 두면 족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대법관은 그에 알맞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조일원화의 개념은 대법원의 기능에서 본질필연적으로 도출된다. 법관의 인사에서도 지금과 같이 대법원의 견해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관의 신분보장과 조화되지 않는다. 사법부 운영에서 대법원은 각급 법원과 동일한 비중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법원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의 법원 운영은 법원의 병영화 바로 그것이고, 아직도 우리 국가의 영역에서 군사문화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판사들이 재판에서나 법원 운영에서 군사문화에 젖어있는 것이 법원의 보수성과 상승작용을 하여 법원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원의 체질개선에서 대법원의 본래 모습 찾기와 위상 재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의 일면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원 운영의 관료화와 계급화의 원인은 제1차적으로는 법원제도에 있지만 판사들의 의식구조에도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2) 법원의 전문성 문제

법원의 전문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질과 수준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분쟁은 고도로 분화된 영역에서,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예나 지금이나 구태의연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 혼히 변호사 업무를 '구멍가게식 운영'이라고 지적하지만 우리나라 법원도 그에 못지않게 운영되어왔다. 일반행정사건에서

도 행정과 행정법에 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진 판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 노동,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또 민사나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의 전문성이 충분하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한 사람의 판사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짧은 기간 번갈아가며 재판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한 재판이라기보다는 '해결사에 의한 사건처리'라는 인상을 짙게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소양과 품성을 고양하기보다는 사건기록 속에 묻혀 사건 폐내기에 바쁘다. 깊은 사색과 고려보다는 사건을 쳐내기에 바쁘다. 단순 '법률노동자' 외 별 다름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분쟁도 올바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관도 키워내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가령 홀륭한 법관을 대보라고 했을 때 선뜻 이 사람이다하고 내세울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은 우리 법원의 낙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권위주의 통치구조에서는 법관도 그 구조적 분위기가 형성하는 사법외적 요소에 의하여 존립할 수 있었으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각 부문의 전문가의 목소리가 비중을 더해가는 상태에 이르면 재판 역시 억지와 강제력만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노동, 보험, 조세, 사회보장, 행정, 의료, 환경, 교육, 청소년문제 등에서는 전문가들이 쉬이 수긍하지 않는 재판들이 많다. 전문가들이 수긍하지 않는 재판이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특히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수록 전문지식은 더욱 고도화된다. 종전의 전문지식은 이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평균지식이 된다. 재판이 상식에 의존한다고 해도 그 상식은 고도의 전문지식에서 검증되는 상식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원은 시대 따라가는 데 열중해야 한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판사들을 질시하는 풍조는 이제 타파되어야 한다. 연구하는 판사들을 기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판사들을 아껴야 한다. 판사가 박사학위를 가진 사실이 죄가 되는 것처럼 쉬쉬하는 풍조는 그야말로 논센스이다. 눈치빠르고 약삭빠른 판사보다는 진지하고 공부하고 고뇌하는 판사를 아껴야 한국 법원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국가도 발전한다.

그리고 학력과 전공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제도하에서 기술적이고 요령에 의존하는 점이 많은 현재와 같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과 2년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만으로 법관이 되는 것은 진정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제대로 된 재판을 창출하기 어렵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 점은 법학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부분이지만 법원이 먼저 개혁되어야 법학교육도 그에 맞게 개혁된다.

### 3) 재판의 정당성 문제

재판의 정당성 문제는 재판의 전문성 문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관 임용방식과도 관련된다. 법률가로서의 경험이 매우 일천한 상태에서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만 거치고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에 우선 문제가 있다. 현실에서의 법의 작동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분쟁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대 법관이 등장하는가 하면 30대 법관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법률가로서의 경력이 10년 정도는 넘어야 현실의 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법관이 되어도 초임 법관으로 출발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0대 법관이면 중견 법관으로 행세한다. 법률가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면 사건에 대하여 깊이 천착해들어가기보다는 선판례나 외국의 판례들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자신의 선입견과 유사한 이론이나 단순한 지식에 의존하여 재판을 하게 된다. 각종 판례들과 현실의 사건간의 미세한 차이를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게 된다. 젊은 법관들의 재판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오랜 법관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제적인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분쟁해결과 같은 재판은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단순한 지식에 끼워맞추는 데 길들여진 오늘날 법원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법관 임용방식은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가치고 이러한 형태의 법원을 유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재판이 대학에서 연습문제의 정답맞추기가 아니라면 현재 법관임용제도는 근본적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탐구보다는 기교에, 법리와 법원칙보다는 언어의 유희에 경도되어 있는 현재의 한국법원의 재판은 법관임용제도의 개혁이 있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면 더욱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재판의 권위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엄벌에 처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법원이 오늘날 처한 위기상황은 오랜 기간 여러 모순이 축적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단순히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만 들어 법원개혁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면 여전히 국민들로

부터 경원시될 것이다. 제대로 실력과 경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며 재판할 때만 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진다.<sup>51)</sup>

### 5. 법원개혁에 대한 전망

제3차 사법파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이라면 한국 법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그 모순을 야기한 원인이 장막 뒤에서 밖으로 나와 국민 앞에 공개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법원내에서 법원의 기능과 많은 판사들의 업무를 왜곡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판사'의 실체와 그들의 세력화된 구조가 현재 당면한 법원개혁에서 가장 결림들이 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것이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하에서는 속으로만 내연하던 문제였는데, 이번의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법조계 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국민 앞에 드러남으로써 법원의 발전에 하나의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국 이번 파동의 결론은 한국 법원의 개혁은 '선퇴진 후제도개혁'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주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사법부를 왜곡하고 있는 요인은 사법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안에 있다는 말이 된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모순도 통치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 때문에 법원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런가 하고 믿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의 암울했던 구름이 걷히고 그늘진 곳곳에 햇살이 쪼여드는 개혁시대에는 그러한 주장은 더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지 못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선퇴진 후제도개혁'의 순서에 따라 법원의 개혁을 진행시키는 일뿐이다. 이는 진정한 인적 청산이 있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법파동에서 드러난 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법원개혁에 결림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퇴하는 것이 이 시대의 판사의 미덕이다. 이는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제시된 방침이기도 하다.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법리는 이제껏 법원내에 기생하며

51) 이러한 법원의 문제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에 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는 한국공법학회 제39회 학술발표회에서 '사법부개혁의 구체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되었고,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에서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다. 해당내용은 한국공법학회, 「사법부개혁과 공직자윤리」(1993. 9. 18), 8쪽 이하;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법부개혁과 법률가양성」(1993. 11. 19), 12쪽 이하 참조

법원의 기능을 왜곡한 사람들이 완전히 물러나고 추락된 법원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망을 회복하여 그야말로 국민의 법원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한 건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법원이 채워질 때부터 작동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그래왔듯이 법원의 모순을 은폐하는 주술적 언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무당의 주술적인 언사와 같은 것이 아니다.

법원개혁은 확고한 계획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만이 이 과제를 독점하여 법원개혁의 논의를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원은 법원대로, 변호사계는 변호사계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의견들을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요구와 정서에 맞게 확정되어야 한다. 법원의 인적 청산이 끝나면 학계나 변호사계는 법원의 제도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한국적 발전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제3차 사법파동은 대법원장의 교체로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니라 법원 제도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활동과 별개로 법학계와 변호사계는 개혁모델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하나의 들러리나 서는 것이 되지 않도록 협조와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법원의 개혁은 본질적으로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원이 또 다시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적당히 땜질을 하고 넘어간다면 법원개혁도 실패할 뿐 아니라 문민시대의 개혁 전체를 실패로 이끌게 된다. 현재 법원의 문제점은 몇 가지 개혁조치 선언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원개혁에 대하여 정부와 의회가 한시도 감시를 늦추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혁을 위한 진지하고 실천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법원 역시 이번의 대법원장 교체와 대법관 충원의 객관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사퇴는 개혁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대법원장과 새로 충원된 대법원은 개혁과제의 수행에 주된 존재근거가 있다. 법원의 개혁에 실패하거나 법원개혁을 왜곡하는 때는 결과적으로 전임자를 임기 전에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꼴이 된다. 여기에는 도덕성과 정당성의 문제가 여전히 걸려 있으므로 법원개혁의 성패는 또다시 대법원장의 진퇴와 직결되어 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운용에 따르는 책임도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물론이다.

이번 제3차 사법파동은 그전의 사법파동과는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법원의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가 법원내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에 대한 낙관을 가지게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법원내에서 법원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 성과는 있었고, 그것이 그 나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법개혁운동이 그랬고,<sup>52)</sup> 프랑스의 사법개혁운동이 그랬다.<sup>53)</sup> 판관은 사건 이외에는 결코 재판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는 병 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가 재판으로만 말한다는 것은 구체적 소송사건에 관해서만 그렇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도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의견의 표현도 다수가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판사들의 조합이 인정되는 나라도 있고, 집단항의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법원의 개혁은 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성공을 앞당긴다. 이런 점에서 제3차 사법파동은 우리 현대사의 전개에서 국가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의 공로는 우리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갈수록 빛을 더욱 강하게 발산할 것이다.

필자는 가능한 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번의 사태를 자세히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핵심적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고, 사태의 진행과 관련된 깊숙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는 더욱 불가능하여 많은 부분 미진한 상태로 글을 맷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법파동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의 증언에 기초를 둔 보완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면 일거수 일투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우리는 이 사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남겨야 하고, 우리의 후세대는 이 사건을 더 상세히 파헤쳐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진보 속에서만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52) 독일의 사법개혁운동에 관한 자세한 것은 박홍규,『비교법』(서울: 이론과 실천, 1993), 174쪽 이하 참조

53) 프랑스의 판사들에 의한 사법개혁운동은 사법관조합을 만들어 진행되었고, 여기에서도 적금제나 승진제가 법원의 관료화병폐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판사들의 민주적인 회의체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나 있다. 판사들의 단결권과 그에 근거한 조직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자세한 것은 김성태,『프랑스의 사법관조합의 성립배경』, 금광김철수교수화감기념,『현대법의 이론과 실제』(서울: 박영사, 1993), 399쪽 이하 참조

특집 : 한국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 검찰, 알이 깨어지는 아픔

안상수

### 1. 글머리에

7월 하순경 민변 소속 어느 소장 변호사로부터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원고집필을 부탁받았다. 나 자신이 검사시절 남의 모범이 되었다고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수년간 많은 혜택을 누려온 사람으로서 견해에 따라서는 개혁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는 터였으므로 완강히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서 친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검찰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중도적 입장에서 검찰의 실상을 담담하게 서술해달라고 하였고, 너무 추상적인 이론과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제도개혁의 측면보다는 검찰이나 일반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점을 찾아보고 또 검찰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견해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면도 국민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원고를 쓴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설득하였다.

나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변호사의 설득력에 탄복하였고, 또 당직변호사 운영위원인 그 변호사와 민변 소속 젊은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귀한 시간을 쪼개 많은 시간을 법조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바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아왔던 터였으므로 나의 글이 젊은 검사나 변호사, 기타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양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

이 들어 결국 그 제의를 승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찰을 비판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아니므로 나의 글이 오히려 검사들의 저항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나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는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아무런 흠이 없이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흠이 있지만 서로의 흠을 서로 비판하고 시정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오늘날 문민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검찰도 알을 깨는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아픔 속에서 검찰의 현실에 관하여 기坦없는 논의가 있어야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까닭에 감히 이 글을 쓰고자 하였던 것이다.

어떤 개인이건 조직이건 알이 깨어지는 고통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바, 최근에 검찰은 미증유의 인사태풍을 겪었고 임기제 검찰총장이 2명이나 중도하차하는 등 알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재조, 재야에서 검찰에 관련된 글이 많이 쏟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비판은 애정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 2. 검찰의 공과

#### 1) 검찰의 지위

우리나라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국법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을옹호하는 최고의 사정기관이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다만 검찰의 수사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검찰은 법관과 같은 자격을 가진 검사가 중심이 되어 준사법기관의 지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

#### 2) 검찰의 공과

해방 후 자유당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검사는 확고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격변기 속에서 국가의 법질서를 공고히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당시 수사 일선에서 활약한 많은 선배검사들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호연지기가 있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

시하고 임영신 상공장관 등을 구속한 최대교 검사장 등 빛나는 이름들을 우리  
는 자랑으로 삼고 있다.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도 김종필씨를 증권파동의 주모자로 구속하려던 강태  
훈 검사나 인혁당사건의 수사조작을 거부한 이용훈 검사, 시국사범으로 구속된  
학생의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던진 구상진 검사 등 자랑스러운 검사들을 우  
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외에도 널리 이름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권력에 항거  
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검사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많은 검사들이 있어서 우리의 검찰을 지탱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5·16쿠데타, 10월유신, 5·17쿠데타 등으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정  
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강권정치로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  
으므로 그들은 당연히 검찰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또 그 목  
적으로 유용한 인물들을 검찰수뇌부로 기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에 적극  
적으로 저항하는 인물들은 제거해왔다. 일개 군법무관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지  
않나, 검찰총장이 유신의 선봉에 서고, 검찰총장 출신이 법무장관, 안기부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정권유지의 첨병이 되는 마당에 검찰의 준사법  
권이 온전히 보전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상당수의 검사들이 거대한 독재정권  
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바뀌어갔다. 그리고 그런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출세가도를 달리고 검  
찰의 수뇌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치권력에 협조하고 정치권력이 주는 대가를  
나누어갖는 파행적 형태의 검찰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리하여 그 중립성이 상실됨으로써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았고 또  
지나친 권위주의, 관료주의 때문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  
다. 위와 같은 검찰의 잘못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검찰인들은  
그 질책을 고개숙여 받아들이고 깊이 자성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검사들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권력에  
저항하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권  
력과 상충되지 않은 일반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선행과 투쟁이 군사정권의 통제하에서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작은 영웅들은 검찰에도 많이 있었다.

합리적이고 성실하고 청렴한 검찰인들이 많이 있었기에 검찰은 그래도 이나  
마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름없는 많은 검찰인들은 검찰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풍토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쳐

리했고 청렴하게 살아왔다. 그것만은 국민들이 알아주어야 홀륭한 검찰인들이  
힘을 얻고 더욱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 것이다. 국민들이 경찰이나 다른 수  
사기관보다 검찰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그러한 점을 어느 정도 수긍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한 검찰이 국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조  
직폭력, 지능적 범죄, 마약사범 척결 등의 업적은 칭찬받을 만하다. 특히 검찰  
만이 수사할 수 있는 구조적 비리와 사회악을 척결한 그 공로는 인정받아야 한  
다. 법의 생활화운동, 우편진술제 실시, 소년선도 유예제도 등 인권옹호의 노  
력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검사 개개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건을 쳐  
리하면서 구체적 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도 간과되어서는 안된  
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서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던 것은 아니다. 검  
찰 스스로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결정한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모든 행위가 무더기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보장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  
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법질서 유지의 공이 크지만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실패하였  
고 인권옹호의 과오도 많았으므로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앞에서 깨어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새로이 태어나야 하겠고, 그것은 검찰인들의 노력뿐만 아니  
라 대통령, 국회, 법원, 경찰, 언론, 국민들 모두의 도움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 3.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

#### 1) 대통령의 책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대통령이 법원이나 검찰의 독립을 해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 훼손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군사독재권력은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관조  
차 고문을 하고 마음대로 쫓아냈는데 하물며 행정부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  
사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 총장, 검사를 하루아침  
에 쫓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겠

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고는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사독재자들은 검찰을 법무참모 정도로 보고 통치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검찰은 30년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독재권력에 의하여 극심한 피해를 보아왔고 나 자신도 검사로 재직시 박종철군사건을 수사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대통령 등 집권층은 과거에 “국가관”, “시국관”, “관계기관 대책회의”, “협조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유린하였다. 특히 소위 시국사건이나 정치권력과 관련된 비리사건에 관해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여당 고위층 등 집권층의 의지에 의하여 검찰권의 행사가 크게 굽절되곤 하였다. 건국대사건과 같이 1,000여 명의 학생을 구속하거나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군, 김근태씨사건 등 수많은 과행적 수사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집권층의 작품이지 검찰의 작품은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권의식도 없을 경우에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이제 문민정부하에서는 대통령은 권력의 정통성, 정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정권유지를 위하여 검찰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검찰의 중립적 수사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 확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법원과 검찰이 독립하여 국법질서 유지와 인권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훼손하여 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사라지게 하며 법치주의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대통령이 짊어져야 한다.

최근에 문민정부 출범시 임명된 임기제 검찰총장이 수개월 만에 개혁의 이름으로 중도하차하고 검찰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태풍이 휩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와 같은 검사지위의 불안정성은 이번으로 끝이 되기를 염원하지 않을 수 없다.

## 2) 국회의 책임

국회는 사법부나 검찰의 독립과 무관한가. 아니다. 국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입법만 하였고 야당은 사법부와 검찰을 비난만 하였지 그들의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는 입법활동에는 너무나 소홀하였다. 대통령은 그 속성상 법원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므로 국회가 이를 적절히 견제하여 대통령의 부당한 간섭에 관하여는 탄핵, 국정조사권 등을 발동해주고, 또 비민주적인 법률을 개폐하고 법원과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입법을 할 책임이 있다.

국회는 법원과 검찰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는 전혀 무관심하였고 오로지 비난만 일삼아왔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검사의 모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하면 국민의 인권보장에 획기적인 일이 되는데 국회는 이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검찰의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력에 관련된 사건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케 하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검사동일체원칙이나 상명하복 조문의 손질, 검찰총장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등 국회가 할 일은 너무나 많았으나 국회는 그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분발하여 법원과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할 입법활동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 4.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과제

### 1) 자성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의 보장은 결국 검찰의 지휘관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책임이다. 외부에서 검찰의 중립을 해치려고 기도를 할 때는 법무장관과 검찰이 차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검찰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가. 오히려 정권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아무하고 충성을 다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독재권력은 끌치아픈 소신과 검사를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에 등용하지 않으려 하였고 독재권력에 의하여 발탁된 정치지향적 인물들은 검찰과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영달을 도모한 사실이 없는지 자성해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민정부에서의 검찰에 대한 개혁은 검찰총수를 개혁적 인사로 맞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양지바른 온실에서 정치권력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곱게 커운 검찰간부가 과연 정치권력과 맞서 검찰의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자기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권력과 맞서다 깨끗이 검찰을 떠난 사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미리 후배를 위하여 자리를 떠난 사람, 후배들이 그 물려남을 아쉬워하고

존경했던 검찰인들을 법무장관, 검찰총장 기타 검찰간부들로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시국사건과 권력형사건에서 보여준 일부 검찰수뇌부의 비겁한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김근태, 박종철 사건에서 보여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도덕성 마비, 정치권력에의 맹종과 굴복, 비굴한 자리유지를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표를 던졌어야 할 자리에서 사표는커녕 부하검사들을 억압하여 수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 문민정부에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검찰과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2) 검사의 업무과중 해소 시급

검사는 지금 1인당 월 300건 내지 4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살인적인 업무량이다. 그 업무량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해마다 1,000여 명에 불과한 검사들 중에서 1~2명씩 아까운 검사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에도 백삼기 차장검사, 변진우 차장검사 등 아까운 인물들이 과로를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떠났다. 고급관료 중 과로로 인한 사망률은 검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사는 수백 건의 사건을 매월 처리할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단속업무, 보고업무, 대민봉사업무, 교육 등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듯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월 300건 내지 4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건을 신중히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승복을 받을 수 있는 깊이있는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검사는 이제 사건을 떼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검찰의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 검사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깊이있는 수사와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한 것이고 공부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친절히 하고 싶은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수뇌부는 검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검토해보도록 제의한다.

### (1) 검사의 대폭 증원

검사의 숫자를 대폭 증원하여 검사의 업무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가 있으므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2) 부검사제의 도입

일본에서와 같이 부검사제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절도, 단순 폭력사건을 대폭 부검사에게 전담시키면 검사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부검사는 검찰 일반직이나 법대 졸업생 중 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면 될 것이다.

### (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의 면제

교통사고, 행정법규 위반, 절도, 단순폭력 등 단순하고 자백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면제하거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다고 기재하거나 다른 점만 조사한 다음 피의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소유지에 별로 지장이 없는바, 단순하고 간단한 자백사건 까지 경찰조사 외에 반드시 이중으로 검사조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4) 검사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 폐지

자질구레한 행정법규 위반 단속은 경찰에 맡기고 검사의 고유업무인 수사업무 외의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 검찰수뇌부는 어떤 방법으로든 검사의 업무량을 줄여주어야 한다. 나도 검사시절 지나친 업무량 때문에 건강을 많이 벼렸는데 요즈음 후배검사들이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특근을 하면서 고달프게 일하는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이다. 갈수록 검사의 업무량은 더 늘어나는데 검찰수뇌부는 업무량을 줄여줄 생각은 않고 오히려 일만 늘여가니 한심한 생각이 듈다.

### 3) 중립성 확보

검찰총장은 자신의 공직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검사를 지켜주고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

어야 한다. 검찰수뇌부가 정치권력이 시키는 대로 또는 외부의 부탁을 받고 검사를 지휘하면 수사는 왜곡 굴절되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검찰총장이 국회의 청문절차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야 집권자의 자의를 막고 권위도 생긴다. 검찰총장은 퇴임 후 적어도 3년 이상 일체의 공직취임이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 안기부장, 비서실장 등 다른 공직의 육심 때문에 권력에 아부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 4) 검찰인사의 공정 및 사기진작책 확보

권력지향적이거나 출세지향적인 인물을 과감히 제거하고 소신있는 검사를 발탁하고 모든 검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인사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청렴하고 교양있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해야 한다. 검찰인사 위원회에는 검사장뿐만 아니라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 중에서도 각 1인씩 참여시켜 중간 및 하부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검찰민주화와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좋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검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검사의 복지, 생활대책, 근무의욕 고양 등을 위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 5) 각종 제도개선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우선 불기소 기록을 피의자나 피해자가 열람하여 적절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것(고소인의 항고권, 기소유예 피의자의 무혐의 청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록 등본 인정요), 검사 기소 후에는 수사기록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즉시 등사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불기소를 하더라도 죄 안됨, 공소권 없음 등 형식적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무혐의 등 실제적 판단을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불기소사건에 재정신청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검사의 독단 방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검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

#### 6) 검사 교육제도의 확대

오늘날 검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군법무관 제대 후 바로 임관되고 있으므로 초임검사의 경우 사건처리 경험도 없고 세상물정도 잘 모르며 검사로서의 교양이나 직업윤리의식도 부족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불완전한 검사에게 기성검사와 똑같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직무상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실수를 범하거나 미완성된 인격과 교양으로 인해 국민을 괴롭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초임검사의 경우 적어도 6개월 가량의 직무 및 검사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현직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그 필요성은 법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변호사도 그 정도의 교육을 거친 후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5. 검찰간부(검사장, 차장, 부장검사 등)의 과제

일반검찰은 검찰 중간간부인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따라서 그들은 합리적 사고와 사심없는 마음으로 검사들을 지휘하여야 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사건청탁은 주로 검찰간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들은 검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 중간간부들은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검찰을 움직여 나가므로 그들이 외부의 청탁이나 상부의 압력을 차단하지 못하면 일반 검사의 업무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간결재자가 검사에게 지시하여 사건이 검사의 소신과 달리 처리되었을 때 어디까지나 그 책임은 처분관청인 그 검사가 지는 것이고 중간결재자가 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결재자의 관여는 극히 신중해야 된다. 사실 과거에는 비합리적인 상사가 비합리적 지시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상당히 합리적인 신세대 결재자들이 등장함으로 인해 결재과정에서의 마찰은 비교적 적어지고 합리적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어떤 결재자는 지나치게 검사의 소신을 꺾고 독단적인 자기주장을 폈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결재자는 검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너무 견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검사로 임관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

검사가 소신을 주장하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초임검사들은 경륜이 부족하고 수사나 사건처리 경험이 부족하므로 그들의 소신도 잘못된 소신인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결재자는 경험없는 젊은 검사들을 잘 지도하고 조언하여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결재자는 검사가 구속 기소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결재를 하고 석방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는바, 구속기소하는 사건도 잘 검토하여 석방이 타당하면 석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옳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리고 검사들은 소년범이나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도 결재받는 것이 귀찮아 구속기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바 어차피 법원에서 보석이나 가정법원 송치 등으로 용서받을 사안이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 구약식 등으로 검찰에서 과감히 석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상사는 후배검사를 동생처럼 아끼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은 막아주되 경험없는 후배검사들이 사건을 잘못 처리할 경우 적절히 지도 조언하여 바로잡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재는 원래 상사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으로 부하검사들의 미숙하거나 잘못된 업무처리를 돋고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잘못된 사건처리는 결재자도 책임진다는 각오로 결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배검사들에 대한 지도와 조언은 애정과 예의를 가지고 정중하고도 친절하게 설득과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인격적인 모욕이나 사기를 쥐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훌륭한 검사를 발굴하여 그 업적이나 미담을 언론에 홍보도 하고 표창을 받도록 하여 사기를 높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대신 비리에 연루된 검찰인이 발견되면 이를 덮어둘 것이 아니라 과감히 적발하여 검찰조직에서 쫓아내는 자기정화 노력도 중간결재자의 책무이다.

## 6. 일반검사의 과제

### 1) 책임

국민을 직접 대하고 단독관청으로서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사람은 일반검사

이다. 그 검사의 언행이나 사건처리가 바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검찰의 신뢰는 검사 개인의 행위에 달려 있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도 결국 검사 개인의 불굴의 투지와 사명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은 법관과 같은 자격을 가진 최고의 두뇌들이고, 자존심이 강하므로 쉽게 부폐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검사들은 업무량의 실인적 폭주로 인하여 월 300건 내지 40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딱한 실정에 있다.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은 형편없이 조사된 것이 많아 그 뒤치다꺼리하기가 몹시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결론이 잘 나지 않는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이나 구속만기가 임박한 사건을 생각하면 잠도 안오고 밥맛도 없으며 악몽까지 꾸는 경우도 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검사들이 청렴하고 사심없이 그리고 열심히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므로 우리는 검사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들은 아래와 같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 2) 인격적 수사 필요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높은 학식뿐만 아니라 고매한 인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검사가 당사자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과 모욕을 반복한다든지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다면 다른 수사기관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검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인권옹호기관이므로 검사의 수사는 당연히 엄숙하고 정중하며 논리와 증거에 의하여 날카롭게 추궁하여야 하는 것이다. 젊은 검사가 나이 많은 피의자를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설을 하거나 구타까지 하면서 수사를 한다면 수사를 받은 본인이나 그 가족 친지들에게 검사는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고 그것은 결국 법의 권위를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주는 일은 있어도 욕설과 구타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의 신뢰는 법을 교양있게 집행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자 신문에 나는 큰 사건 하나 인지하였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부패한 공무원 한 사람 구속했다고 해서 그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검사는 품위와 교양을 가진 수사방법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일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의 수사태도가 너무 모욕적이고 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큰 사건을 인지하여 부정을 척결한 이익보다 더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필자도 초임검사시절에 범죄 척결을 위하여 약간의 구타는 인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경력을 더해감에 따라 그것은 야만적 행위이고 법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음을 고백한다.

### 3) 공의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

검사는 “거악(巨惡)이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리라”는 불굴의 정의감을 가지고 범죄를 척결하고 국법질서를 유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사들은 국법질서 유지라는 측면에 너무 치우쳐 사건을 처리하였고 인권옹호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형사소송 구조의 한 당사자로만 보지 않고 공익을 실현할 거룩한 임무까지 부여하였다. 검사는 범죄사실을 발견하여 범죄자를 처단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공의의 대표자로서 범죄자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수집하여 범죄자가 자기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검사는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범죄자에게 유리한 자료수집이나 변명의 기회부여에는 소홀하여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사건처리를 하여야 국민의 승복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나 자료를 조사해주고 용서해주어야 할 피의자라면 누구 눈치볼 것 없이 상사를 잘 설득하여 과감히 용서해주는 것이 정의의 사자인 검사가 할 일이다. 검사는 용서할 사람은 과감히 용서하고 또 추상 같은 정의감을 가지고 나쁜 사람은 엄벌하는 신념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시간에 쫓겨 또는 상사 설득이 어려워 사건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처리한다면 검사는 공의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무죄가 명백한 사건을 문제이 두려워 쓸데없는 증인을 신청하거나 기록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질질 끌면서 피고인과 변호사를 수없이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판사나 검사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지만 변호사와 피고인은 그 사건을 위하여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그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여 수시간씩 기다리면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사를 한다고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십회 소환하여 장기간 대기실에 대기시켰다가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폐습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엄청난 인권의 유린이다. 검사 본인은 약속시간에 약속장소에 갔는데 친구가 10분만 늦어도 기분이 나빠 화를 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조사결과 자기운명이 잘못 될지로 모를 피의자나 참고인 고소인 등이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속 소환을 당한다면 그 심정은 바로 죽을 맛이라는 것을 검사는 명심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이 검찰의 소환을 받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초조하여 밥맛이 없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어떤 검사나 수사관은 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잘될 것 같으냐, 석방될 것 같으냐”고 빙정대면서 “그 변호사는 소문이 안 좋다”고 하는 등 물상식한 발언을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매일 검찰로 소환하여 대기시키는 등 인권유린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공의의 대표자로서의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짓이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4) 소신있는 사건처리

검사는 상사의 결재를 받지만 모든 사건을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이다. 상사의 명령에 따라 소신없이 부당한 사건처리를 한다면 검사는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군사독재체제하에서 검찰의 조직도 군대조직처럼 너무 경직되었고 상사의 명령은 마치 군대의 지휘관의 명령처럼 집행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검사는 독립관청이다. 상사의 결재는 어디까지나 조언에 불과한 것으로 상사의 지시가 검사의 합리적 소신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하여는 당연히 거부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사의 지시가 검사의 숙고를 거친 소신과 어긋난다면 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 그동안 소신없는 검사, 눈치 잘 보고 알아서 기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로 대우받고 출세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문민정부하

에서는 그러한 검사는 마땅히 도태되어야 할 대상이다. 소신없는 검사는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일을 하여야지 정치권이나 상사의 눈치나 보면서 소신없는 사건처리를 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임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검사의 소신이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니고 옳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검사의 소신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소신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경험과 경륜부족, 업무미숙, 실력부족 등으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신이라고 착각하여 고집을 부리면 국민은 큰 손해를 입고 검찰은 경멸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사는 소신이 있어야 하지만 타당하고 합리적인 소신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하고 또 경험과 경륜 그리고 실력이 풍부한 상사의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다. 상사의 지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상사가 남의 부탁을 받고 인심이나 쓰려고 그릇된 지시를 한다고 의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옳은 생각이 아니다. 상사의 지시나 조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관련서적을 보거나 동료 선배들과 의논 토론을 해보고 그래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면 상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중하게 밝히고 토론을 해보면서 상사를 설득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소신있는 검사가 할 일이며 그렇게 하여 국민을 위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는 훌륭하고 소신있는 검사로 존경받을 것이다.

### 5) 권위주의 불식(공복의식 확립)

검찰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권위주의의 불식으로 알려졌다. 사실 필자도 검사가 되기 전 시보시절에 검찰청에 가는 것이 싫었다. 상냥한 얼굴을 보기 힘들고 검사나 검찰직원들의 얼굴은 대개 굳어 있고 또 그 언행이 몹시 권위적이고 불친절하였다. 물론 업무 자체가 마냥 친절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불친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검사나 수사관을 오래 하면 직업상 사나워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인상이 나빠진다고 한다. 따라서 검찰인들은 자기의 인상이나 품성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남보다 몇배로 수양을 하고 의식적으로 상냥하고 친절한 언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록 힘써야 하며 신사도를 익혀야 한다.

사건처리에서도 권위주의를 버리고 당사자의 민원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당사자들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청취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본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권위주의는 관존민비사상에서 나오고 그것은 공적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관존민비사상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악인데 검찰인들이 다른 관료보다 더 권위주의적이고 관존민비사상에 젖어 있다는 비난을 들을 때 나는 매우 괴롭다.

### 6) 따뜻한 가슴

검찰인은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끓지 않아야 한다. 사랑과 눈물이 없는 법집행은 지나치고 가혹하기 쉽다.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다수를 위하여 부득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어도 그 소수에게 따뜻한 사랑과 동정을 보내야 한다. 피의자가 나의 가족이나 친지라고 가정한다면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소인, 고발인이 나의 가족이나 친지라고 가정한다면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검사는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가정해보거나 또 자신이 어떤 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보는 등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검찰인은 저절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과 소망을 해결해주고 싶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추상 같은 법에 사랑과 눈물의 단비를 전해주고 이 세상을 좀더 살맛나게 하며 검찰과 법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되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집행이 되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의 추구만이 법의 목적은 아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균형있는 조화가 바로 법의 목적인 것이다.

### 7) 맑고 깨끗한 생활자세

검사를 사위로 맞으려고 혈안이 된 졸부들이 있다. 그들은 검사사위를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보전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많은 검사들이 졸부들의 사위가 되어 그 장인의 비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국민들의 눈

에도 그 모습은 결코 좋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검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검사도 사갈 수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는가. 검사는 결혼부터 깨끗하고 올바르게 해야 맑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지역유지들과 필요 이상의 친분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어느 검찰총장은 재벌들과 친하다고 자랑했다는데 그래 가지고서야 재벌의 범죄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소위 온갖 유지들과 친하게 지내는 마당발 검사는 빨리 변호사 개업을 하여 자기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지역유지들과 친하게 지내는 검사가 그들의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안다. 그래서 국민은 검찰을 불신하고 강자에 대한 무력감을 갖게 된다. 강자를 처단할 수 없는 검찰이라면 없애는 것이 좋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회적 강자의 비리는 적게 입건되고 그 처벌도 적당히 끝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바. 그것은 결국 검찰인이 사회적 강자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데도 책임이 있다. 검사는 정의의 사자인데 정의의 사자는 초원에서 맑고 깨끗한 자세를 유지해야 모든 동물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 사자가 돼지처럼 돼지 우리의 음식을 탐하고 돼지와 논다면 이미 사자가 아니다. 오늘날 검사는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자세를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

검사는 강자를 호령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의 생활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본검찰의 청렴성을 깊이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며 회식도 맥주 몇 병을 사놓고 사무실에서 간단히 한다고 한다. 거기에 사회적 강자들이 유혹의 손을 뻗을 수는 없다. 나는 초임 검사시절 전주지검에서 이명희 차장검사가 검사들이 지역유지들의 차를 빌려타고 놀러 한번 갔다오고 지역유지의 술대접을 받았다 하여 검사들에게 “거지 새끼들”이라고 호통치던 모습이 기억난다. 얻어먹는 측면만 본다면 얻어먹는 검사는 얻어먹는 거지와 다를 바 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평생 가슴속에 남아 있다.

그리고 깨끗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 감찰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비리행위자는 과감히 제거하고, 인사에서도 청렴성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8) 겸손과 계속적인 공부

검사는 수양을 계속하지 않으면 엘리트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남의 말을 경청

하지 않고 무시하는 잘못된 버릇이 생긴다. 더구나 매일 괴의자나 참고인 등이 검사실에서 굽실거리는 것을 보게 되므로 자기자신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또한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하여 시간에 쫓겨 공부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생활을 거듭할수록 무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식한 자만심은 결국 독선과 아집, 편견으로 훌러가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끊임없는 공부와 수양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야 하고 법학뿐만 아니라 주변 학문과 예술 등에 관한 공부도 열심히 하여 무식한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 9) 조직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는가

검찰은 그동안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아 군대식 조직이 되었고 검찰인은 조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독재자의 체제방위의 논리이고 검찰수뇌부의 자기보신의 논리가 아닌지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

검찰의 잘못이 외부에 알려지면 검찰수뇌부는 자기지위가 위태로워지고 독재권력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므로 이를 은폐하고자 노력해왔고, 많은 검찰인들도 이를 덮어두는 것이 조직을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온 측면이 있다. 과거에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을 어느 용기있는 검찰인이 공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그 비리가 싫은 검찰인은 조용히 사표만 쓰고 떠나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덕을 본 것은 누구인가. 결국 당시의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 등 조직의 수뇌부만 온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나아가 승진 영전까지 하지 않았던가. 뜻있는 검찰인들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사직함으로써 검찰조직의 보호는커녕 검찰조직의 부패와 타락만 방조한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면 지나친 견해일까. 우리는 검찰조직의 비리 시정요구 때문에 조직이 상처를 입는다는 이유로 검찰인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검찰인의 침묵은 검찰조직이 그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비리를 밝히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앞으로는 부도덕한 검찰수뇌부가 겁이 나서도 정치권력과 영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

야 하고 그렇게 해야 조직이 건강해지고 썩지 않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박종철군사진 수사를 마치고 조용히 사직하였는데 그 후 부도덕한 검찰총수가 고속으로 영전하는 것을 보고 깊이 느낀 바가 있다.

## 7. 기타 관련자들의 도움

### 1) 법관의 도움

검사가 올바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관도 도와야 한다. 법원은 그동안 국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피고인의 가혹행위 주장을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었고 시국사건에서 검찰의 의견을 크게 존중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은 사건처리에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피고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해야 할 것이고 시국사건에서 검찰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검찰의 잘못을 법원에서 과감히 시정해주어야 검찰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검찰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가에서처럼 자백 등 직접증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정황증거에 비중을 많이 둠으로써 검찰의 과학적 논리적 수사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존중하는 것은 직접증거를 찾기 어려운 거악들의 범죄를 척결하려는 검사의 의지를 복돋아줄 것이다.

### 2) 경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도움

검사는 수사의 보조자인 경찰, 안기부 등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없이는 범죄를 척결하기 어렵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검사의 지휘를 잘 따라야 한다. 경찰은 10만 명이고 검찰은 3,000명이라는 투로 검찰의 지휘를 가볍게 보게 되면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이고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한 혁행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에서 검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보조자는 인식하에 일을 해야 하는데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는 독재정권 유지에 경찰의 공이 많다는 이유로 검사의 지휘를 무시하는 사례

가 많았고 그것은 바로 인권침해로 이어졌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과거에 안기부와 기무사는 검찰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검사의 지시를 무시함으로써 엄청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래 검사제도는 그 유래가 프랑스에서 경찰과 법원의 올바른 법집행의 감시자로서 생겨난 것이다.

### 3) 변호사의 도움

어떤 사건이 변호사나 의뢰인의 의도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하여 그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삼가거나 신중해야 한다. 검사의 경험부족으로 사건은 잘못 처리될 수도 있으나 그것을 뇌물이나 청탁에 의하여 잘못 처리한 것으로 근거없이 발설하여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변호사가 금품을 가지고 검사에게 로비를 하는 듯한 느낌을 의뢰인에게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법의 권위와 신뢰를 해치는 일이므로 삼가야 할 것이다.

### 4) 언론의 도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언론이 검사를 매도하는 방향으로만 보도를 한다면 국민은 영원히 검찰을 불신할 것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도 때로는 잘한다고 칭찬해주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지 맨날 못한다고만 하면 사기가 죽어 더욱 공부를 못하게 된다. 언론은 앞으로 검찰이 잘하는 점과 훌륭한 검사를 발굴하여 그 미담이나 수사공적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검찰의 신뢰상실은 바로 법의 권위상실을 초래하고 그 것은 결국 권위없는 법 아래 무질서하게 살아가게 되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번 재산공개파동으로 물러난 정성진, 최신석 검사장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는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하여 희생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 5) 국민의 도움

우리나라 국민은 청탁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나쁜 벼룩을 가지고 있다. 사건이 생기면 청와대, 국회의원, 안기부 등 온갖 '뼈'를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려고 하거나 검찰간부를 통하여 청탁이나 압력을 넣으려고 하거나 검사와의 연줄을 찾아 청탁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국민 스스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삼가야 한다.

자신이 온갖 빼을 동원한다면 상대방도 온갖 빼을 동원할 것이라고 믿게 되고 검사의 사건처리는 결국 청탁의 다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믿게 된다면 법의 권위와 신뢰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검사나 법관이 청탁 때문에 사건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청탁풍조에서 빠리 벗어나야 할 것이고 그것이 검찰의 권위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고급두뇌인 검찰이 조직 범죄, 지능범죄, 구조적 사회악 등 거악들과의 전쟁을 할 시간과 정력을 빼앗아가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리 국민들은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가장 하여 고소·고발하지 않도록 자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어버려 더 큰 사회악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손해는 결국 국민 자신이 입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하여도 무조건 검사를 비난부터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피의자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 안되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범죄의심은 있지만 증거부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8. 맷는 말

나는 유신말기에 검사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초임인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김모 법무장관이 검사장들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일괄사표를 받고 일부를 수리하여 여러 검사장의 목이 하루아침에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검찰의 독립이나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기부에도 근무했다는 그 김모장관은 유신어록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내려보내 검찰간부들로 하여금 회의실에 모여앉아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학습을 하게 하였고, 또 유신의 선봉에 서서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부르짖었다.

그 후 5·17군사ク데타, 5·18광주민중학살사건 등을 거치면서 우리들은 육군소령 밑에서 삼청교육대 분류작업을 하는 수모도 겪었다. 나는 국보위시절 대구지검에서 육군소령이 위원장인 삼청교육대 분류작업에 위원으로 참석하라

는 지시를 받았으나 검사가 법도 모르는 육군소령 밑에서 평위원회으로 분류작업을 하는 것이 싫어 분류장소에 가지 않았던 빼아픈 기억도 난다. 그리고 당시 이모 대구고검장이 갑자기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이임사에서 검사는 시국관과 국가관이 투철해야 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그 후 서울지검 재직시에는 부천서 성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사건 등 처리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정치적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을 따르는 무기력하고도 직무유기적인 태도를 보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분노하기도 하였고 특히 내가 담당했던 박종철사건 수사시에는 회의와 번민의 날들을 보내면서 정신적 고통도 많이 받았다.

물론 당시 경찰, 안기부, 기무사, 청와대 등 정권유지의 첨병이었던 타권력 기관이 군인출신 대통령의 힘을 배경으로 검찰의 사정기능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결국 검찰이 군인 출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검찰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10년간 검사로서 바라본 검찰은 군사독재권력에 의하여 훼손되면서 위와 같이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 앞으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다. 그러나 한편 내 자신과 검찰이 자랑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음을 숨기고 싶지 않다. 훌륭한 선후배와 같이 열심히 일한 기쁨과 보람도 잊을 수 없다.

결국 총체적으로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검찰은 열화 같은 국민의 염원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으므로 과거의 일에서 깨어나야 하고 또 깨어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이제 정치적 독립,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외국의 검찰제도도 깊이 연구하여 좋은 점은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기능과 기구의 재편(공안, 특별수사, 일반 형사사건 처리기능 및 고등검찰청의 기능과 기구조정 필요), 검찰수사의 민주화방안, 검찰수사비의 현실화, 검사봉급의 상향조정, 검사의 연구비 지급, 교육활성화 방안 등 검찰발전을 위한 연구를 촉진시켜야 한다.

최근에 고등검찰청에 항고사건 재조사 등 수사기능을 부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수사미진인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고등검찰청에 재조사 등 수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옹호와 검찰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고검

에 항고를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국민불신을 해소할 좋은 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이러한 제도개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검사는 물론 판사, 변호사, 언론계, 경제계, 관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사법부에서 설치하려는 사법계획위원회에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영입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므로 검찰에서도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검사가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처벌만 가하려고 하는 무섭고 싫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거나 않은지도 자성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수사행위는 경찰 등의 수중에 넘어가 있고 검찰은 송치된 기록에 대한 서류심사나 뒤치다꺼리를 하고 공소 또는 불기소처분 완성기관으로 축소되어 있거나 않은지 자문해보고 그렇다면 이를 탈피하여 법의 감시자 및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어떻게 하여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

숱한 고문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이 스스로 진상조사에 나서서 사건 전모를 파헤치고 경찰이든 안기부직원이든 검찰직원이든 고문수사관을 의법처단한 사실이 얼마나 있는지도 자성해볼 일이다. 또한 가혹행위를 다스려야 할 검찰이 스스로 가혹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는지,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10~15일씩 매일 소환하여 장시간 대기시켰다가 몇마디 묻고는 그냥 돌려보낸 일이 없는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도 알려주지 않은 채 변호인을 왜 선임했느냐고 빙정대는 등 몰상식한 언동을 한 사실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아야 한다.

검찰 한 구석에는 오늘도 일부 비민주적인 사람이 비민주적인 수사방법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런 못된 자는 엄밀히 조사하여 과감히 조직에서 축출해야 검찰이 산다.

이제 검찰은 수사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찰은 원래 법의 감시자로서 태어난 것 이므로 다른 수사기관의 비민주적 수사관행을 묵인하거나 검찰 스스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이유는 없어지는 것이다.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의 인권침해를 다스려야 할 검찰이 스스로 인권침해를 한다면 어떻게 다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는가.

검찰은 이제 문민시대라는 새 시대에 걸맞은 의식을 가지고 문민시대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자신도 알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먼저 검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달라진 모습으로 대통령 등 집권층이나 다른 수사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정치권력도 이제 검찰의 독립을 해치는 어떤 시도도 포기하여야 검찰도 정치권력도 함께 사는 길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검찰밖에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과거의 잘못된 점을 자성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변호사)

특집 : 한국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 사법부의 과거 청산과 개혁

### 최 병 모

#### 1. 글머리에

1972년의 소위 10월유신 이후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법부는 독재권력에 굴복하였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신시대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과 제5공화국 및 제6공화국에서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던 무수한 공안·시국사건 재판은 결국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으나, 이러한 사건에서 선고된 수많은 판결들이 독재권력에 굴복한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32년간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금년 초부터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역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거에 걸어온 굴종의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초 대법원은 법원의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제한, 법관회의 제도 확립, 변호사 없는 소송당사자에 대한 배려, 비리 제거, 부조리 척결 등의 사법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가 학계와 재야 법조계로부터 “한마디로 사법부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지엽 말단적인 사안에 집착한 처사”라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6월 말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사법부의 진지한 자기반성과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

한 테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7월 1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 공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즉각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 개편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변협의 이런 주장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반박하였고, 이어서 변협과 대법원은 서로 정치판사 명단 공개 검토 성명과 이에 대한 반박, 대법원장 및 행정처장 퇴임 요구 등으로 맞서면서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덕주 대법원장은 9월 7일의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던 중 9월 10일 전격적으로 대법원장직을 사퇴하였고, 그 후 윤관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이어서 2명의 대법원판사가 퇴임하여 후속인사가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못이겨 커다란 상처를 입고 타율적으로 부분적인 개편을 이루어낸 셈이다.

그러나 이번의 사태는 대법원장의 사퇴나 법원행정처장의 경질만으로 간단히 매듭지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민은 사법부가 유신 이후 긴 세월에 걸쳐 “인권보장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포기하고 “독재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법의 이름으로 독재권력에 편들어온 과오를 반성하고 근원적인 의식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 요구는 이제까지 우리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과 헌법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제기능 찾기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법부 개혁에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개혁과는 다소 다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1일자 결의에서 1차적으로 사법부의 인적 청산을, 그 후의 대법원의 개편과 개편된 대법원에 의한 제도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법조 삼륜의 하나인 변호사협회가 요구한 사항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 개혁 방향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 개혁에서 첫 번째로 실현되어야 할 사항은 제도개혁에 앞선 ‘인적 청산’이라 하겠는데, 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대한변협이 결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남득할 수 있는 재판을 했거나 시국사건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던 인사들을 들 수 있겠고, 또한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재산축적 과정에 의혹이 있는 인사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법관은 헌법에 의하여 그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어느 법관이 인적 청산의 대상인사로 지목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법관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퇴진시킬 방법이 없다. 또한 사법

부의 헌법상 지위에 비추어 외부로부터의 타율적 방법에 의해 개편을 이루어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적절한 방법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다른 적극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법부가 재야법조의 정치판사 거론과 그 퇴진요구를 곧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사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국민이 법원에 대하여 인적 청산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법을 통하여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국법이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해석하여 법의 원칙을 선언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이 법을 선언하는 수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을 통하여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법이란 본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절하는 준거이며 재판은 곧 이러한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작업이므로 재판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정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다른 입헌민주국가의 헌법에서와 같이 재판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선언하는 기관이 외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공평무사하지 않으면 법적 정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권 역시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한가지일 뿐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여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될 때만 그 정당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이란 한번 법관으로 임명되면 헌법상 규정된 면직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무능해도, 법관으로서의 직분을 소홀히하거나 포기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이 법관에 대하여 퇴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난번 대법원이 대한변협의 결의에 대하여 그것이 나온 역사적, 현실적 원인과 배경을 외면한 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법관의 임무가 이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통한 법적 정의의 실현에 있는 만큼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헌법에서는 법관의 신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에게는 또한 그 자격에 걸맞은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적 정의실현을 책무로 하는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률전문가로서의 탁월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어느 직분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의감과 민주적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평등 및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억압시대에 법관은 이러한 신념을 구체적 재판을 통해 견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법을 해석·적용·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개념법학적인 법률해석을 뛰어넘어 합목적적인 법해석을 통한 법창조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법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법이론에 앞서 시대의 보편적 상식과 인간애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상식과 인간애가 결여된 법관은 잘못된 신념에 빠져들어 상식에 어긋나는 아집과 독선으로 일주하고, 가혹한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이에 무감각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법관의 직분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철저한 공복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공직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공직윤리는 법관의 특성상, 첫째로 어느 직분보다도 더욱 청렴결백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로 모든 공무의 집행은 국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정의감, 신념, 보편적 상식, 인간애 및 공직윤리는 바로 법관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 외에 법관 자신이 재판에서 스스로 즐거하여야 할 객관적 양심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법관은 이러한 자질을 갖출 때만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으며, 소송관계인들의 주장에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시절의 우리 사법부는 어떠하였던가. 법원의 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개혁의 방향은 결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제5공화국 이후의 사법부와 재판의 문제점

독재권력은 민주적 헌법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발호하거나 민주적

헌법제도를 파괴하고 생성되어 이에 항거하는 모든 세력을 침묵하게 하고 사법권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권력이 사회를 장악하는 때일수록 사회 내의 어떠한 계급이나 집단보다도 법률가집단, 특히 재조법관의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과 전제기능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독재정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법률가, 특히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법관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속성 때문에 한 시대의 보편적 상식과 정의감의 소유자일 것이 기대되며, 헌법기관으로서의 법관은 법체계 안에서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독재권력이라 하더라도 법관을 탄압하는 데는 그 수단과 방법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사람들과 노동운동, 전교조활동, 빙민운동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들 및 소위 이념서적을 저술, 출판한 작가, 출판인, 통일운동가,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하였던 화가, 평론가 등 무수한 인사들이 공안, 시국관계 법률들에 의하여 체포·구금·투옥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중에는 가혹한 고문으로 희생된 사람들마저 있었다. 그러나 재조법관이 소신재판이나 정치권력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나간 독재정권하에서도 법관이 자신의 정의감과 사명감을 지키기 위하여 치러야 할 최대한의 희생은 인사권자의 독선에 의한 좌천성 전보발령, 재임명 탈락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형의 압력에 저항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결국 법관직을 사직하는 것 이상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대의 우리 사법부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성립된 제3공화국에서는 법원이 매우 조심스럽게 행정권력으로부터의 제한된 독립성을 견지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소위 10월유신으로 장기집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박정희정권은 이후 사법권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하였고, 이에 이어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을 거치면서 사법권은 완전히 독립성을 잃고 독재권력에 굽복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인 헌법으로 기능하는 시대를 맞아 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양산되는 공안사법에 대하여 유죄판결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도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 공안관련 수사기관에서 일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였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는 고문 시비가 그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에 귀를 기울이

지 않았다.

제6공화국 초기에는 여소야대의 정치판도와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열기에 힘입은 탓인지 법원이 공안사건에 관하여 다소 관대한 경향을 보이는 듯하였다. 또한 1988년 6월 15일에는 소장법관 105명이 대법원 개편 및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 당시 법원 내부에서는 이로써 사법권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1988년 말 대통령의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를 신호탄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에는 오히려 반전하여 제5공화국 시절보다도 더욱 많은 시국사법이 양산되었고, 법원은 공안·시국관계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데서 종래의 개념법학적인 해석론에서 실질적이고 합목적적인 법해석론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가혹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에 법원은 소위 5공 권력형 비리사건에 관하여는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정치권력에 굽복하였다는 지탄을 받았다.

공안사건 및 시국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이와 같이 현실과 괴리된 정치적 재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재판과정 자체와 관련하여 보면 법원이 독재권력에 굽복하여 법의 합목적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적용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마저 포기한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첫째로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사건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왜곡되고 과대포장되어 기소된 결과 현재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법원이 법의 적용단계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 요소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만 한다면 거의 모든 시국사법은 처벌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종래부터 공안·시국사건에서는 방만한 법률해석론과 무절제한 판례를 추종하여 스스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법원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국가기밀 등의 개념에 관하여 거의 무한정 확장해석을 해온 결과 공안사건 판결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해외의 거의 모든 교포단체가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혔고 이러한 해외 교포단체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으며, 국내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정보마저 국가기밀로 둔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에서 반국가단체로 지목하면 법원이 예외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검사가 공소장에 국가기

밀로 기재한 것을 법원이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이 모든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무차별 확장하여 의율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거의 예외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왔다.

둘째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모든 범죄성립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구성요건 요소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소위 시국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방만한 사실을 나열하고 법의 해당조문을 열거하는 것 외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또한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이 없이 공소장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증거재판주의를 포기해왔다.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와 같은 지극히 기초적인 형사사법의 원리만을 견지하였더라도 아마 이러한 공안·시국사건의 대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다.

법원은 또한 그 재판진행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해왔다. 첫째로 소위 공안·시국사건에서는 법원의 태도에서 재판결과가 미리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로 법원의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절차진행,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 언동 등이 또한 방청객과 피고인의 분노, 불신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법원과 검찰을 모욕하는 사태가 표출되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지도 못하고 사법부 자신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냉소에 찬 비난이 그치지 않았고, “사적 분쟁의 해결에서조차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 3.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조에서 사법권이 독립되지 못한 채 표류해온 원인은 몇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우리의 법원은 그 성립 당시부터 일제 식민지시기의 법원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결과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출

발 당시의 이러한 과행적 상황은 그 후 법조역사를 규정하는 동인이 되어 사법부는 독재권력에 쉽사리 굴복하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력에 의한 타율적인 개편이 있었을 뿐 사법부의 과거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과 청산이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 제도적으로 법관임용단계에서부터 이원화된 우리의 사법제도와 도제적인 법관양성과정, 그리고 법관직급제도 역시 사법부를 관료적이며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독선적인 이익집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임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사법연수원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판사로 임명되어 부장판사의 지도 아래 법관으로서의 기능을 쌓아갈 뿐이다. 이러한 도제적 법관양성방법은 과거로부터 법원이 지녀온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대를 이어 전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 결과 법조는 이원화되어 재야법조의 실상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원의 실상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관료적이며 독선적인 행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현재 법관은 지방법원 판사 → 고등법원 판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장 → 대법관 → 대법원장 등 7단계의 직급으로 나뉘어 있어 법원은 직급 위주의 관료사회로 변질되고 법관은 서로를 승진을 위한 경쟁상대로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일반 법관의 승진·전보·재임명·등 일체의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전제적으로 독점되어 있는 현상과 결합하여 법원 상층부에 대한 충성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법원행정처가 비대화되어 사법부의 행정우위 경향을 초래한 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현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와 함께 제5공화국 이후 법관을 국보위, 청와대 등에 파견 근무시키는 관례가 정착되어 이러한 파견법관들과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은 권력의 의사를 법원에 시달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의 권력지향적 성향과 보수화, 관료화 현상 및 구태의연한 의식, 소명감의 결핍 등에 있다. 역대 대법원장 중에는 공공연히 소위 ‘투철한 국가관’을 강조하면서 극우보수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공안사건과 시국사건에 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해온 사람도 있었다. 또한 법원 상층부의 이러한 의식과 태도는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하고 행정권력에 종속되어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사태를 가져왔다. 그 결과 법원 내부에서도 공안사건과 시국사건에 관하여서는 성역화 현상이 빚어져 이에 대

하여서는 구속영장의 발부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의지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목계로 받아들여지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졌다.

#### 4. 사법부의 개혁방향

지난 20년간에 걸쳐 심화되어온 이와 같은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은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법원 내부에서 조차 상당수의 판사들이 더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사법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지난 6월 말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공표하고 법원 상충부에 대하여 사법부 자신의 깊은 참회와 함께 사법부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법원의 소장판사들도 사법부 개혁을 어디까지나 현재의 재조구성원에 의한 법원 내부의 자체적 제도개선 및 개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지난 7월 1일자 대변협의 결의는 일종 사법부 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법관으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관의 직위와 임신출생에 연연하여 정치권력에 굴복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에 해악을 끼친 인사들이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자신의 영달과 맞바꾸었던 인사들이 다시 모여 법원 개혁을 논의해보았자 근원적인 개혁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니 이러한 인사들의 퇴진이야말로 사법부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결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있는 것이니 대법원의 개편 역시 당연한 요구사항이다. 그 후에야 제도적인 개혁이 내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변협이 그 결의에서 ①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했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했던 인사들의 퇴진, ② 대법원의 개편, ③ 개편된 대법원에 의한 개혁을 요구한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사법부의 실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위 정치판사와 정치판결들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부터 제6공화국에 걸쳐 양산된 공안사건과 시국사건의 거의 전부는 권력에 충실히 수사기관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확대포장되었고 심지어는 조작되어 사법처리라는 명목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또한 법원은 이러한 권리

의 요구에 대하여 법원의 직분인 엄격한 법의 해석·적용을 포기하고 소위 법의 이름으로 독재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을 정당화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넓게는 제5공화국 이후의 공안사건과 시국사건에 관한 판결의 대부분은 정치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통상 정치재판으로 거론되는 판결들로는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전면에 드러난 사건으로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나, 그와 반대로 국민의 여론에 못이겨 사법처리에 넘겨지기는 하였으나 정치권력이 엄정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사건으로서 사법부가 형평에 어긋나는 관대한 판결을 하였던 사건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는 멀리는 1979년의 당시 구신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한 총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1980년의 김재규 피고인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사건, 1980년 당시의 김태중내란음모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제5공화국 시절의 문귀동 경장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사건, 유성환의원 통일국시발언사건 등과 제6공화국에서의 5공비리 관련사건, 문익환 목사사건, 서경원의원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안기부원 흑색선전물사건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사건들에 관하여 정치권력의 의도에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들은 스스로 법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1980년의 신군부가 헌법을 폐기하고 설치하였던 위헌적 기구인 국가보위법회의 등에 참여하였던 인사나 그 이후 청와대 파견근무 등의 기회에 독재권력과 이에 영합한 법원상충부의 연락창구 역할을 하였던 인사들도 개혁으로 다시 태어날 법원에는 걸맞지 않은 인물들이다. 또한 이에 덧붙여 최근의 재산공개과정에서 그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 역시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윤관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의 대개혁을 천명하였고, 그 후 몇 사람의 대법원판사와 그동안 정치판사로 거론되었던 몇몇 법관이 현직을 떠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동안 정치판사로 거론되어 지탄을 받았던 인사들이 모두 사퇴한 것은 아니며, 다수의 이러한 인사들이 재조에 남아 사법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들 역시 재야에서 요구한 대로 스스로 법관직을 떠나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를 시작하면서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한다. 이 사법제도의 개혁안에는 ① 영장의 실질심사제

및 체포장제도의 도입, ② 소액심판소 설치 및 치안판사제도 도입, ③ 법조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은 한편에서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번의 사법부 개혁은 단순한 법원행정 개선 차원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므로 대법원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학계 및 재야법조의 의견을 경청하여 수렴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나아가 제도개혁의 내용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재야에서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던바, ① 법관임용제도의 개혁을 통한 법조 일원화제도의 채택, ② 법관의 직급, 직계제도와 승진제도의 폐지, ③ 인사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어장치 마련 등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때만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루어내지 않고는 사법부의 근원적인 개혁은 기대할 수 없으며, 사법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 끝나고 말 것이다. (변호사)

**특집 : 한국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 우리 사법이 걸어온 길과 앞날의 과제

### 이 범 렬

#### 1. 머리말 — 청산되지 못한 일제 사법제도

우리의 사법이 현재 전통하고 있는 병인은 짧은 우리의 법조사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우리에게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주어진 것은 갑오개혁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전제군주체제의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관리에 의한 전단적인 통치권행사가 있었을 뿐이다.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으로써 이 땅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발되게 되었다. 이 사법제도는 이 땅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요된 사법제도였고 이른바 대륙법적 사법체계로 시종되어 있는 것이었다. 우리보다 불과 40년 먼저 나라를 개방한 일본은 그들의 사법제도를 로마법을 근간으로 한 대륙법적 사법제도로 정비하고 그 뒤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놓았다. 이런 사법제도는 한일합병을 통하여 8·15광복 때까지 반세기 동안 이 땅의 사법제도로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침략과 식민지의 5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사법제도를 운영한 사법인은 대개가 일본인이었다. 광복 이전 일본인은 이 땅 사법제도 종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극소수의 한국인이 나머지를 차지하였으나 그나마 사법조직

의 하위직에 분포되어 있었을 뿐이다. 사법감독관은 물론이고 이른바 형사단독판사 또는 2심 재판장 이상의 중요한 사법직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인의 임명이 배제되었다.

우리 사법의 문제는 광복으로 이런 일본 사법인이 전부 일시에 일본으로 귀국한 역사적 사실에서 현실적인 문제발생의 씨를 찾을 수 있다. 전체 사법의 불과 20% 내외, 그러나 그것도 하위직 사법관직에 불과하였던 한국 사법인들이 일본인들의 귀국으로 공백이 생긴 이 땅 사법조직의 전부를 메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급조된 사법인이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하위직 사법관직에 있었던 사법인들은 하루아침에 사법감독관, 상고심, 항소심 등 고위 사법관으로 비약적인 승진을 하고 그 나머지 직책에는 사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법원 일반직들이 대량으로 기용되어 전체의 80%라는 공백된 사법관직을 메우게 되었다.

정통적인 사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법관청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전형을 거쳐 능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법관으로 임명되는 한편, 그것도 부족하여 대량의 사법인이 간이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일반으로부터 공모되었다. 판검사 특임시험, 간이법원 판사시험, 검사보시험, 사법요원 양성소시험, 조선 변호사시험 등이 그것이다. 정통적인 교육과 전형을 통한 자격심사를 받지 못한 이런 속성의 사법인들은 건국 이후 정통적인 사법시험제도에 의한 사법인 임용이 자리를 잡는 때인 1960년대 말까지 각급 사법기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법인으로 존속하였다. 이러한 속성 사법인들의 수준은 재래적인 대륙법적 사법제도 이론이나 실제 그 자체에도 제대로 익숙하지 못한 정도였다. 하물며 그들에게 광복과 더불어 낯설게 도입된 영미의 사법사상이나 사법제도 운영을 제대로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요구였다. 그 결과 위태하고 한편 암흑 같은 사법기간이 시작되고 장기간 유지되어왔다. 사법에 대한 기초교육 자체도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는 대부분의 속성 사법인들은 오직 그들이 과거 식민지치하에서 사법관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고 들은 일본인들의 사법운영을 외형적인 모양만 모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의 과도기적 현실은 그 뒤의 사법의 실체에 심대한 영향을 안겨 주고 있다. 사법운영에서 기술적 측면의 능력부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완 개선되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운영에서 결정적인 방향타가 되는 사법 정신을 속성교육과 간이한 전형 등으로 하루아침에 정립될 수 없었다. 사법정

신은 교육에서보다는 오랜 사법전통에서 배태되고 진통과 개선을 거듭하며 전수되어 정착되는 것이다.

원래 대륙법적 사법체계는 권위와 능률을 근간으로 삼는다. 이러한 서구 법제를 일본은 자신들의 군국주의에 알맞게 보완 수정하고 다시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도록 거듭 수정한 뒤 한국 사법제도로 옮겨 시행하였다. 이러한 기형화된 대륙법체계에서 비판이 불허된 여건에서 교육받은 우리의 선대 사법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독립된 사법인의 정신과 자세와는 거리가 먼 국가권력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사법운영으로만 사법을 인식하고 그 인식범위 내에서만 사법을 운영하였다. 이런 사법의식은 인권, 적법절차 등 영미의 사법정신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국가 사회의 안녕질서만이 그 지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철저한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사법운영원리에 순치된 극소수의 하위직 사법인, 그들로부터 속성교육을 받고 충분하지 못한 전형으로 무리하게 사법인으로 기용된 사법인, 이러한 우리의 역사에서 어쩔 수 없이 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도기적 사법인이 광복 후 1960년대 말까지 이 땅의 사법운영을 지배하고 지도함으로써 우리의 사법은 당위와는 크게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훌려내려오게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초기 사법인들에게 사법독립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사법관직은 하나의 관료조직에 불과하였다. 재판의 실체를 이루는 것은 인권과 평등의 법리가 아니고 능률과 국가 사회의 안녕질서뿐이었다. 이런 잘못된 의식구조는 그들이 봉사하여야 할 주체는 민중이 아니고 자신들을 임명한 국가권력이라는 그릇된 자세로 그들을 이끌었다. 부당한 정치권력에의 항거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긴요한 민주주의로부터의 요청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해할 능력조차 없었다. 정치권력은 항상 민중과 민중의 인권보다는 우선되어야 하고 상위에 위치하여야 할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불행하였던 것은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불행한 역사가 가져온 이런 과도기적 사법제도는 문자 그대로 과도기적 현상으로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그 기간 내에 정통적인 사법교육을 받은 새로운 사법인이 대량으로 양성되어 조속히 사법 전반에 물갈이를 하는 작업이 강행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후진국의 숙명 때문에 그런 한시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과도기가 장기화되었을 뿐 아니라 물러나야 할 과도기 사법인이 기득권을 주장하여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고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뒤에 참여한 새로운 사법인을 그들이 지니고 있던 잘못된 의식과 관행으로 오염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빚어냈다.

결국 불행한 역사로 인해 근대적 국가로의 탈바꿈이 늦었다는 점, 군국주의의 식민지, 국민지식 수준의 전반적인 저하,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사법은 보기 추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 2. 이승만정권기 헌법운영의 실제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은 그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져본 헌법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헌법이었다. 그 뒤 9번씩이나 개정되고 1987년 전문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모두 그때그때의 정치사정, 즉 집권 세력의 압력과 폭력에 따라 강제로 개악된 헌법이다.

사법에 관련된 헌법운영의 실제를 그간의 정권별로 개괄적으로 훑어보면, 초기의 정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에 대하여 불간섭주의로 일관하였다. 사법의 측면에 국한해볼 때 그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모범적인 대통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인품이나 주의사상, 정치철학 등이 훌륭해서였다가보다는 그가 장기간의 미국 망명시절을 통하여 미국 사법의 실상에 익숙해 있었던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노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미국에 체재하였던 사람이다.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와 사법 우위의 국가이다. 그래서 그는 귀국하여 이 땅의 집권자가 된 뒤 사법운영에 관한 한 미국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서 사법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불간섭 방지주의를 취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법관, 즉 사법정책과 당시 사법의 수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다. 김병로 선생은 그 당시 사법계에서는 추서불능의 절대적인 존재였다. 독립지사로서 식민지치하에서도 결코 지조를 꺾지 않은 몇 안되는 재래 법조인 중의 한 사람인 그는, 사법이 행정부에 대하여 초연할 것을 제일주의로 삼았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였지만 공적으로는 전혀 자신과 무관한 권력자로 대접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적 사법관, 독립지사인 김병로 선생의 사법독립 정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이른바 자유당정권 시기에 사법은 냉대받고 가난하였지만 그래도 헌법에 명시된 그대로 독립된 국가 3부의 하나로 독립된 위상을 지켜나올 수 있었다.

자유당정권 시절 다음의 두 가지 사법현상은 언급되고 넘어가야 한다. 그 하나는 법관연임제도이다. 당시 헌법상 법관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었고 또 헌법상 10년의 연임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1958년경부터 법관연임제도가 실제로 운영되어 연임이 거부되는 법관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행정권력이 사법권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법계의 실제 여론은 그 연임제도 운영의 실제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연임이 거부되어 도태된 소수의 법관들은 대개 앞서 말한 광복 직후의 공백기에 속성 임용된 법관 중 가장 무능하고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관들이었다. 그 중 유일한 예외를 이른바 진보당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유병진 부장판사로 보는 시각이 가장 유력하다. 자유당시절의 정권과 사법과의 관계에서 언급되어야 할 또 하나의 사례는 이른바 경향신문 가처분사건이다. 자유당 말기 장기집권으로 독재화한 자유당 정권은 정권에 비협조적인 경향신문에 대하여 폐간의 제재를 가하여 일반경고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였다. 경향신문은 사법구조에 호소하여 폐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사법은 이를 외면하였다. 그것이 행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에 대한 행정부의 회유공작 때문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부끄러운 것은 4·19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자 당시의 대법관들이 자체없이 상호 전화연락으로 합의형식을 취하여 장기간 방치하여두었던 가처분신청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당정권시절 사법은 냉대의 대가를 치르면서 사법의 독립을 지켜왔다. 국민의 경제 수준 자체도 무척 낮았지만 당시의 사법관료에 대한 경제적 처우는 입법과 행정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크게 뒤쳐 있었다. 판사들은 대개 군화를 신고 담요를 염색하여 만든 외투를 입고 다녔으며 엄동설한에도 기존의 난방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사비로 군용 스토프를 장만하여 역시 사비로 구입한 마젝크 틴이 타는 노란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해가며 짐무를 봤다. 그들이 받는 처우는 월급과 배급 쌀을 합쳐도 겨우 기아를 면할 최저의 것이었다.

## 3. 군사정권의 등장과 사법권의 붕괴

우리 헌법상 제2기의 정권은 5·16군사정권이다. 이정권과 자유당정권 사이

에 최초로 내각책임제를 시도한 장면정권이 존재하였지만 6개월밖에 존속하지 못하고 단명하여 정권적인 가치조차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운의 단명으로 사라진 이 정권이야말로 전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정권시절 사법에 관련된 사실로 법관 추천제도가 창설되었던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사법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를 총망라한 전체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결정하기로 하였던, 이 민족에게는 너무나 분에 넘친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사법제도는 그 실시 며칠 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박정희 일당의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타고 한강을 건너옴으로써 수포로 돌아가버렸다. 이른바 5·16정권은 그 전기의 제3공화국 시기와 그 후반의 유신정권시절로 나누어진다.

5·16정권은 그 정권 전반기에는 그나마 헌정체제를 갖춘 정권을 유지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 당시 사법의 수장은 조진만 선생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정치군인들이 어째서 사법의 수장으로서 조진만 선생을 선택하였는지 그 경위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내심의 의사가 사법권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사법의 수장으로서 전체 사법인의 중망을 지니고 있는 조진만 선생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권운영의 합리성을 국민 앞에 내세우려고 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조진만 선생은 식민치하에 사법인으로 교육받고 사법계에 입신한 사람이다. 그가 우수한 사법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식민지시절 일본 법관들로부터도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고 한국인으로서의 최고위직 사법관적인 복심법원 재판장직에까지 등용되었던 사람이다. 쿠데타로 합헌정부를 번복하고 정권을 강탈한 5·16정권자도 이러한 조진만 선생의 인품과 경력, 그리고 사법인으로서의 기개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3공화국 시절에는 정권이 나름대로 국민적 감정에 합치되어 있었다는 국가 사회적 여건과 조진만 선생의 인품, 정권자의 그에 대한 개인적 존경 등의 사정으로 사법은 표면상 평온을 갖고 최소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신을 지켜가며 국가 3부의 1부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외견상의 평온 속에서 내부적으로 사법 붕괴현상이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에게는 정통성이 없다. 정통성 없는 정권은 그 존재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식한 정치군인들은 이 무서운 역사의 원리를 모르고 그들의 정권을 장기화하려 했다. 그 수단으로 그들은 정보공안기관을 강화하였다. 5·16

정권자나 그 추종세력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중앙정보부라는 막강한 정보공간기관의 창설을 막았어야 했다. 중앙정보부의 발족은 5·16정권 멸망의 신호탄이었고 그 시발점이었다. 이 중앙정보부는 서서히 사법에 침투하여 사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권에 협조하도록 사법인을 순치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공안사건에서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 집에 봄늦게 협박전화가 걸려오고 미행이 뒤따르고 하는 위협공작들이 시작되었다. 기가 막힌 것은 법과대학에서 정통적인 민주주의를 교육받는 일부 공안검사들도 이런 사법 침략작전에 자진 참여하여 자신들의 영전을 꾀하였다는 타기할 만한 사실이다.

사법인들은 서서히 위축되어갔다. 원래 이런 부당한 외세의 침투를 사법의 수장 또는 고위 사법인들은 그들의 관직을 걸고 막아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서 말한 대로 당시 사법의 수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들 전부가 식민지치하, 국가 사회의 안녕질서만을 유일한 사법의 지표로 교육받고 정권자에 대한 충성을 당연한 자세로 여기는 관료적 의식구조가, 강요된 시절에 사법에 종사하였던 사법인들이어서 그들은 정보공안기관의 사법침투를 애써 못본 체하는 소극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시종하였다. 이런 그들의 소극주의와 무기력은 끝내 군 장교들의 대법원 침입이라는 창피한 사법역사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기간에 오직 판결로써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전통 사법인들이 그들의 판결에서 정권과 초연한 사법의 자세를 엿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최윤모, 주운화 등 몇몇 최고 법관들은 구체적 사건에서 사법이 행정부의 정책수행, 특히 정권의 방향과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을 포함한 항거 법관들에게는 그들이 타의로 퇴임할 때까지 24시간 정보공안원들이 미행하였다. 심지어 기차여행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보공안기관원들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내놓고 정권의 절대성을 과시하면서 항거 법관들을 위협하였다.

#### 4. 유신정권 —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

유신선포로 5·16정권이 단말마적인 발악을 나타낸 것은 조진만 선생이 퇴임한 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5·16정권자는 거리낌없이 내놓고 사법을 침략하

였다. 어쩌면 그들의 이런 공연한 사법침략은 그 직전에 있은 사법 수장의 교체와 전혀 무관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당시 5·16정권은 권력의 적자운영이 장기화되어 유신선포라는 발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말마적 병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유신선포 시점에서 사법의 독립은 헌법전 속에 부끄럽게 그 모습을 감추고 실제에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분별력을 잃은 박정희 정권은 유신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인물로 조사된 60여 명의 법관을 하루아침에 해직 추방하는 폭거를 단행하는 한편, 사법의 수장으로부터 일반판사에 대한 전보권까지 빼앗아갔다. 판사에 대한 전보는 대법원에서 총무처를 거쳐 청와대에 상신되어 결재되고 같은 순서로 대법원에 내려왔다.

전국 법원에 조정관이라는 중앙정보부 사법감독관이 배치되었다. 여기에 뒤질새라 군 보안사 요원들도 법원에 자신들이 상주할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항상 정권자의 편이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이런 정보공안원들과 어울려 사법을 감시하였다. 자신이 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2개월 동안 경찰로 하여금 그 재판장을 미행시킨 공안검사도 있었다. 가장 기가 막힌 일은 일부 법관들도 이런 침략작전에 영합하여 스스로 그들에게 협조하였다는 사실이다. 행정부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국기하강식을 자진해서 사법관청에 도입해서 오후 5시가 되면 방마다 설치된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훌러나오고 그러면 책상에서 판결을 쓰고 있던 판사들이 벌떡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차렷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엄숙한 행사도 시작되었다. 행정부에서 하던 이런 행사를 스스로 알아서 사법관청에 도입한 당시의 법원 행정처의 고위직은 이 일을 자신의 큰 업적으로 자랑삼아 떠들고 다녔고 그 뒤 그 공로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최고법관직에까지 영전하였다. 자신이 선고한 공안사건죄의 판결결과를 서기과에 판결초고를 내려 보내기 전에 중앙정보부에 전화로 먼저 보고하는 충성스러운 법관까지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사법 침략의 정도가 깊어짐에 비례하여 사법에 주어지는 경제적 처우는 향상되어갔다는 사실이다. 판직을 걸고 외부침략에 맞서야 할 최고법관들이 자신들의 책무는 외면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대통령이 하사(?)한 골프채를 들고 뒤늦게 배운 골프로 푸른 잔디 위에서 흐흐낙락하는 모습이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

유신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사법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모두 봄베이 최후의 날처럼 정상이 아니었다. 독재정권의 당연한 인과로 유신정권의 권력 내부의

분쟁의 격화로 몇 발의 총탄과 더불어 종막을 내렸다. 유신정권 시절 사법인의 궁지를 버리고 사법이란 보루를 권력자 앞에 무혈명도하고 앞을 다투어 권력자에게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영전을 꾀한 타락한 정치판사의 존재와 그로 인한 사법의 피해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사법연수생 정도의 실력도 갖추지 못한 사법인이 연공서열과 투철한 국가관 — 이것은 정권관이었지만 — 으로 최고법관으로 기용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소속된 재판연구관이 작성 제출한 의견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권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할 때 대개의 법관들은 몸조심을 하느라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 결과 그 어떤 공안사건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환송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고 ‘돌아온 사형수’가 양산되었다. 원래 확정된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될 것이 예상되지 않은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그런데 현실은 사형판결을 받는 사람이 몇 년 뒤 바로 그 사형판결을 내세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회극적 현상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사법은 사형선고를 해서는 안될 사람에게 사형판결을 할 만큼 주체성을 잃고 타락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 최고법관이었던 어떤 대법관은 판결에 대한 소수 의견에서 노골적으로 동료 판사들에게 헌법감각이 없음을 탄식하였다. 이 대법관은 재직 중 두 가지 사건판결에서 정권자의 비위를 짚고 격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 하나는 이른바 간첩사건인 송씨일가 사건에서 불법구속 아래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은 판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동작동에 설치된 육영수 여사의 묘소 규모에 관한 사건판결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는 장기간 그의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정보공안원의 사전통제 사후조사의 제약을 받는 수모와 고역을 치렀다. 동물도 다친 동족의 상처를 함께 훑어주는 동족애를 보인다. 그런데 당시의 사법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동료 법관이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어도 그 누구 한 사람 항거를 시도하는 용기를 보인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외면하여 못본 체하고 그런 화를 자초하지 않을 것을 내심 다짐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반드시 개개 법조인의 용기 부족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가혹할는지 모른다. 그 원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일찍이 항거와 생취의 역사를 가져보지 못한 우리의 젊은 사법사,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식 교육으로 등용된 사법인의 전반적인 소극자세에서 찾는 것이 보다 온전할지도 모른다. 국가 사회의 안녕질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같은 구세대적인

사법관념이 법관을 소극적으로 그리고, 무기력하게 또 정권에 협조적으로 순치시킨 것이다. 원래 정권과 국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별개의 개념이다. 그리고 사법의 독립은 국가정책으로부터의 독립에서 시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초보적 헌법관념조차 갖추지 못한 사법인도 적지 않게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결코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

### 5. 사법 무기력주의의 극치 — 제5공화국

그들은 끝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총탄으로 18년간 이어져 온 박정희정권이 붕괴되었어도 그 뒤의 사법은 전혀 굴종과 무기력의 높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다. 그것은 그 뒤를 이은 전두환정권이 5·16정권의 유신정권 못지않은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이다. 몸소심 제일의 사법 무기력주의는 여전히 눈에 띠는 사법 박해가 없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전체 사법을 지배하는 분위기를 이루었고 선배들의 박해와 굴종을 눈으로 지켜본 후배들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자신들도 뒤따라 걸어왔던 종전의 보조를 바꿔불을 뜯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른바 시국공안사건에서는 여전히 무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어쩌면 전두환의 독재는 박정희의 그것보다 그 정도를 상회하였는지도 모른다. 박정희는 그것이 웃든 그르든간에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 비록 일제 식민지치하 만주군 초급장교라는 향기롭지 못한 경력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는 나름대로 애국애족의 충정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그렇지 않다. 그는 국가관도 정치철학도 없는 정치군인이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불 같은 권력에의 집념뿐이었다. 그는 정권유지를 위한 방법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권은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의 정통성은 그 성립과정과 유지과정의 두 가지에서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라 불리는 전두환정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지 못하였다. 정통성 없는 정권은 자멸 이외에 종막의 방법이 없다. 결국 그도 6·29선언이란 출처 불명의 항복선언으로 정권에서 물러났다. 현재 그는 애써 자신이 단임이라는 헌법을 준수한 이 땅의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그럴싸한 호언을 하고 있다지만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자기변명이다. 그는 임기를 마친 것이 아니고 자멸한 것이며 가장 추하게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붕괴한 독재자로서 영원히

이 나라 역사에 지탄대상의 인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에서 보아온 것처럼 사법은 그때그때 권력의 성격에 따라 그 위상을 달리 하여왔다. 정통 정권 아래에서는 나름대로 사법의 위상이 지켜졌고 비정통 권력 아래에서는 그 비정통의 정도에 따라 그 위상이 무너져 내려앉았다. 사법이 가장 타락한 시기가 유신말기와 5공말기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바로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있다. 5공말에 이르자 국민들은 더이상 사법을 자신들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최후 보루이기는커녕 권력의 추종자·앞잡이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성하다고 하는 법정이 야유와 고성방가로 들끓게 되었다. 자업자득적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사법을 이렇게까지 타락시킨 책임은 물론 관념적으로는 전체 사법인에게 있겠지만 실제에는 사법의 수장을 비롯한 몇몇 고위직 사법관, 그리고 입신양명에 눈이 어두워진 극소수의 정치 사법인들에게 국한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들 정치판사들은 한마디로 사법관직을 사회정의 구현의 숭고한 책무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사후 그 관직이 자신의 족보와 비석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한심스러운 의식구조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반드시 이들 정치판사들만을 일방적으로 책망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보다는 몇백 년을 이어온 왕조 속에서의 피치자와식, 일제식민지 아래에서 배태되고 증식된 권력자에의 아부와 굴종의식 등의 역사적 요인을 전혀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소리이다. 어쩌면 오늘날 매도되고 있는 군사정권 아래에서의 정치판사도 이러한 굴종된 역사의 희생자가 아닐까.

또다른 시각도 생각할 수 있다. 근래 검찰의 일각에서 과거 독재권력자에 추종하여 사법침략의 선봉자 노릇을 했던 일부 검사들에 대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역사를 모르는 임시방편에서 나온 성립될 수 없는 시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뉘른베르크에서 있은 독일 전범재판에서 국가사회주의에 충실하여 악명높은 ‘우생법’을 적용하여 유대인에게 단종의 형벌을 남용하였던 독일 사법관들의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던 일”이라는 면죄 주장은 그 전범재판에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배척된 역사적 선례가 있다.

권리와 의무는 한 장의 종이처럼 표리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민에 대한 생사여탈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은 그 권력의 강도만큼 그 권력을 정의에 맞도록 행사하여야 할 무서운 책무가 뒤따른다. 잘못된 사법권의 행사는 정권의

압력이라는 명분으로는 절대로 면책될 수 없다. 그들에게 사직의 자유도 없었던가!

### 6. 맷음말 — 사법의식의 개혁을 위한 제언

1993년 2월 25일 이른바 김영삼정권이 탄생됨으로써 32년에 걸친 군사독재 정권시대는 종막을 내리고 장면정권에 이은 정통의 문민정권으로 헌정이 제 위치로 돌아왔다. 이 문민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는 과거 청산이다. 32년간 사회 곳곳에 침투되고 국민의 일부 의식구조 속에까지 파고든 비민주적 요인을 찾아 씻어내는 것이 역사가 이 정권에게 부과한 제1과제이다. 32년의 군사독재정권이 남겨놓은 '악의 유산'인 권위주의, 군사문화주의를 찾아내고 씻어내는 작업중에 사법 청산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사법은 다시 헌법에 선언된 당위적인 위상으로 복귀하는 자체작업을 강행하여야 한다.

그려면 먼저 사법의 현재 위상이 어떤 것인가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고전적인 3권분립 이론이 적용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3권의 협조와 견제가 보다 요긴하다고 시대는 요청하고 있다. 국회에 대해서는 단순한 입법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보다 더 요청되는 정치여건이다. 이러한 정치여건 아래 위헌 입법에 대한 심사는 3권의 1부인 대법원이 가졌어야 우리의 헌법정신에 맞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공말기에 사법에 주어지려고 했던 위헌심사권은 몰지각한 당시 사법의 수장에 의하여 자진 반납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었다. 영미법식 사법우위 국가를 지향해야 할 마당에 대륙법식 헌법재판소제도가 끼어들어 사법체제가 2원화되어 사법 전반이 약화되어버린 것이다. 사법은 끝내 민형사 재판기관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사법이 국가 3부의 하나로 입법·행정과 헌법상의 지위가 동등해질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사법은 주어진 여건에서 당위적인 위상을 찾는 자구노력을 강행하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의식의 개혁이다. 사법의식의 개혁은 과거에 대한 빼저린 후회와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과거 사법의 타락 시대에 그 타락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법인들이 과감하게 숙청되어야 한다. 제5공화국의 자멸 이후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사법인들이

임기를 마치고 현직에서 물러났다. 소극주의와 무기력, 더러는 권력자에 대한 자진충성으로 사법을 타락시킨 책임 있는 사법인들은 대개가 그동안 현직에서 물러나 있다. 그러나 만일 아직도 책임져야 할 사법인이 현직에 잔류해 있다면 그들은 자진해서 법복을 벗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체 사법과 자신들을 위한 일이니까.

다음에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는 타락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혁이다. 장기간의 군사독재시절 사법의 수장과 고위직은 그들이 해야 할 외압에의 항거에 대하여는 무기력하면서도 전체 법관의 인사권에 대하여는 강한 집권을 나타냈다. 어떤 사법의 수장은 그 인사권을 정권 굴종의 수단으로까지 사용하였다. 어떤 국가제도이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따라서 인사의 적정은 그 제도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다음에 그 어떤 상황에 독재가 되돌아오더라도 사법이 그에 항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현행 법관의 인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법관선출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임용의 객관화를 시도해야 한다. 현재의 식민지식 임명권자 전단의 임용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원래 기존의 제도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썩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다. 되도록 기존의 제도를 당위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쌓아 그것으로 기존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사법우위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최고법원 판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민의식과 관행은 일단 임명되는 순간부터 최고법원 판사는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물론 그들은 임명 이전에 상원에서 철저한 자격심사를 받는다. 이 자격심사가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하여는 이미 지상에 상세히 보도되어 주지의 사실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는 너무 제도 자체에 얹매여 그 합리적인 운영과 운영관행을 무시하고 있다.

사법의 장과 최고법관 임용에서는 전체 법조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와 관행이 새로 창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인증도 지금처럼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임용에 관한 헌법상 임용권자의 재량을 극도로 축소해야 한다. 미국의 최고법원 판사임용에 관하여 미합중국 법률가협회는 거부권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는 반드시 제도라는 법조문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관행으로 정립하면 되는 것이다. 최소한 사법의 수장과 최고법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거부가 없어야 한다는 관행을 대통령과 국회는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사법제도 개혁에서 필요한 또다른 하나는 사법교육제도를 철저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민형사 판결문 작성요령 교습으로 시종하고 있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와 그 운영을 법조인 양성이라는 크고 넓은 시각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행의 직업재판관에 의한 재판독점제도, 법관관료주의 등도 법조 일원화의 시각에 맞게 개선하는 기초작업이 착수되어야 한다.

현행의 사법제도는 이미 침략의 굴욕을 겪었다. 다시 이런 굴욕을 겪지 않으려면 철저한 침략 제어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법조 전체가 진지하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진지한 사법독립의 노력을 해야 한다. (변호사)

###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

##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 ②

유 현 석

### 제헌 국회의원 선거

먼저 말한 대로 미군정은 1948년 3월 17일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원래는 1948년 5월 9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가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기독교계에서 반대하여 하루를 물려 5월 10일로 한 것이다. 만 21세에 선거권이 있고 만 25세에 편선거권이 주어졌다. 나는 1927년 9월 19일생이라 1948년 5월 10일 현재 만 21세에 달하지 못하여 선거권이 없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3년간 남한에서 군정을 해보니 그 래도 제일 믿을 만한 곳이 법원(그때는 심리원이라 불렸다)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관리를 법관에게 맡겼다. 그것이 현재까지 내려와 선거관리에 법관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관이 선거관리에서 손을 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선거소송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장,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 2인, 행정수반이 임명한 대법관 2인, 도합 5인으로 구성된 선거심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어서 선거소송이 대법원의 관할로 된 것도 이때부터인데 이것도 이제는 각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튼 나는 선거권은 없었지만 법원직원으로서 선거사무에 종사하였다.

미군정은 이 선거에 관한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후보자의 기탁금도 없고 무소속과 정당소속의 차별도 일절 없었다. 다만 지금과 다른

것은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와 일본제국의 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현병, 현병보와 고등경찰 및 그 밀정, 중추원부의장, 고문, 참의, 부 또는 도의 의원과 자문의원, 3급 이상의 고등관(기술자, 교육자 제외) 직에 있던 자, 훈 7등 이상을 받은 자 등 친일파에게는 피선거권이 없었다.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선거예산이 영달되어오는데 예산이 어떻게 많은지 전직원이 선거기간 내내 매일같이 출장을 다녀도 남을 만큼 출장비가 나왔다. 또 자동차용 휘발유가 현물로 나왔는데 군청과 법원의 자동차(군청은 잘 모르겠으나 법원은 트럭 한 대밖에 없었다)가 선거기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도 남을 만큼 드럼통에 넣어 보내왔다.

그때는 주민등록제도도 없었고 8·15 전에 쓰던 기류부는 해방 후로는 쓰지 않았으므로 직권으로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거일 전 60일 이래 거주으로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선거인 등록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고 선거일 2일 전에 그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완전한 문맹자라든지, 왜 선거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무식한 사람은 많이 투표에 누락되었다. 교육수준이 말이 아니던 그 시대에 평등선거 자체의 합리성이 의심되던 판국이었으므로 투표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 이런 것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투표용지는 중앙에서 같은 규격으로 작성하여 투표봉투와 함께 보내오는데 입후보자 수가 적은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빈칸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빈칸에다 '김일성'이라고 써넣고 봇두껍으로 ○표를 해놓고 간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기표하고 나오면 선거종사원이 기표소 안을 들여다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다음 사람이 들어가곤 하였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한글과 한문으로 쓰고 기호는 숫자가 아니라, 작대기를 숫자대로 그어 표시하였다. 기표한 다음에는 선거위원회가 교부한, 아무것도 써어 있지 않은 흰 봉투에 넣어 투표하였는데 그 봉투는 개표 후 법원과 군청에서 1년 내내 쓰고도 남았다.

개표는 참관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앉고 개표종사원이 봉투에서 투표지를 깨내어 펴들고 참관인에게 보이면서 아무개! 하고 놔고 정한 자리에 쌓아놓는다. 이렇게 개표를 하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밤중 한 시쯤 되면 '밤참 먹고 합시다' 하고 순사 한 사람만 세워놓고 모두들 가서 밤참 먹고 다시 와서 개표를 계속했다. 그래서 개표가 보통 2일씩 걸렸

다. 그래도 사고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으니 얼마나 멎이 있는 국민이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선거운동에서는 매수, 협박, 폭행 등 불법한 것만 아니면 선거에 관한 선전이 무제한으로 허용되었으므로 선거기간 40일 동안 계속해서 벽보가 붙여지고 연설회 등이 열렸다. 내 고향 충남 서산에서는 독립운동하다가 애석하게도 일제말기에 마지못해 일본에 협력한 이종린(李鍾麟)씨가 출마했는데 신문지에 먹으로 벽보를 써붙이면서 붉은 글씨로 도리어 인기를 얻고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동양(夢陽) 여운형(呂運亨)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운변가로 불릴 만큼 연설도 잘했고 당선 후 제헌국회에서 교통체신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분이다.

어쨌든 지금 선거하는 풍경과는 판이하였다.

## 6·25 때 얘기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내 나이 24세, 통일되면 예쁘기로 이름난 강계(평안북도 江界)색시에게 장가들겠다고 벼텨오던 내가 건강이 좋지 않던 어머니의 성화에 할 수 없이 맞선을 보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여자 쪽이 객지에서 국민학교 선생을 하고 있어서 일요일이 아니면 곤란하다 해서 그렇게 택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강계색시 생각에 골몰하고 있던 내가 어머니의 성화에 마지못해 맞선을 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날씨가 나쁘니 평계가 되었다. 그러나 100리밖에 안 떨어진 그곳은 날씨가 좋다는 전화연락이 왔다. 그래서 새 양복에 우산을 쓰고 버스터러 갔다. 그집 윗방에 안내되어 앉아 있노라니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들어왔다. 키가 작아 보였다. 무슨 말을 물어보았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선보는 날은 집에서 대접을 안하는 법이라고 하여 시내에 나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타고 왔다. 장인자는 그곳에서 사법서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마음에 든 모양이지만 나는 그저 그런 정도였다.

홍성역에 오후 2시쯤 내리니 난데없이 신분증을 보잔다. 그때는 신분증 같은 것은 아예 없었고 명함을 보이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그러는지도 몰랐다. 집에 와서 있는데 사이렌을 불고 소방대를 소집한단다. 어디 불이 났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38선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근거도 박약한 소리가

들린다.

그때부터 집집마다 뉴스를 듣느라고 하루종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으니 진공관 라디오가 견디지 못하고 라디오가 들리는 집이 하나도 없다. 나는 공과대학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래도 무얼 좀 안다고 안 들리는 라디오를 모두 가져오라 해서 뜯어서 방바닥에 늘어놓고 이것저것 철사로 훠여맞춰서 들리게 해놓고 이웃을 불러 같이 들었다. 아끼느라고 뉴스시간만 듣고 끄기로 했는데 이따금씩 임시뉴스를 하니 켰다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런데 6월 28일 돌연 방송이 끊어지더니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시인민위원회입니다’ 하는 소리가 나온다. 서울을 점령당한 것이 분명했다. 아니 적어도 방송국을 점령당한 것만은 분명했다. 방송출력과 주파수가 분명 서울중앙방송이었으니까.

그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사는 고 이운근(李雲根)씨였고, 검사는 고 황옥주(黃旭周)씨였다. 이운근 판사는 황해도 사리원에서 검사국에 근무하다가 월남한 분이라 공산당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고, 황옥주 검사는 강화도 출신이었으므로, 전세가 불리해지면 이운근 판사는 무조건 도망갈 생각이었고 황옥주 검사는 어떻게 고향에라도 가서 숨을 작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이 점령당한 것이 틀림없었으므로 판검사에게 그 얘기를 하자 이판사는 황검사보고 도망가자고 했고, 황검사는 그래도 경찰의 정보와 본청의 지시를 따를 생각이었다. 그런데 서울중앙방송에서 인민공화국방송이 계속 흘러나오는데도 경찰서장 주모씨(나중에 어느 법조인의 장인이 되었다)는 내가 그런 소리를 퍼뜨렸다 해서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등 은근히 위협을 하였다. 그러니까 판검사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계는 거짓말을 안한다”고 반격했다.

이렇게 7월 16일까지 버티다가 경찰이 대전지방법원장(당시 권영옥)의 무전 ‘전세호전, 직장사수’를 법원에 전달하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좌익이라고 예비검속되었던 사람들을 성연면 넘어가는 산에서 학살하고 배를 모조리 끌고(현재는 태워버리고) 도망을 쳐서 치안공백 상태가 되었다. 서산이라는 곳이 천안 서 남쪽으로 장항선을 장악당하면 섬이 되어버리는 곳이라 아차 하면 배도 없고 육로로도 도망갈 수 없는 곳이다.

이판사는 그때 서산법원에 있던 트럭을 타고 육로로 도망갔고 황검사는 바닷가로 나가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가려다가 배가 없어 못가고 불들려 서산 내무서에 끌려와 갇혀다가 9·28수복 때 인민군이 도망가면서 읍암면 산에서 총살

하여 나중에 그 시체를 찾았다.

6·25 때 대전지방법원 관내에서 공산당에게 불들려 희생된 판검사들이 내가 아는 법위 내에서도 천안지원 정봉모 판사, 청주지원 양영박 판사, 대전본원 이상준 판사, 홍성지청 성세호 검사, 서산지청 황옥주 검사 등 여럿인데 지금 법원이나 검찰에 그 명단이라도 있는지, 참으로 야속한 세월이고 관청치고 이렇게 차고 물인정한 관청이 법원, 검찰말고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지방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지원에는 ‘전세호전, 직장사수’라고 무전하달을 해놓고 자기는 원장차(지방법원장에게만 왜건형의 승용차가 주어졌다) 타고 개까지 신고 도망갔으니 이런 매정한 일도 있을까? 대전본원의 이상준 판사는 걸어서 남쪽으로 영동까지 갔는데 밭은 부르트고 주머니는 비었고… ‘나는 민사재판만 했으니까 설마 불잡혀도 죽이기까지는 않겠지’ 하고 돌아서서 대전으로 도로 오다가 그에게서 민사재판을 받은 사람한테 불들려 끌려가서 죽었다고 한다. 확인된 소리인지는 몰라도 나는 이상준 판사 부인에게서 그 말을 들었다. 내가 대전지방법원에 발령을 받고 집을 사려 다니다가 우연히 사게 된 것이 이상준 판사가 살던 집이었고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집에서 산 일이 있었다. 괴에 대한 부역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다가 반발이 심하자 그만둔 일도 있었다.

나는 선만 보고 회답을 못한 채 전쟁을 겪어서 상대방의 소식이 몹시 궁금하였지만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전쟁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성동맹이라도 안했는지, 집안은 무사한지… 사정은 상대방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다가 우연히 어떤 신부님이 양쪽 소식을 알려주어 피차 무사한 것을 알았지만 이제 와서 사선을 넘어온 사람끼리 쉽다고 딱지를 놓을 수도 없게 되어버려 맞선본 것이 그대로 약혼한 것이 되어 두말 못하고 1951년 11월 4일 결혼하게 되었다.

### 9·28수복 후

9·28수복 후 한참 만에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으로 돌아왔으나 청사는 미군이 점령하여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법원 사무는 관사에서 보았다. 관사 방에 앉아서 피고인을 창문 밖에 세워놓고 기록을 창문바닥에 펴놓고 창문 열고 재판을 하고, 창문 닫고 점심 먹으려 가곤 하였다. 미군이 법원 청사를 점령하고 큰 군용트럭들이 들락거려서 비단 오면 땅이 질퍽질퍽해지니까 미군들이 등기창고에서 등기부를 실어내다가 땅에 깔고 다니고 하여 등기부가 다 없어졌다.

그것도 등기부 멀실로 인한 회복등기감이었다. 등기부가 질깃질깃한 청호지로 되어 있어서 진흙땅에 깔면 아스팔트길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좋았다. 그러다가 미군측이 철수하고 법원이 청사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미군이 보일러를 고쳐 놓아서 겨울에 덕을 모았다. 그런데 1959년 1월 10일 서울로 전근와서 민사단독을 하는데 실장(당시 김홍규부장)이 석탄값을 내란다. 무슨 소린지 어리둥절해하니까 청사 보일리는 모두 녹슬고 불을 때지 못하므로 법원 행정처에서 각 방에 난로를 하나씩 놓아주고 연료는 각 방에서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 알뜰한 봉급에서 얼마씩 석탄값과 불쏘시개값을 내고 겨울을 나고 있었다. 대전에서는 미군 덕분에 그런 것을 모르던 나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들 내는데 어쩔 수 없고 해서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문영극 판사가 이달에는 자기가 마련해줄 테니 다음달부터는 유판사가 스스로 마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이 시골놈 석탄값 좀 내주라고 한다. 그는 내가 그 변호사를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실은 그는 나와 같이 군법무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나도 잘 아는 변호사였다. 판사가 봉급 타가지고 판사실 석탄값을 내다니 참으로 억울했다.

기왕 봉급얘기가 나왔으니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월급 타서 쌀 3말과 숯 한 포(褒) 사면 남는 것이 없으니 김치도 간장도 먹지 말라는 정도였다. 1953년 2월 원(圓)을 환으로 하는 화폐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식구당 50,000원(500환)씩 바꿔주었는데도 판사 중에는 그 돈이 없어서 바꾸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까(나도 그 중의 한 사람) 대략 짐작 하리라.

1962년 6월 제2차 화폐개혁이 발표되고 10환을 다시 1원으로 바꿨는데, 그때 마침 서울지방법원의 배기호 부장판사가 사망하였으나 새 돈들이 없어서 부의금도 못내고 외상으로 적어놓는 일도 있었다. 내가 1966년 3월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하다가 사직할 때는 1호봉에 가봉이 붙어서 더 올라갈 데가 없었는데도, 그리고 원장 봉급과 5,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도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3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 내가 개업했을 때 몹시 서운해하던 마누라가 첫 달에 10만 원을 가져다주니까 3만 원 받던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웃음이 난다.

## 이돈명과의 만남

내가 대전지방법원 판사 하다가 휴직하고 군에 가 있을 때 휴가 나와서 법원에 들렀더니 다들 반가워하는데 모르는 판사가 하나 와 있어서 처음 인사를 한 것이 이돈명 판사다. 그는 제간에는 이제 군대에 간 어린 놈이라고 생각했는지 별로 신통한 반응이 없었고 제대한 후 같은 부에서 일을 하게 된 후에야 피차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와는 40년을 사귀어온 친구다. 나이는 나보다 더 먹었지만 이른바 법조서열이 낮아서 나는 우배석, 그는 좌배석으로 재판장은 갈려도 배석은 떨어지지 않고 2년 반 동안을 같이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먼저 1959년 1월 10일 서울에 왔고 이돈명 판사는 1960년 1월 20일 서울로 전근왔다. 원래 그는 서울 종로 네거리에 갖다놓으면 동서남북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촌놈이어서 나는 그가 서울로 전근 오는 날 하숙집 앞선에서부터 법원 오는 길까지 데리고 다니며 가르쳐주어야 했다. 그리고 내 친구를 소개하여 술 한잔 사게 하고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니는데 두 달 동안이나 그렇게 하니까 저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좀 쉬자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관계 없이 '친구가 왔으니 너 술 한잔 사라' 하면 기분좋게 살 친구가 서울에 60명은 되었다는 얘기가 되니 나도 상당히 인심을 얻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나는 서울에서 자라고 학교에도 다녔으니까 그렇다치고 이돈명은 완전히 촌놈이었는데도 어떻게 불임성이 좋은지 소개해준 내 친구가 어느 사이에 이돈명의 친구가 되어 나는 떼어놓고 저희들끼리 놀다가 나한테 들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니 그의 인품과 재주는 알아줘야 한다. 내가 그와 더불어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차린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은 자연의 이치이다. 같이 소위 인권 변호사 노릇을 한 것은 누가 하자 해서가 아니라 의기상통했기 때문이다.

## 제4대 민의원선거

1958년 5월 2일 제4대 민의원선거가 있었다. 제헌의원선거 얘기는 앞에서 했고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6·25 직전인 1950년 5월 30일에 있었는데 별로 부정선거 시비가 없이 넘어갔다. 그런데 국회가 개원해서 얼마 안되어 사변이 났기 때문에 더러는 회생되고 부산으로 피난간 사람도 이승만의 독재가 시작되고 1952년 이른바 5·26정치파동으로 양원제 개헌이 되어 이리저리 당을 옮

거다녔다. 그러던 것이 제3대 민의원선거(195년 5월 20일) 때부터 양당정치가 모습을 갖추어갔고 제4대 선거 때는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부정선거 시비도 상당히 많았다. 이때 판사로 있던 나는 대전시 갑구의 선거위원회가 되었다. 그때는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도 정당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 때인데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공천을 받은 정낙훈씨와 공천을 안 받은 정상렬씨들이 입후보했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은 임경승씨와 공천을 안 받은 유진령 변호사들이 입후보하여 선거는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었다. 자유당 공천의 정낙훈씨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고, 반면 공천을 못 받은 정상렬씨는 제3대 민의원으로 차기 제4대에 출마하려는 현역의원인데 자유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 반발하여 출마한 것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잘못하여 인기가 좋은 유진령 변호사에게 공천을 안 주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임경승씨에게 공천을 주었기 때문에, 인기없는 여당 공천자와 인기있는 야당 비공천자의 싸움이 볼 만한 것이었다.

선거일이 공고되고 입후보등록이 시작되자 나는 대전 갑구에서만이라도 그야말로 공명선거 한번 멋있게 해볼 작정으로 법원일은 모두 연기해놓고 아예 선거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선거위원 7명에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각각 한 사람씩 있었다. 행정판서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선거위원회의 공정성은 보장되는 상황이었다. 입후보등록이 시작된 다음날 아침 9시 선거위원회 사무실인 시청회의실에 출근하니 웬 사람들이 사무실 안에 3~40명 빽빽하게 들어서서 서성대며 담배를 피워대며 연기가 자욱했다. 대뜸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코트와 모자를 벗어놓고 사무실 안을 살펴보니 을구 직원들만 있고 갑구 직원들은 하나도 안 보였다. 선거위원도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았다. 방안에 서성대는 사람들이 저희끼리 때리고 가자느니, 밥값을 하라느니 하고 있었다. 깡패의 일당임이 틀림없다. 잘못하다가는 거기서 죽거나 병신될 것 같았다. 나는 부러 점잔을 빼며 말하였다. “어떤 용무로 오신 분들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입후보 등록기간이니 입후보 등록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질서가 있어야 되겠으니 입후보등록을 하려 오신 분만 남고 일단은 모두 사무실 밖으로 나가주시오” 하였다. 그러면 어떤 놈이 필시 시비를 걸고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들은 홀깃홀깃 옆을 살피면서 모두 밖으로 나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자유당 비공천자 정상렬의 입후보등록을 못하게 하라는 지령이 내려져 서울에서 깡패를 사서 등록방해 임무를 주어 내려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짐작하고 있던 정상렬씨도 서울에서 깡

패를 사서 신변보호를 시켰으니 서울 깡패들이 돈먹고 대전에 내려왔으나 와보니 상대방 깡패들도 서울놈들이라 서로 얼굴을 아는 처지에 싸울 필요가 없었으므로 서로 홀깃홀깃 보면서 저쪽 하나가 나가면 이쪽도 하나 나가고 하는식으로 모두 나갔던 것이다. 말하자면 세력의 균형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던 것이다. “입후보등록 때문에 오신 분 있으면 들어오시오”하니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더니 정상렬씨 등록서류를 내놓는다. 그런데 그 등록서류를 등 뒤 와이셔츠 속에서 꺼낸다. 탈취 당할까봐 그런 것이다. 그때는 입후보등록금 50만 원을 내야 할 때인데 자기앞 수표도 아니고 금시 한국은행에서 나온 듯한 현찰로 역시 와이셔츠 속에서 꺼내놓는다. 갑구 직원은 다 어디로 피해버리고 을구 직원만 있기에, 을구 직원을 시켜 돈을 세어보도록 하였지만 선거인 명부, 기타 서류 모두 캐비닛에 넣고 잠궈 버렸으니 접수증도 해줄 수 없고 추천인 확인도 할 수가 없었다(입후보에는 1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이 필요했다). 그 깽마른 사람은 정상렬 의원의 비서라는데 “내가 선거위원장인 것을 아시지요?”하니까 “예, 잘 압니다”하기에 을구 직원을 시켜서 캐비닛을 뜯고 보니 선거인 명부는 있는데 직인이 없어서 내 작은 사인을 찍어서 접수증을 해주고, 추천인 확인을 하는데 추천서를 연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한 장씩 선거인 명부 번호순으로 칠해서 아주 제본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조하기도 아주 수월했다. 그 확인을 마치고 을구 직원을 시켜서 백지와 붓과 먹을 갖다 내가 직접 붓글씨로 입후보등록 공고를 써 가지고 시청 정문 앞 게시판에 붙였다. 그때만 해도 내가 붓글씨를 꽤 잘 쓸 때였다. 그리고 나니까 정상렬 본인이 와서 입후보등록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지금까지 판검사들에게 별로 호감을 안 가졌었던다. 재수 좋아서 시험에 불었다고 빼기는 것 보기 싫고 죄 안 지으면 신세질 까닭없고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손해 좀 보더라도 민사재판 안하면 되지, 저희들에게 굽힐 것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뜻밖에 입후보하는 데 판사영감님 신세졌다고 한다. 입후보시키지 말라는 지령이 내려온 것을 알고 탈취 당할까 염려하여 등록서류도 두 별, 등록금도 두 봇을 만들어서 각각 따로 가지고 가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야당하는 사람들 고충을 알겠다고 제법 깨달은 듯이 말하고 가는 것이었다.

그때 중앙선거위원회에도 정당 추천 선거위원이 있었고 민주당 추천 중앙선거위원이 이상규(李相圭) 변호사였다. 중앙선거위원이 각 도와 시·군 선거위원회를 순시하는데 이상규 위원이 충남에 오고 도청에서 지방과장 김윤환(현재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중)씨의 안내를 받아 대전시 갑구선거위원회에 와서 나를 보고 영감이 위원장이시니 안심하고 갑니다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 뒤 시장 한테 인사하고 가려고 들렀었단다. 그때 대전시장이 충청남도 금융조합연합회장을 하던 조병순씨인데 이분이 좀 모자라 중앙선거위원이면 모두 여당편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들어놓았다. '3인조, 9인조도 짜놓았고, 기생들도 포섭했고, 무더기표도 준비해놓았습니다' 하여 이상규 변호사는 '잘 하셨습니다' 해놓고 그날 밤 유성온천에서 자면서 고발장을 써서 아침에 검사장 판사에 가서 전달하고 서울에 올라가 신문에 터뜨렸다. 나는 입후보자 기호 추첨을 할 때 합동연설회의 날짜, 장소를 후보자에게 발표하고(시에서는 합동연설회를 3회 개최하게 되어 있었다) 그 연설후서까지 추첨으로 결정해서 인쇄하여 배포하고, 자기 순서가 되어도 후보자가 안오면 어떻게 하며 마이크는 어떤 것을 쓰고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그 인쇄물에 함께 적었다. 그때는 『한국일보』가 조간이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석간이었는데 마침 원동국민학교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된 날 그 조병순 시장의 맹언사건이 실린 『한국일보』가 배달되었다. 집에서 새벽에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 시장 집, 부시장 집(부시장이 갑구 부위원장이었다)에 전화를 걸었는데 모두 전화를 안 받았다. 사고를 냈으니까 어디 도망가서 숨은 것이다. 9시에 시청에 출근하여 그날 합동연설회 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데 웬걸 합동연설회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마이크는 숨겨놓고 원동국민학교 전기는 끊어놓고 선거위원회 간사는 출근도 안했다. 간신히 부시장을 만나 그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고 또 아침신문 안 보는 사람은 모를 텐데 이럴 때 얼른 합동연설회를 해버려야지 저녁신문이 오면 시민들이 모두 알게 될 텐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합동연설회를 안 하면 선거소송감이고 선거소송의 피고는 위원장인 나인데 나는 소송에 나가서 사실대로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여당이 당선되더라도 선거는 무효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재선거하게 되면 질 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 어서 합동연설회를 하자는 말에 부시장이 명령해서 시청직원들이 연설회 준비를 하고 마이크를 찾아오고 전기를 이어놓고 연설회를 시작했는데 1시간이 늦었다. 연설회 때는 맨 먼저 위원장이 선거계통을 하는 법인데 나는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고 국회의원선거법도 법률인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법률 만드는 일에는 뜻이 없고 잣밥에만 마음이 있어서 선거위원장은 판사가 하되 직원들은 시청직원들을 써라 하고 법

률을 만들어놨으니 선거위원회 직원들이 자기 모자리가 달린 시장 말 듣지, 판사 말 들을 리가 있겠는가? 이번 국회의원은 법률 잘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찍으시오라고. 현역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한테 신세지고 겨우 입후보할 수 있었으므로 아무 말도 못했고, 어떤 청중은 너 말 잘한다, 네가 해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는 데 나는 혼자서 도둑놈들 틈바구니에서 공명선거를 해보겠다고 무진 애를 썼으니 철이 덜 들어서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한심하다. 각설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자. 나는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니까 내가 없으면 부위원장이 대신 결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대리결재를 안 시키기 위하여 잠시도 책상을 뜨지 않고 내 돈으로 짜장면을 시켜다 먹어가면서 결재를 했고 변소에 아주 조심해서 갔다. 왜 그랬느냐하면 개인 선거연설회를 하는 장소(목적 다리 밑이 아주 인기였다)의 사용허가신청이 야당측에서 들어오면 내가 없을 때 그것을 여당에게 내용해주고 여당에서도 같은 장소에 장소사용 허가신청이 들어온다. 그것을 뒤집어놓고 여당 것이 먼저 들어온 것으로 하여 야당 것을 불허한다. 이런 판국이니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며 부위원장에게 대리결재를 시키겠는가. 시장은 무더기표를 준비하고, 부위원장은 신청서 순서를 바꾸고, 간사는 마이크 숨기고 전기 끊고, 등록기간에 캐비닛 잠궈놓고 행방불명되고 하는 속에서 나혼자 어떻게 공명선거가 가능한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3·15부정선거)로 4·19가 나고 나는 그 부정선거사범 재판을 담당했던 일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때 기록에 대전경찰서장이라는 작자가 개표 종사원이 야당표 한 뜀을 훔쳐오면 현금 10만 원과 바꿔주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제4대 민의원선거도 그랬으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은 자유당공천 정낙훈 후보가 당선, 민주당 비공천 유진령 후보가 차점이었다(유진령 변호사는 그 후 7·29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5·16으로 얼마 못가서 정치에서 손을 뗐다).

### 법관의 서열

요즘 윤관 대법원장이 서열을 무시하고 원칙도 없이 법관인사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지는 몰라도 법원에는 5·16 전까지는 서열을 그렇게 무시하는 일은 없었다. 검찰에는 검찰총장과 서울고등검찰

청 검사장을 맞바꿔놓은 일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제4공화국 이후로 이른바 발탁인사를 함으로써 세대교체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그 발탁인사가 요즘 말로 하면 정치판사를 발탁하는 것이어서 법원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문민시대가 된 지금에 와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물론 정치판사를 발탁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법관을 기용하는 데 굳이 재산이 적어야 될 까닭도 없고 서열이 10번을 넘어가는 사람을 끌 어울릴 뚜렷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관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양심도 좋고 용기도 좋다. 그러나 사안을 바로보고 판단을 바로 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성인君子인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판관으로 쓰랴?

목수가 집을 잘 지어야 목수이지,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집을 줄 모르는 목수에게 어떻게 집짓는 일을 맡기겠는가? 검사 출신이 대법관에 반드시 하나는 끼여야 하고, 호남 출신은 둘 이상 대법관이 되어서는 아니 되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에 검사 출신의 어느 대법관이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잡지 않기 때문에 임시 가등기를 말소해서 은행에 저당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후에 다시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저당권 설정등기가 안되는 법리가 없으므로, 논지는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라고 판결했다. 그 사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경험칙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텐데. 아무튼 이런 사람이 대법관을 한 일이 있으니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법관의 서열이 인사에 꼭 기계적으로 지켜야 할 황금률은 아닐지라도 존중되어야 할 것임에도 틀림이 없고 그것이 존중되지 않았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장의 기호에 따라 몇 단계씩 뛰어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가 법관으로 임관할 때는 대통령이 발령을 하고 발령통지를 대법원에 보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발령을 받은 신임판사의 서열은 그 발령통지서에 써어 있는 순서대로였다. 그리고 그 발령통지서의 순서는 성적순이었기 때문에 동기 생끼리 만나면 매번 대법원에 조회를 해야 서열이 확인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없었다. 동기끼리 만나도 나는 항상 먼저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군대에 갔다오니까 그 서열 따지는 규칙이 바뀌어 있었다. 한날 한시에 발령받은 동기생은 나이에 의하여 서열을 정한다고. 그래서 나는 일등이던 서

열이 하룻밤 사이에 꼴찌에서 두번째인가로 급전직하하였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어찌랴, 그대로 참아야지.

군대에 계급이 있고 군번이 있듯이, 공무원생활을 하는 데는 서열을 무시할 수 없다. 내가 서울지방법원에 있을 때 인천지원에 결원이 생겨서 판사가 두 사람밖에 없어 합의재판을 할 수 없게 된 일이 있었다. 대법원에서 인사발령을 해줄 때까지 임시로 본원에서 직무대리 판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하고 원장이 이것을 부장회의에 걸었다. 그러나 어느 부장도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참을성이 없는 내가 입을 열었다. "원장님, 누구를 보낼까 하고 회의에 붙이면 누가 말을 합니까? 어떤 원칙에 의하여 보낼까 하고 물으셔야지요" "그래 맞아, 어떤 원칙으로 보낼까? 유부장 말해보시오" 그때 인천지원에 나이는 많으나 서열이 낮은 전형연 판사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전형연 판사보다 서열이 낮은 판사를 보내야 전판사가 단독사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 직무대리로 왔다갔다하는 판사를 단독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을 듯합니다" 다들 좋다고 해서 서무과장을 불러 서열을 알아보니 전형연 판사보다 낮은 판사가 전용성 판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전용성 판사가 1개월간 직무대리를 가게 되었는데 불평을 하고 사표를 냈다. 그리고 내가 법원의 실력자다 생각하고 나에게 전에 없이 잘 했다. 매일 아침 택시를 타고 우리집에 와서 같이 출근하자고 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버스나 학승차 타고 출퇴근할 텐데 거절할 수도 없고 아주 난처했다. 이것도 서열 덕분이었다.

5·16이 나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생기고 이른바 정치정화위원회라는 데서 판사를 보내달라 해서 대법원에 어느 계층의 판사를 보내면 되겠느냐고 문의하니 배석판사 중에서 제일 선임자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당은 것이 이영수 판사였다. 이판사는 그때 내 배석판사로 있었는데 정치정화위원회에 파견된다니까 나한테 불평을 했다. 내가 저를 싫어서 내쫓은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서열 탓이지 내가 왜 이판사를 싫어했겠는가?

## 특별기고

## 회상 : 황인철과의 40년

김 병 익

변호사란, 말 그대로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글로써 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황인철 변호사는, 말은 해왔지만 글로써는 남기지 않았다. 그의 말들은 그 자신의 글쓰기만이 아니라, 속기나 녹음과 같은 실제의 기록으로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그의 생애를 살려낸다는 것은 메모와 기억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는 타계하기 전 3년간의 투병생활중에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을 정리해두고 싶어했으나, 재판기록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자료들은 어디로 가 있는지도 알기 힘들었고 점점 줄어드는 체력과 더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아마도, 훌륭하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그의 삶과, 권력과의 싸움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그의 노력들, 그리고 끝내 그 자신의 눈으로는 그 실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성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과 민권운동을 알고 함께 한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야 가능할 것이다.

언젠가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에 대한 나의 기억들을 그 일차적인 자료로서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그 기억들은, 나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매우 좁은 범위의 것이며, 그에 대한 내 자의적인 관찰과 경험 그리고 우정에 따르는 상당히 편향된 것에 그치겠지만, 더구나 그의 전업인 변호사로서의, 그가 투쟁해온 인권운동가로서의 뜻은 피상적이거나 부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sup>1)</sup> 그럼에도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며 그 삶의 올바

른 운명을 위해 어떤 정신을 기르고 선택해왔는지를, 개인적 삶을 어떻게 공의화(公義化)해왔는지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나는 황인철이라는 진정 존경스러운 한 인간을 20여 년 동안, 멀리는 근 40년 동안 사귀고 어울리고 도움받으며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의 하나로 동반해왔다. 이 글은 그런 그에 대한 감사와 추념으로 젖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나의 기억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다. 같은 중학을 다녔지만 그와 내가 한 반이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였고 첫 학기의 중간시험에서 처음 배운 화학과목에 그와 나 둘이서 백점을 받으면서 나는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나는 키높이순으로 시작되는 번호에서 중간급이었지만 그는 1번. 그러니 반에서 가장 키가 작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안 보여서, 그가 화학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것이 내게 의외로 받아들여져 그 일을 오래 기억하게 된 것 같다. 그때의 그는 꼬맹이었고 그만큼 어려 보였으며(그는 동갑에 생일만 며칠 빠른 내 아내처럼 대학에 들어와서 부쩍 키가 자랐다), 눈이 크고 얼굴이 둥글며 통통하고 순진하게 생긴 환한 그의 모습은 태도도 조용해 유복한 집안의 귀여운 막내동이 모습이었다.

그는 그때의 느리고 불편한 교통편으로 대전에서 한 시간 넘어 걸리는 신도안 근처의 시골에 집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집에 가서는 하룻밤 자고 일요일 오후에 하숙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가는 일이 그처럼 즐거웠던 만큼 하숙비로 낼 쌀 두어 말짜리 부대를 지고 오는 길이 그처럼 힘들고 아득했다고, 그래도 끈질기게 주말의 그 즐거움과 아득함을 되풀이할 정도로 “그처럼 어렵고 어리숙했었다”고 후에 회상하곤 했다.

실제로 그는 같은 학년의 동기보다 두 살 어렸다. 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독학으로 자격증을 따낸, 가난한 국민학교 교사로 슬하에 결국 아홉 남매를 두었는데 그는 그 맨이였고, 그와 부친의 나이차보다 그와 막내동생의 나이차가 더 많았다. 그는 자기가 중학에 입학했을 때 그 집안에서 최초의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최초의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다고 했다.

1) 인권운동을 위한 우리 인권변호사들의 노력과 족적에 대해서는, 이돈명, 조준희, 홍성우, 김형태의 좌담 「인권변론 한 시대」, 인권변호사로서의 황인철의 면모에 대해서는 김정남의 「무죄」라는 말 한마디」를 볼 것. 이 글들은 황인철의 추모특집인 『문학과 사회』 제22호 (1993년 여름호)에 실려 있다.

그다음의 그에 관한 기억은, 세월이 많이 흘러,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의 이른 여름에, 대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고등학교 때 최우등생은 아니지만 아마 상위 10% 안의 숨어 있는 우등생이었던 것 같고 어려움없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내가 다닌 문리대와 법대는 캠퍼스가 붙어 있었고 아주 가까운 법대생 친구와도 자주 어울렸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는 했을 터인데도 그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유독 졸업 후 그 여름의 그가 생생하게 회상된다. 그는 고등고시에 합격했으며 법무장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 참이었다. 우리는 다방에서 차를 마셨고 물론 나는 그의 전도를 축하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과 희망에 차 있었지만, 나는 정치학과 학생이라면 생각도 해보았을 고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뜻이 없었으며 그 합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후에 그는 자신의 고시공부에 대해 회상하면서 지금의 내게도 여전히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술회했다.

대학 3학년이 되어 고시공부를 해야 했는데도 도무지 공부는 되지 않고 마음도 안 잡힌 채 자기 장래에 대해서도 좌절감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가 아버지를 도우며 농사도 짓고 놀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하나님인 런닝셔츠를, 학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벗어놓고 멘яем으로 농삿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빨아 말린 그 셔츠를 다시 입고 학교로 출근하셨던 것이다. 그는 아마 속으로 울었을 것이다. 새학기가 되면서 대학공부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는 그를 아버지는 쫓다시피하여 서울로 옮겨보낸다. 그는 다시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그때의 그 공부! 그가 읽는 까다로운 내용들이 희한하게 머리속에 쭉쭉 와박하고 쉽게 외워지고 능률적으로 공부가 잘 되어갔다. “그때처럼 공부란 것이 재미있고 신나던 때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고등고시 13회 합격자의 명단에 들 수 있었다.

다시 그를 만난 것은 내가 5군단 공보실에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군단 회하의 1사단 법무관으로 전속해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백여 리는 떨어졌을 나의 부대를 방문했고 나를 읍내로 데리고 나가 식사도 사주고 5군단의 법무관도 소개해주었다. 나도 그가 근무하는 부대 근처의 그의 하숙집으로 놀러가 하룻밤을 잤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나는 내가 읽은 문학 따위의 인문주의적인 내용들을 젠 척하고 늘어놓았는데, 그는 나의 책상물림 같은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이후에도 그에게서 보아온 변함없는 태도였다.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이나 법리들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차근

차근히 우리가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었지만, 그의 영역이 아닌 문학이나 그 비슷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조용히 귀담아들어주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소송의뢰자의 혼란스럽고도 지루한 설명들을 성실하게 들어주는 데 버릇들이기 전부터, 이미 있어온 그의 미덕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그가 “깊이 후회하게 된” 법무관 시절의 한 사건에 대한 그의 술회를 소개해야겠다. 법무관 초임 시절 그는 5·16 때 선포된 계엄状态下 한 민간인 재판을 맡았는데, 그 피고는 정신장애자인 동생이 아무 여자든 겁간하려 드는 데 분격해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어느날 밤 초라한 입성을 한 한 늙은이가 그의 하숙집으로 찾아와 피고의 아버지라며 자기 집안의 난감한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잘봐달라고 무언가를 그에게 내놓았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오죽잖을 그것을 그는 ‘뇌물’로 판단했고 그래서 안색을 바꾸어 단호하게 밀치며 그 노인을 쫓아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 사정을 충분히 동정해 ‘집행유예’ 정도로 해줄 작정이었던 피고에게 실형을 언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젊은 판사의 그 오기에 대해 크게 뉘우쳤다. 법관으로서의 작은 자존심을 위해 진정 구제되어야 할 인간을 학대한 것이 아닌가. 그는 그 잘못이 자신의 인생경험 미숙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자탄했고, 판사는 인간의 불행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판관이란 원고와 피고가 저울추의 양쪽에 비슷한 무게로 서 있으면 당연히 불행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미국 흄즈 판사의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경험과 후회가 이후 그의 법 운용에 대한 사유를 깊이하고 드디어는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옹호에 남다른 힘을 기울이게 된 하나님의 말미가 되었을 것이다.

그와의 사귐은 그가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내가 『동아일보』에 입사하는 1960년대 중반에도 이어지지만, 그와의 만남이 잊어지고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는 법률가로서 맑아야 할 정도가 법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역시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의 아우 인행에게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며 굳이 요구한 길이 판사직이었다. 그런 그가 법원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자리를 바꾼 것은 분명 생활 때문이었다(그 결정을 내리던 날 밤, 그는 밤새 울었다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동생이 여덟이나 있는 가난한 교사집안의 맘이였고 맘이로서의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언제고 경제적 안정이 되면 판사로 돌

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내게도 자주 해왔었지만, 정작 그 안정을 얻게 되었을 때는 독립성을 잃어버린 사법부의 법운영 실제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었고 더구나 자신의 인권변론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법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유보되지 않을 수 없었고, 설령 그가 원해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용될 리가 없었을 것이다. 김영삼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그는 법관으로 돌아갈 희망을 그의 부인에게 피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는 그가 마침내 암과의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든 그는 1970년 초에 나의 근무처와 아주 가까운 광화문의 고영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개업했고 그의 생활도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듯했다. 그럴 즈음, 나는 김현으로부터 함께 계간지를 창간하자는 요청을 받았고 나도 그에 동의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자금 염출안만은 불확실하게 보여, 그 문제는 내가 따로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때 내가 염두에 둔 것은 황인철이었는데, 과연 그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내 설명을 듣고, “나 자신의 희망은 법조 관계의 잡지를 만들어보는 것이었는데…”라면서, 우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문학지의 원고료를 감당해보겠다고 허락했다.

우리는 곧 모였고 내가 김현, 김치수를 소개하고 함께 잡지창간 계획을 짜고, 며칠 후에는 잡지 출판을 수락해준 일조각의 한만년 사장과 어울릴 수 있었다. 우리는 매우 희망에 차서, 그리고 따뜻한 우정을 느끼며 술을 마셨었다.<sup>2)</sup> 그때가 7월 초순이었고 그는 호마다 당시로서는 적은 액수라 할 수 없는 15만 원을 대주기로 했으며 우리는 그의 후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정치적 억압이 가혹해지기 시작하던 때에 일어날지도 모를 필화 등의 경우를 위한 대비로 그의 이름을 편집인 명의로 하기로 했다. 우리는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해놓고 편집을 하며 맡은 원고를 썼고 드디어 9월 초에, 가까스로 등록증을 받으면서 계간『문학과지성』창간호를 낼 수 있었다.

첫호를 보는 날 우리는 감격했고 그래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와 김현, 김치수, 나 그리고 일조각 편집장 최재유씨, 고등학교 동창으로 그와 함께 고시에 합격하여 검사가 된, 그러나 그보다 몇년 앞서 교통사고로 작고한 성민경의 얼굴이 한자리에 한 사진이 그것이다.

자신의 문단생활을 회고하는 글(『문학, 그 영원한 모순과 더불어』, 현대소설사,

2) 이에 대해서는 김현을 추모하는 나의 글 「김현과 '문지'」, 『문학과사회』 제12호, 1990년 겨울호(나의 책 『열림과 일굼』에 재수록)에서 회고한 바 있다.

1992)에서 『문학과지성』의 편집동인 김주연은 “감동적이라 할 만큼 신선한 황인철 변호사와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대전의 가난한 교육자 집안 출신의 그는 판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였는데, 친구 김병익만을 신뢰하고 그와는 전공도 다른 문학활동에 물질적 후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결코 물질적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맡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아직 변호사 경력도 짧고, 그의 도움을 기다리는 가족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문학이 단순히 문장놀이가 아니라, 이 시대 사회현실에 대한 근본적 비판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법조인으로서의 활동 못지않게, 이 사업이 뜻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나는 『문학과지성』을 통한 문학활동 못지않게, 이 아름다운 법조인과의 만남을 무한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주연의 감동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판사 적보다는 생활의 여유가 있다지만 결코 부유하지 않았던 그가, 적지 않은 돈을, 그것도 자신의 분야가 아닌, 엉뚱하다면 엉뚱할 문학 쪽에 내놓는다는 것은 그에게 부탁한 나 스스로에게도 쉽사리 납득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의 미안스러움과 궁금증에 대해 그는 한번은 이렇게 대답했다. “진짜 부자는 이런 일에 돈을 내놓지는 않는 법이지. 그 일의 뜻에 동의하는 어중간한 사람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야.”

그의 말대로, 그는 좋은 일에는 그 자신의 관련과 관계없이 ‘십시일반’의 뜻을 보였다. 아직 친하기도 전의 정현종이 첫 시집을 자비로 간행할 때 다른 친구 문인들과 함께 돈을 냈으며 문학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내기도 했고 문인들의 행사에 보이게 안 보이게 물질적으로 동참을 했다. 특히 그는 1980년대의 그 숱한 수배 또는 구속 문인들의 사건들을 거의 도맡아 무료로 수고해주었다. 그런 일들은 물론 문학하는 친구들에게만이 아니라, 김정남의 글에서 회고되는 것처럼 운동권과 수배자, 투옥자 혹은 그 가족들에게까지 베풀어진 숨은 선행이었다. 그 일이 커져서는, 경제적으로나 활동분야로나 거의 대가가 없을 문학과지성사의 창사에도 출자를 했고, 드디어는 그 자신이 창설에 참여하고 공동대표직을 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었으며, 그가 변론을 맡았던 조성우의 평화연구소에도 지원을 해주었다. 그 자신은 검소하고 생활비도 아꼈지만 그의 도움을 바라는 데는 힘껏 후원해주어온 것은 무엇보다 마음의 넉넉함과 옳은 뜻에 대한 따뜻한 공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직접 관련된 일들에 그의 출연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발의하고 이끌고 2년 동안 대표간사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심한 자폐아였던 그의 아들 때문에 앞장서 설립한 자폐아들을 위한 계명복지재단이었다. 나는 정확히 그가 그런 조직들을 위해 얼마나 출연했는지는 모르지만, 민변을 위해서는 사무실 마련 비용 등 상당 부분을, 복지재단을 위해서는 기금과 복지관 건립 등의 경비에 거의 전적으로 책임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는 자기의 그런 후원과 출연에 대해 그가 그랬다는 사실을 후에 이런저런 말끝에 말했을 뿐이었고 그 액수도 밝히지 않았다.

황인철이 양심범 재판을 맡아하며 인권변론의 고된 생애를 시작한 계기는 1974년의 민청학련사건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그와 함께 인권변론의 쌍두로 일하게 되는 홍성우는 "법대 동기회 모임에서 1백여 명이 구속된 민청학련사건 피의자들이 변론을 맡아줄 율사가 없어 애타하고 있으니 우리가 마땅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며 황인철이 간곡히 설득을 했고, 그 '유혹'에 자신도 넘어가 함께 일하게 되었다"며 이 사건에 33명의 변론을 맡았다고 술회했다(좌담 「인권 변론 한 시대」, 『문학과 사회』 제22호, 1993년 여름호, 683쪽). 그러나 이 사건 전에, 그의 민권운동의 앞이야기로 보아도 좋을 사건이 하나 있었다.

아마 1973년 이른 봄이었을 것인데, 동아일보사의 젊은 기자들이 사측의 자의적인 인사에 항의하여 모임을 갖고 노동조합을 구성함으로써 조직적인 대결을 하자는 결의를 했고 기습적으로 노조결성을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있었다. 지식인집단의 노조로서는 처음일 이 사건에 부닥치자 회사측은 중심 인물 여럿에게 해임 내지 무기정직 조처를 내렸고 후배 기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회사측은 다시 이들을 인사조치했다. 젊은 기자들은 다시 제2차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나는 그 모임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 명단에 합류하는 데 동의했고 그래서 발표된 위원들의 이름에는 내 것이 맨앞에 얹혀 있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사태의 심각성에 회사는 당황했던 것 같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여론도 매우 나빠지자 회사측은 동아노조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간의 인사조처들을 백지화하고야 말았다. 동아노조는 노조설립 신고를 거절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나의 주선으로 그 사건을 황인철이 맡게 되었다. 아마 그것이 이른바 시국사건에 대한 그의 참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다.

동아노조 사건은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재판도 물론 지지부진이었는데

이듬해 가을 나는 뜻밖에 한국기자협회장이라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다. 전임 회장이 스캔들 때문에 물러나면서 중앙의 유력지 젊은 기자들이 기협의 이러한 타락은 기자들 자신의 방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협 재건에 유력지 기자들이 책임지고 나설 것을 합의했던가 보다. 그래서 기협 회장을 동아 쪽에서 맡기로 했고 내게 그 책임을 져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후배 기자들의 이 명분있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회사측으로부터 기협 회장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받으면서도 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5명의 부회장단을 구성하여 새 출발을 시작하는 참에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10·24 언론자유선언을 했고 그 운동은 삽시간에 전연론계로 확산되었다.

나는 기협 회장으로서 이 언론자유운동을 언론사와 지역간으로 연계시키면서 한때의 일회적인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권력측으로부터 억압이 시작되어 그해 12월에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 탄압이 시작되고, 아마도 권력과 회사가 야합하여 이루어냈을 편집국·방송국·출판국 기자들과 동아방송 피디 등 132명에 대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동아 해직사태가 일어났다. 해직 언론인들은 각계에 동아일보사의 부당해고를 폭로하며 복직을 호소하는 운동을 벌였고 제13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된 나는 비슷한 때 함께 일어난 30여 명의 조선일보 기자 해직사태를 동아일보사의 그것과 묶어 기자들의 원상회복운동을 도우면서 해직기자 생계보조를 위한 작업을 벌였다. 민청학련사건을 시작으로 김지하사건, 지학순주교사건으로 본격적인 인권변론에 나선 황인철은 부당해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동아투위'의 변론을 담당하고 조선일보 해직기자들을 위해서는 홍성우 변호사가 맡도록 권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해직기자 생계 보조를 위한 후원조직을 만들어 모금작업을 벌일 때 그는 종교계의 강원룡, 문단의 고은 등과 함께 약정액을 거두어 내주었고 나는 그렇게 힘들여 모금해준 돈으로 해직기자들에게 몇달간 약간의 생계보조를 해줄 수 있었다.

동아투위 재판에서 나는 1심에서는 다른 두 기자와 함께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되었지만 130명의 다른 해직자들은 패소했고 2심에서는 나를 포함한 전원이 패소하고 말았다. 어떻든 이 시기에 황인철과 나의 관계는 개인적인 친구관계로부터, 분야는 다르지만 억압적인 권리에 대항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그즈음 내가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에게서 받은 지원과 협력은 내 일생의 커다란 빚이 되고 말았다.

그 빛들의 사사로운 삽화 하나가 여기서 따뜻하게 회상된다. 동아-조선사태에 대한 기협의 대처에 노력하던 나는 국제기자연맹에 그 사태의 보고서를 발송했는데 그 문서가 우체국에서 기관에 의해 압수되고 탄압의 꼬리를 찾던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나와 기협 집행부를 남산의 중정에 연행했으며 하룻밤의 조사와 닷새 동안의 대기 끝에 나의 회장 사퇴를 조건으로 방면시켜주었다. 그때가 월남이 폐망하던 4월 말이었다. 나는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고, 그보다는 내 안으로나 밖으로나 착잡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어느날, 불쑥 내게 봉투를 내밀며 며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떠밀듯 권고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소설가 홍성원을 끄어 그의 처숙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소록도 나병원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꽤 우울하고 쓸쓸해 있던 내게 그 여행은 마음을 다스릴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에게 어떤 힘과 신뢰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 최초의 나의 경험이었고, 그것은 마음으로나 실체에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의 빛이 되었다.

그런 얼마 후 그가 홍성원에겐 했다는 말은 내게 정말 정겨운 위안이 되었다. 그는 언론자유운동에 뛰어들었던 내가 언론계에서 쫓겨나서도, 그랬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행동주의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졌었는데, 내가 그런 쪽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무척 다행스럽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나는 기협 회장이라는 분수에 넘치는 직함을 가지면서도 사람들의 앞에 나서는 것을 무척 힘들어할 정도로 행동이라든가 운동이라는 것에 부적격한 성격이었고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도 다행스럽다기보다 부끄러운 점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인권옹호운동에 앞장 서온 황인철도 나의 그처럼 나약한 태도를 오히려 반가워했다는 것이 나로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이런 점은 다시 반복해 강조해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는 현실정치 전반에서나 양심법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술한 불의와 비리, 치사스러움과 타락의 현장들을 듣고 보고 그 자신이 당하였고 그 잘못들에 대해 가파른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들에 당면하여 대처하는 태도는 온건하고 관용적이며 조용하고 무엇보다 논리적이었다. 그는 탄압하는 자들의 폭력에 분격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이 그와 마찬가지의 투쟁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고, 그런 폭력적인 힘들에 완강하게 대들면서도 그 정황에 간힌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이해해주고 있었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다기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구조와 정황에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에 임해서도, 동아 해직기자 소송 때 내가 직접 본 것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가라앉고 진중하며 요점적이어서 곁보기에는 마치 친구들과 다정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대조적인 홍성우 자신의 얘기는 “황변호사는 나보다 내용은 더 강경했는데도 황변호사 특유의 조용조용한 목소리와 태도 때문에 부드럽게 잘 넘어갔고 그보다 내용이 약한데도 자세가 강경해서인지 나는 여러 차례 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우와 함께 황인철은 남산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홍변호사가 많은 매를 맞은 것에 비해 그는 아무런 육체적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변호사는 업무정지를 받기도 했고 같이 민청학련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구속되어 옥살이를 했는데도 황인철은 그같은 조처를 당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변론요지나 그의 변호전략이 온건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황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는 강경했고 치밀했으며 도전적이었다. 그가 술하게 말해준 변론과정들에 대한 설명과 그때마다의 고민들을 들어서 짐작하고는 있지만, 그 많은 갖가지 인권변호의 법리적인 측면과 변론작전, 증인과 증거의 제시 등등 권리의 자의적이고 반인간적인 폭압에 대항하는 술한 인권재판들의 전반을 그가 기획하고 배분하고 정리하며 그 뒷처리를 했었음을, 조준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황변호사가 야전군 사령관처럼 모든 전략과 작전을 마련하고 지시하고 할당하면 우리는 그냥 그의 말대로 하는 행동대원이었지.” 그래서 그는 아마도 탄압하는 상대방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인권변호사였을 것이다.

나는 1984년에『오웰과 1984년』이라는 책을 편역, 간행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책을 그에게 헌정했는데 그 헌사에 인용한 구절은 오웰이 한 편집자에게 쓴 다음의 구절이었다. “나는,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있는, 혹은 신문지상에서 이름을 부당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해 자신이 미력이나마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책을 받으면서 그 구절을 그는 생각해두듯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는 오웰의 권고 이상이었다. 그는 변호사였지만, 그 이상의 억압과 고난의 시대에 맞서는 의로운 양심이 되었고, 훼손당한 인간의 권리를 위해 싸워오면서도 그 때문에 그의 품성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고결한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술한 불의들과 투쟁했지만 전투적인 투쟁가가 아니었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의 앞장에 섰지만 운동가는 아니었으며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스스로 다했지만 행동부터 앞서는 행동주

의자는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맡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자신의 뜻을 최대한 성실하게 책임지는 겸손하고 반성적인, 그래서 행동적인 지성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험한 세상과 싸우기 위해 어떤 과격한, 무책임한, 몰염치스런 행위도 가림없이 자행하도록 부추겨주던 이 착잡한 시절에, 공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진정성을 화해롭게 아우르는 그의 그런 덕성들을 나는 무엇보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로부터 그가 맡은 시국재판만이 아니라 그것들, 그 주변들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신문에 보도되지도 않고 불확실한 유언비어로 떠돌기만 하는 사건들과 움직임들의 진상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의 범죄적인 탄압과 억지와 무리 혹은 그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누를 수 없는 분노들, 이 때문에 권력의 자행된 폭력과 억눌린 인권의 상황들을…

황인철은 틈이 나는 대로 나의 사무실로 왔고 자주 우리들과 어울려 저녁을 함께했으며 그럴 때마다 그는 아주 자상하게 그같은 갖가지 사건들과 정보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진상들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아마도 사건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우리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 많은 사건들의 속진실을 알았고, 정부 발표나 신문 보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할지를 배웠다. 그는 때때로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기도 했지만, 사건에 대한 실감이 모호했고 법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법정 혹은 기관이나 권력과의 싸움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리의 의견들이란 어차피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것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박정희 시해범인 김재규의 재판 때가 그랬다.

그는 유신시절 폭력의 중심이었고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의 핵심기관이었던, 그래서 그가 적으로 싸워왔던 중앙정보부의 수장을 변호해야 할 것인가 거절해야 할 것인가로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면담해서 그 진의와 평소의 소신을 알게 된 김재규의 결단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그의 범행이 내란이나 쿠데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우리들에게 정보와 함께 그것을 보는 시각까지 제공해주는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이란 그의 결정이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그의 변론 담당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의미가 클 것이라는, 그의 결정을 격려해주는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그 대부분의 상세한 점들을 잊어버렸지만,

참으로 많았다. 부천서 성고문사건 혹은 박종철고문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는 물론 사건의 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을 뿐 아니라, 가령 성고문사건 때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 은밀한 과정, 재판에서의 재정(裁定)신청과 그것의 실패 혹은 박종철사건을 폭로하기 위한 야당정치인과의 접촉, 그 정치인의 회피로 그 무시무시한 진상발표가 김승훈 신부에게 위임되는 과정들을 사건의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얘기해주었고 의견을 묻기도 했으며 결과를 알려주기도 했다. 아, 그리고 보니 나도 그에게 한번쯤 봉사한 적이 있다. 1976년이었을 것인데, 반공법으로 구속중인 김지하의 장일담에 관한 옥중메모에 대한 감정을 그는 우리에게 부탁해왔다. 그때 홍성우 변호사와 그는 고은, 백낙청과 함께 나를 초청해서 정릉의 한 방갈로에서 하룻밤을 새며 복사된 문제의 메모를 검토해서 소견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주로 그가 메모의 성격과 문제점들을 자상히 설명해주었고 우리는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두툼한 메모를 돌려가며 검토했다.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메모에 대한 소견서를, 하룻밤 꼬박 새우며, 2백자 원고지로 1백장은 넘을 만큼 꽤 길게 썼다. 한 없이 진지하고 뜨거웠던 그 밤, 그리고 그 글을 마치고 났을 때 창밖으로 부옇게 밝아오던 새벽빛! 그 원고에 대해 그는 정말 대견해하고 고마워했으며 그 감정서는 법정에 한 원로문인의 이름으로 제출되었다고 했다.<sup>3)</sup> 이것이 아마 내가 그에게 주어 인사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도움이었을 것이다.

그 엄혹한 시절에, 펑박받는 사람들만을 골라,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어거지와 파렴치와 폭력적인 권리와 싸우는 일이란, 바로 그 수난자들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신이 협박과 회유와 비방을 술하게 당했고 때로는 기관에 연행되기도 했으며 업무정지의 위기를 치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몇 겹으로 겹쳐진 것들이었다. 우선 기관과 겹찰 그리고 법정과의 싸움이 있다. 여기에는 왜곡과 남용을 일삼는 그들과 법리에 대한 다툼이 있고 고문과 강제와 일방적인 절차 진행에 대항하는 싸움이 있으며 증인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까지도 포함된다. 홍성우 변호사가 소개하는 오원춘사건 때 오원춘의 변심이 가져다준 그 절망감도 그런 예 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수감자 혹은 그 가족들과의 관계이다. 구속된 양심수가 대부분 몇 명에서 몇십 명 때로는 백 명이 넘기도 하고 거기에 가족들까지 혹은 다른 사건

3) 그 원고를, 그가 작고하고 차려진 빈소로 문상온 김지하에게 문의하여 한 부 복사할 수 있었다. 대학노트에 썼던 악필의 내 원고는 그의 달필로 깨끗이 정서되어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소견서는 구상씨 이름으로 법정에 제출되었다.

의 구속자 가족들까지 어울린 수많은 사람들을 인권변호사들은 상대해야 하는데, 그들 서로간의 의견이 강경론자로부터 타협자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르기도 하고 또 가족과 그들, 혹은 다른 가족들간에도 입장과 태도가 당연히 달랐고, 그래서 그는 그 다른 것들을 조정하며 혹은 설득하고 혹은 격려해야 했다. 게다가 수감자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혹은 수배되거나 출옥한 후에도 여전히 어렵게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자주 그들에게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김정남이 회고하듯, 물질적인 지원도 해야 했던 것 같다.

그다음 그는 홍성우와 둘이서 시작한 인권변론을 위해 점차 동지들을 확대하고 공동으로 변호를 하게 되면서 동료들간의 갖가지 일들을 맡아해야 했다. 그는 어떤 공동변론에서도 말하자면 총무격으로 활동했던 것 같다. 법이론의 구성, 기관들에 대항하는 전략, 법정에서의 작전, 증인·증거의 확보, 조력자들의 활용 등 거의 모든 일들을 그 스스로 찾고 짜고 세우고 분담하고 조종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의 실무적인 정리까지도 그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 모임을 보다 확대하여 협력적인 체제로 만든 것이 인권변호사들의 친목단체인 정법회이고, 뜻있는 후배 변호사들을 끌어들이며 조직화하여 적극적인 인권옹호단체로 확대한 것이 그가 주도하여 1988년에 결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었다.

그러나 가혹하고 참담했던 일은, 인권변호사들이 무료로 그러나 다른 일반사건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치러야 할 확신범 사건을 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사건들일수록 무죄판결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김정남의 말대로 "인권변호사가 변론하면 무죄도 유죄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도 시국사법들이 그들의 변호를 받고 싶어했던 것은 인권변호사의 "무죄!"라는 주장을 통해 용기와 격려를 받으며 당당한 양심범으로서의 훈장을 받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정현종이 그의 영결식 때 읽은 조시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모든 "유죄"를 감싸고,/양심을 부추기고/ 분노를 어루만"져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법 현실이었고 그렇게끔 지난 시절의 정치사회는 억압과 허위로 미만된 죄악의 구조였다. 그러므로 그를 포함한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이 법정싸움과 양심범들의 인권옹호만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불가피하게 갖가지 인권단체와 운동권 세력들과 제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분야와 그 조직들, 그 배후를 이루고 있는 노동계, 종교계, 문단, 학계, 재야

운동가, 야당, 언론계, 대학생들과 어울리고 관계맺으며 그들 방식으로 공동투쟁을 해야 했다. 그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1985~1990)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1989~1991)으로 정력적인 활동을 하는 한편, 천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1982~1987)과 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1988~1990)로, 박종철추모사업회 대표(1987)와 한겨레신문 감사(1988~1991)로, 그리고 변형윤 교수와 함께 만들어 지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대표(1989~1993)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연고 때문이었다. 그의 영결식 때 추도사에서 내가 "그것이 병이 되었겠지. 그런 것들이 자네의 육체를 짊아먹고 살 속에 암종으로 자라난 것이겠지"라고 애통해한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한 싸움과 번뇌를 가리키는 것들이었다.

그의 육체를 짊아먹은 암종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나는 그의 가정적인 슬픔을 들어두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의 어느 즈음에 그가, 옆에서 보기에 도 그답지 않게 마음이 좀 가파라져 있었던 것을 나는 깨달았다. 좀처럼 보이지 않던 짜증도 드러냈고 말과 판단에서도 강경해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시국이 위낙 혐악해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런 탓일 것이리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나의 이 어리석음! 좀 뒤에 알았지만, 두 딸 뒤에 태어난 그의 아들 대하군이 심한 소아자폐환자였던 것이고 뒤늦게 그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깊은 비탄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너댓 살 된 대하군이 좀처럼 말도 배우지 않고 한번 시작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 부부는 아들의 집중력의 한 표현으로 대견해했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친구의 권고로 병원에 데려가 오랜 진단과 검사 끝에,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근년에 와서야 발견된 유아자폐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날의 밤들을, 두 부부는 울면서 지새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이 마음을 다잡아 내적 슬픔들을 정리하면서, 병에 대한 지식을 자세히 배우고 연구하며 그 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들의 불행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처럼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난 즈음이었을 것이다. 평생의 짐이 될 그 불행한 사태를 말하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우리가 그 사태의 심각성을 거의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아주 담담하게, 그가 숱하게 치른 정치재판의 한 사건을 설명해주듯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대하의 사주가 더없이 좋았는데 그 운명대로 이 아이의 평생은 행복할 게야. 주위는 어떻든,

어떻게 보든, 대하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일들로부터도 아무런 고통이나 번민을 갖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말이야.” 그 말은 자위이기도 했지만, 고통과 번민을 힘들여 삭인 후가 아니면 이를 수 없는 자위였을 것이다.

그리고서 그는 자폐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일본에 가서 관계된 자료들을 모으고 자폐아의 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며 자신의 집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 자폐아 교육시설을 만들고 드디어는, 사재를 출연하여 자폐아들을 위한 계명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며 그의 만년에는 금촌에 그 재단이 운영할 자폐아생활관을 전립하여 준공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싸워야 할 것은 자폐라는 정신질환만이 아니었다. 정부나 의료기관, 교육기관의 무관심과 무성의, 이웃사람들의 편견이나 집단이기주의와도 싸워야 했다. 그는 이즈음 교육 받은 중산층의 그 이기주의에 대해 낸더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의 질환을 감추지도 않았고, 우리 앞에서 곧잘 수선스럽게 면구스러운 짓을 저지르는 아들을 보면서도 짜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귀여워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대하를 위해, 지나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은퇴하면 시골에서 대하나 테리고 살겠다는 희망을 토로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럴 만한 자리를 찾기도 했지만, 그들 부부는 어떻든 아들을 하나 더 가질 생각을 했고, 다행히 막내아들 준하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제는 성년이 된 대하군의 그 불행은 그럼에도 단란할 수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내팽개칠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유족들은 그런 대하군의 생애를 즐겨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가 작고한 뒤 미망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남편이며 아빠를 잊은 가족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느냐고 위로하지만, 저희는 대하의 시중들기에 여전히 바빠, 외로워할 짐도 없어요. 대하라도 없었더라면 저 텅빈 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짐을 기회로 바꾸고 불행을 위로로 삼는 이 지혜들은 깊은 고통의 수렁을 거친 사람에게나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지.

그들 부부가 카톨릭에 입교한 것도 대하군의 증상을 알게 되는 이즈음이었는데 정의구현사제단의 인권운동과 제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관계를 맺게 된 카톨릭은 또한 황인철 개인에게도 그 많은 고통과 고뇌를 감내할 위로와 격려의 힘이 되어주었다. 그는 유현석 변호사를 대부로 하여 1981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인품과 판단력과 활동을 사랑하며 존중했고 그래서 그를 자주 불러 현안들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그가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추기경님’이라고 한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투병중에도 자주 문병을 와서 기도를 해주었고 그의 장례 때는 예정된 일본 출장을 미루기까지 하며 영결미사의 집전을 맡아주었다. 그는 공적으로는 인권운동을 확대, 제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아들 때문에 생겨난 슬픔을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 카톨릭이 필요했겠지만, 그 못지않게 그의 내면을 위해서도 그는 아마도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 꽤 열심스러운 신자였다가 대학 다닐 때 신앙을 포기했는데 그는 40대에 늦깎이의 신자가 되었지만 그의 정서는 독실한 카톨릭인의 그것에 들어가 있었다. 일상적으로 선교라든가 기독교 예찬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그는 카톨릭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돈독한 미덕을 충분히 잘 갖추고 있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종교적 영향이기에 앞서 그의 타고난 성품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어떻든 그는 카톨릭 신앙에 대한 고백을 자주 했다. 그의 세례명은 배교를 강요당해 술한 펍박을 받고 순교한 3세기 때 로마의 순교자 세바스티아노인데, 기이하기도 하여라. 그가 선종한 1월 20일이 바로 그 순교자의 승천일이었다. 그가 희망없이 3주간의 오랜 혼절상태를 계속할 때 그의 부인은 그가 성세바스티아노의 순교일을 기다리는가보다고 했는데, 그 예상을 결국 그는 맞추어준 것이다.

그의 아내 최영희 여사는, 주변의 우리 모두가 놀라고 감탄한 것이지만, 그의 몇차례고 반복된 입원과 수술, 집에서의 와석, 특히 말기에 자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며 짜증을 내고 갖가지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오래고도 힘든 그의 3년 동안의 투병생활을 함께하면서도, 조금도 언짢은 표정이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입원해 있던 강남성모병원으로 문병갔다가, 몇날 며칠을 밤샘하며 침대맡을 지켰을 것인데도 그 얼굴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싱싱한 부인을 보고, 간병인이 환자가 될지 모르겠다고 좀 쉬기를 권한 적이 있었다. 부인은 웃기만 하며 자신이 조금도 피곤하지 않은 그 이유를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로서도 안젤라 여사의 그 끈질기면서도 밝은 힘이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지 신기하기만 한데, 아무래도 그 인내력과 정성스러움이 그분의 천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안젤라 여사는 가난한 집안의 말며느리로 들어와, 따로 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울 시부모를 지성껏 모셨고 더욱이 여덟의 손아래 형제들이 결혼으로 분가하기까지 그 뒷바라지를 모두 정성껏 치러냈으며 철부지 아기보다 더 힘이 들 자폐아를 포함한 네 자녀를 구김살없이 길러

냈던 것이다.

내 짐작으로는, 황인철 부부의 애정은 그의 말년에 가장 따뜻하고 자상스러웠지 않았을까 싶다. 황인철은 힘들고 복잡한 재판들, 괴롭고 성과없는 인권변론들을 줄곧 맡으면서, 더구나 밖에서 만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늘 온전하고 관대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진해져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식구들에게 더러 짜증을 부렸을 것 같다. 평소 그의 부인은 그런 그의 투정을 잘 받아주기도 했지만, 말년의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의존하고 아내의 헌신적인 앞뒤 바라지에 고분고분 따라주며 고마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화목한 모습은 보기에도 참 아름다웠다. 그런 그의 아내는 시집오기 전에도 형제들과 친구간에 '피스 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면 결코 갖출 수 없는 인내와 덕성의 인간적 품위일 것이다.

제제에 황인철의 결혼에 대해 말해두어야겠다. 총각시절의 그는 땀을 가진 부모들에게 매우 탐나는 신랑감이었다. 고시에 합격한 판사 혹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더구나 믿음직하고 온후하게 보이는 그의 인상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중매가 있었다. 내가 알기만으로도, 당시에 장관직에 있던 분이 사위로 삼고 싶어했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부모도 그와 땀이 짹짓기를 무척 바랐으며 여러 선배 법조인들이 갖가지 좋은 조건들을 가진 집안에 중매를 들었었다. 나도 한 여자를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저런 모든 후보들을, 그는 그녀들에 대한 호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스스로가 사양해버리곤 했다. 당사자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거절해버리는 것이 답답하고 이해도 되지 않아서 내가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의 대답은 내 예상을 전혀 빗나갔다. "중매로 만난 여자를 집안이 대부분 부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령 생각해보게, 그 여자나 그 가족들이 지난한 시골 국민학교 교사인 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나는 우리 부모가 며느리나 사돈한테 무시당하게 하고 싶지가 않네." 아아, 그랬었구나. 나는 깊이 탄복했다. 그는 그만큼 심지가 두터운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효자였다. 결혼에 대해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고 출세나 재산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굳이 조건을 따져 상대를 선택하는 예를 술하게 듣고 보아온 나는 그래서, 자기 아내될 사람은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여자"이어야 한다는 그의 조건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부인 최영희씨가 바로 그런 집안의 재원이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 대학 총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던 그녀는 한 중소기업의 평범한 과장의 딸이었

다. 그 중매는 그녀와 함께 비서실에 근무하던 김치수의 부인이 셨는데, 몇차례 데이트를 하고 난 뒤, 그가 김옥길 총장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한다. "최양이 총장님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제 일생에 더 필요합니다.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8살 아래인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것은 비교적 만혼이라 할 그의 나이 서른둘일 때였다.

황인철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어떤 평계로든 짬을 내어 내 사무실에 놀러와고 문학하는 우리 친구들과 어울렸다. 물론 그는 한가하기는커녕 매우 바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그가 바쁘기 때문에 따로 볼일이 없는 내 사무실에 시간보내려 왔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는 피로를 풀고 싶었던 것이고, 힘든 정신적 싸움의 긴장을 카타르시스하고 싶었던 것이며, 드물게 우리의 의견이나 여론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그때그때 치르는 착잡한 일들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도, 그런 내막을 모르는 우리에게 알려줄 겸 자상하게 설명해주었던 것이고 우리들의 반응을 들어두기도 한 것이다. 전업작가여서 집에서 원고만 쓰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홍성원을 꽉 채우 가끔 드라이브나 짧은 여행을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어떻든 그는 내 사무실에 오면 나와 바둑두기를 즐겨했다. 그가 문학과지성사에서 해마다 정초에 여는 친구들, 문지 문학 후배들과 갖는 바둑대회를 열도록 권하고 거기에 좋은 바둑판을 기증할 만큼 바둑을 좋아했지만, 나와 두는 바둑을 그는 매우 재미있어하였다. 그와 나는 한번 시작했다 하면 일고여덟 판을 속기로 두곤 했는데, 호선으로 두는 그 바둑에서 내가 훨씬 더 많이 졌고 그래서 내가 약이 오르게끔 놀려먹는 것이었다. 그의 바둑은 힘있고 순발력이 좋으며 대세판단이 정확했고, 정직하게 말하면 나보다 반급 정도는 상수였다. 그는 특히 상급자에게 강했는데, 프로 기사에게 지도받은 덕인지 상수라 해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덤벼들었다. 1970년대 말 즈음이었는지 한국기원에 내분이 있어 민사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그가 기사들 편의 소송의뢰를 맡고 있을 때 치수바둑에서는 여간해서 지지 않는다는 조남철 사법과 다섯 점인가 놓고 대국하여 이긴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김학수 3단의 해설을 듣고 내가 그 판전기를 써서 바둑잡지에 실기도 했다.

바둑 외에 그의 기호는 특별하지 않았다. 물론 등산을 좋아했고 1960년대에 이미 지리산을 종주할 만큼 산도 잘 탔던 것 같다. 테니스도 즐겨했는데, 내가 등산이나 테니스 등 육체적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그와 이런 쪽으로 함께한 시

간은 별로 없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의 그의 공적인 분주함 때문에 그는 등산이나 테니스를 자유롭게 즐길 여유가 없었다. 대신 그는 늦게 운전을 배워, 울적하고 답답할 때 가끔 가족이나 친구를 태우고 시외로 드라이브를 하곤 했는데, 지난 6월 말경 친구들과 지리산을 승용차로 돌 때, 두어 해 전 황인철 부부가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이곳을 드라이브했다는 말을 듣고서 나는 감회에 젖은 적이 있었다. 그의 형편이나 그의 주변으로 보아 골프를 칠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에는 완강했고 혹은 무관심했다. 우리 친구들이 골프에 대해서는 일종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내가 문학과 지성사를 맡은 이후 몇해 동안, 친구들이 일종의 친목계처럼 매달 부부동반으로 돌아가며 집에서 희식을 했는데, 그때 남자들이 모여 한 것이 포커였다. 그도 이 포커판에 으레 끼었는데, 여홍이라는 것에 맞게, 그가 이 놀이에서 즐거워한 것은 돈을 따고 잃는다는 것 자체보다 그려는 동안의 장난기 많은 아이들처럼 떠들고 웃고 신나하는 놀이의 흥겨움 자체였다. 흥겨움을 즐긴다는 것은, 잘 마시지도 많이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담배를 태우기도 하고 끊기도 잘해서 열심히 연기를 뿐어대는 나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술에서는 나와 비슷한 정도로 약했다. 그럼에도, 되도록 술자리를 피하는 나와는 역시 달리, 유쾌하게 술좌석의 분위기에 어울리곤 하던 것이 그 분위기의 즐김 때문이었을 것이다. 술을 마시며 다른 친구들처럼 노래부르는 적은 거의 없었지만, 부담없이 자유롭게 말과 웃음이 오갈 수 있는 화해로운 자리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도 풀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데서 그는 큰 격려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의 그의 화술은 매우 정연했다. 그가 맡고 있는 재판이든 인권침해사건이든 혹은 아들의 자폐증이나 그밖의 어떤 화제든, 그는 그 배경과 구체적 경과와 결과 등을 차근차근 마치 체계적으로 정리한 메모를 들여다보며 발표하듯이 자상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반복하거나 더듬거리거나 비약하지 않고 구체적이면서도 요연하게 하는 그의 설명은 일방적인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루 밝혀주어, 그의 이야기 한 자락으로 우리는 그 사건이나 재판의 전모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사건에 대한 그의 이해는 미세한 부분에서 까지 정확하고 그 견해는 공정하다.

그런 점은 그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나는 그가 다른 의사와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그때의 상태와 그에게 내린

의사의 조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속내를 모르는 내게 그 대화는 두 전문의간의 토의처럼 들렸다. 그럴 정도로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 있었고 문병간 우리들에게 마치 친절한 담당의사처럼 자상하게 설명해주곤 했다. 나는 그런 그의 화술의 재능이 그가 훈련받아온 변호사로서의 논리적인 수사법을 익힌 덕분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언젠가, 자신은 책을 매우 천천히 읽어야 된다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책을 빨리 읽는 김현에 대해 거의 두려움 섞인 부러움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천천히 읽는 대신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며 책을 읽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건들에 대해서나 자신과 그 아들의 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서야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리라.

나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문장으로서도 틀림없이 그런 그의 특징들이 드러났을 그의 글을, 정작 한 편도 보지 못한 것이다. 웬만한 사람이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썼을 일반적인 글을 그는 전혀 쓰지 않았다. 나도 때로 그에게 무슨 글을 부탁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평계로든 사양하는 그는 아마도 법률가로서 법률관계 외의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어떤 고집스런 결벽증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그는 항소이유서라든가 변론문 같은 글들을 술하게 썼을 것이고 또 실제로 “오늘밤 그걸 써야 하는데”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도, 동료와 후배 변호사들 혹은 판사인 그의 아우의 도움을 받고서도, 사후의 그의 유품에서 그런 글들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문집을 정리해서 간행해보려는 우리의 소망은 우선 포기되고 말았는데, 수많은 인권재판 기록들은 그 피고나 그들의 인권운동단체에서 빌려가 없어지고 법정에서도 변호사의 변론은 기록되지 않으며 혹 문장으로 작성된 변호사의 항고이유서나 변론문이 재판기록에 첨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기란 힘들다는 것이었다. 아마 우리의 법조계는 변호사는 말로 변론하며 글로 하는 관행은 아직 쌓여지지 않은 모양이다.

1970년대 초였던가 제1차 사법부파동이 났을 때, 판사들이 작성한 성명서의 문체가 이른바 문필가들의 그것과 다르면서도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워 내가 그에게 감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2년간의 판사시보 기간이 실은 문장수련기간이라면서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문장을 쓰기 위해 판사들이 얼마나 공들여 훈련받는가를 그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었었다. 하긴 수사학이 고대 그리스 적부터 변론술로 개발된 분야였으므로 그의 대답은 둘이켜보니 당연

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든, 끝내 그의 글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두고두고 유감이다.

정치에 대해서도, 그는 글쓰기 이상의 결벽성을 보였다. 그가 맡은 사건들 대부분이 정치나 권력에 관련된 것들이고 당시의 정황들이 거의 모두 정치적 배경과 정보를 알아야 하며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정치의 시대'의 것들이었으며, 그 자신도 정치에 대해 민감하고 정계의 숨은 소식도 많이 알고 있었으며 정치인들과의 접촉도 빈번했었다. 양 김씨가 대통령후보로 경쟁할 때 그는 두 후보를 만나 그들의 의중을 타진하고 후보단일화의 방안을 모색할 정도로, 나름의 행동반경 안에서 그는 현실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영등포 을구의 보궐선거 때는 주변으로부터 출마를 강하게 요구받았던 것 같고, 새로 정당이 생길 때면 가입을 끈질기게 권유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 일선으로 나서는 것에는 한결같이 그리고 완강하게 회피했다. 그 보궐선거에는 대신 다른 동료 변호사를 유도해서 출마토록 했으며, 정당은 물론 어떤 정치적 조직에도 기웃거리지 않았다.

그는 '정치'라는 영역 자체를 신뢰하지도 않았지만 그 자신이 그 속에 끼어드는 것, 그래서 스스로 정치인이 되는 것, 아니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심지어는, 어떤 불결감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변호사로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인권 변론에 억지로 끼어드는 사례를 들며 그 '지저분한 꼴'에 난더리를 냈으며, 그 자신이 옹호하며 지원한 재야 운동권단체의 일부 젊은이들이 정치적 처신을 하는 것에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끝까지 "판사는 판결로써 발언한다"라는 신조에 충실하며, 그 자신이 인권변호사로서의 금 밖으로 자신의 인권운동을 확장하는 것을, 더구나 현실정치권에 들어 그려는 것을, 조심스레 그러나 완강하게 물리쳐왔던 것이다.

황인철이 자신의 암을 알게 된 것은 1989년 말쯤이었을 것이다. 감기도 자주 않았지만 아마도 신경성으로 말미암은 설사도 잣았는데, 그는 이즈음 특별한 사유없이 길게 설사병에 시달려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로 밝혀진 것이 직장 암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앞서 암진단을 받은 사람이 20년 전 함께 참여한 문학과지성사의 편집동인인 김현이었다. 비슷한 때 암과 투병해야 할 두 사람은 그러나 자신들의 병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다.

김현은 매우 절망적인 예감을 가졌고 그래서 심히 초조해했고, 그것과 싸우

기 위해 양의는 물론 한의와 민방의 조치를 취했으며 기도원에도 갔고 목사의 암수기도도 받았지만, 황인철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강남성모병원의 주치의에게만 맡기고, 여유있게, 어찌 보면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병을 연구하고 다스렸으며 어떤 마지막을 예상하지 않았었다. 같은 친구임에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 우선 김현은 간암은 초기 증세라지만 간경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어 훨씬 치명적이었고 황인철은 암의 환부가 다른 곳보다 치사율이 상당히 적은 직장이어서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예감의 정도가 달랐을 것이다. 더구나 김현은 어머니와 두 형님이 간암으로 1980년대 전반에 잇달아 돌아가셨고 그래서 40대로 들면서 그는 그의 유고로 사후에 발간된 『행복한 책읽기』에 되풀이 적은 것처럼 죽음에 대한 불길한 예감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인철은 그런 어두운 예감을 갖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게 자랐고 자신의 일들에 고통과 수고를 다하며 피로워하기도 했지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 그 확신은 그가 두 번의 암 수술과 장폐색, 대상포진 등 여러가지 병발증에 시달리며 혹은 견디기 힘든 통증을 참아내면서 드디어 운명하기 전까지 지니고 있었고 그 신념을 그의 부인에게도 확고하게 심어주었다. 운명에 대한 예감의 차이가, 그래서 한편은 예민하고 조급하게, 다른 한편은 조용하고 느긋하게 만든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차이는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김현이 문학인, 그것도 심리분석에 뛰어난 비평가여서 자신의 내면과 육체에 대해 섬세한 반응을 보여온 것에 반해 황인철은 생활태도와 대인관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육체와 내면, 그리고 병에 대해서도 대범했고 침착했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는 그랬다. 언젠가 그는 일본의 여류작가 소노 아야꼬의 글을 읽고 죽음에 대한 그녀의 경건한 종교적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술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륜이 그리 깊지 않은 그의 카톨릭 신앙에서 온 것이든 평소의 그의 내면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든 나는 그런 그의 태도를 새삼 다시 바라보았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다른 부위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 누구나 공포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암과 그 수술을, 그는 마치 맹장염쯤 걸려 수술받듯 가벼이 생각했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다루었다. 1990년 1월 그는 첫수술을 받았고 담당의들은 그 결과에 대해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으레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방사선치료라든가 항암주사라는 것도 그는 받지 않았고, 약간의 식이요법 외에는 다른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여름쯤부터는 사무실에 나가 임수경제판도 담당했고 여가를 많이

가지며 인근에 나들이도 했다. 그즈음 나의 사무실에도 더 자주 왔고 바둑을 더 많이 두기도 하며 정말 그의 생애에서 모처럼 한가하게 지냈다. 그러나 그 안온함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새해 초로 들면서 그는 다시 입원했고 첫수술을 받은 지 꼭 1년 만에 같은 부위를 재수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몸밖에 인공항문을 만드는 시술을 받았고 방사선치료에 항암주사를 맞는 등 철저한 조처를 받았다. 물론 그 후에도 그랬지만 이때도 그는 자신의 병과 자신에게 내려진 치료들, 조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자상히 설명해주곤 했다. 그가 자기 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다고까지 김주연이 말할 정도였는데, 그 자신은 그가 맡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세세히 말해줄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했으며 마치 자신의 병을 손안에 놓고 즐기는 듯한 여유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첫수술 때와는 달리 두번째 수술 후에 그처럼 갖가지 항암조처를 취하고 있는데도 조금씩 병발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두번째 수술 후 1년 만인 그의 첫번째 생일이었던지, 부부가 사람들과 피해 조용히 지내자며 인천에 갔다가는 장폐색이 일어나 급히 서울로 되돌아와 입원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장을 잘라내기도 했으며 통증에 시달려 여러가지 진통제를 쓰기 시작했고 진통을 위한 혈관주사도 맞았으며, 그래도 일시적인 보면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 연세대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제거 수술까지도 받았다. 그는 암은 완전 제거되고 통증만 없앨 수 있다면 완쾌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떤 새로운 상태들에 부닥쳤는지, 크고작은 수술들을 몇번이나 받았는지, 그가 어떤 치료를 취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일본에 가서 쓰쿠바대학의 조처를 받으려 했지만, 현지사정 때문에 아주 실망하고 되돌아온 적이 있었고, 연줄이 닿는 재미 한국인 의사들에게 기록들을 주어 검토를 부탁했으나 가능한 조처를 잘 받았다는 회답 외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것, 통증치료를 위해 중국의 침술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뾰족한 소식을 얻지 못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다. 그는 양의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법도 써보았다. 별침도 맞아보았고 헹거리제 항암예방 약물도 복용했으며(나는 1992년 여름 베를린에 간 기회에 그 약을 구했는데, 동행했던 김주연은 부다페스트에서 그 약을 살 때 그것은 식품점에서 팔았다 한다), 마지막 몇달 동안은 윤보선 전대통령의 미망인 공덕귀여사 소개로 평창동에 있는 사설 실험종양연구소에서 항암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는 백낙청의 주선으로 이 방면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권오춘씨의 염력(念力)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배방의 노력과 조처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기운은 줄어갔다. 70킬로그램을 훨씬 넘던 그의 체중은 40킬로그램 남짓으로 줄었고 집안에서 주로 누워 지내던 그는 지팡이를 짚어야 걸음을 옮길 정도로 힘이 빠여 있어서 운동삼아 길 건너 가까운 가게에 가는 데도 이삼십 분이 걸렸다고 했다. 통증은 여전했고 그 때문에 잠을 못 잤으며 음식도 조금씩밖에 먹지 못했고 그나마 잘 소화를 해내지 못했으며 기력은 그래서 더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먹고 자고 움직이는 일은 더욱 못하게 되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말년의 그는, 여전히 태도는 흐트러짐이 없고 표정은 온후하며 눈빛은 전보다 더 맑아져 있었지만, 육체는 끔찍할 만큼 졸아들어버렸고 목소리는 좀더 나약해져 있었다. 그는 즐겁게 웃는 대신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가끔 참는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으며 앓아서 우리를 대하려다가는 곧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이렇게 쇠락해가는 그를 보고, 김치수의 부인은 그가 가장 가까이 모신 바 있었던 김옥길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직장암으로 투병하며 결국 작고하기까지의 과정을 황변호사가 그대로 치르고 있다며 아주 절망적인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인철 자신은 장폐색 수술 때 확인했다며 의사가 장담하여 해준, 암은 재발되지 않아 깨끗하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통증만 제거될 수 있다면 식사든 잠이든 제대로 취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어 회복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그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는 그가 기동을 못하게 되면서 아마 닷새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연희동 그의 집으로, 때로는 영양주사나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강남성모병원으로 문병을 갔고, 천연스레 이런저런 세상이야기와 친구 소식들을 전하기도 하며 그가 받는 치료들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부인으로부터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그는 매우 외로워했으며 사람들의 내방을, 힘들어하면서도 반겼고, 더 자주 들려주리라고 믿던 친구가 뜻하다는 것에 무척 섭섭해했다는 것이었다. 그 외로움이 어느 만큼이었는지는, 아우들 몇몇이서 함께 문병오자, 그들이 나누어 윤번체로 오도록 당부했다는 데서도 짐작되었다. 염력 치료사인 권오춘씨가 그의 치료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그도 그분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듯했지만, 아마도 매일 그의 집으로 와서 한 시간쯤 편하게 상대해주었던 권선생에 의해 그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치료 자체

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즈음의 그는 항암치료 관계 자료들을 보고, 카톨릭 책도 머리맡에 여러 권이 놓여 있었다. 나는 통증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 나름대로 궁리한 끝에 추리소설 몇권,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전자게임을 구해주기도 했는데, 그는 고마워하긴 했지만 별로 읽거나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하긴 그 정도로 그의 통증이 잊혀질 수 있다면, 그가 가끔 상을 찡그리며 참으려 한다거나 한밤에 그 아픔 때문에 잠을 깰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럴 만큼 그의 외로움과 아픔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심했던가 보았다. 그랬기에 내가 그냥 병문안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의 불편을 염려하여 오래 앉아 있지 않았던 일을 후에 무척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1992년 가을쯤부터는 그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차츰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죄악의 사태를 당하리라는 생각은 차마 하지 않았고 되도록 그런 예상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예상이었다. 적어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해도 서양 사람들처럼 가령 유서나 유언 같은 것으로 준비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하곤 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런 판행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라도 그런 준비를 해놓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런 막다른 것으로도 보일 그런 권고를 그의 부인에게까지도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 만약의 경우를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있는 참에, 그런 류의 권고를 해서 그가 의기소침해져 투병의지마저 꺾일 것이 두려워진 것이었다. 서우석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주치의든 가족이든, 소생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는 환자에게 통고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나는 결국 황인철의 경우에 비추어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혼수상태에 빠져 더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병원 복도에서 만난 그의 아우 황인행 판사에게 만약의 경우에 대해 가족들이 어떤 준비를 해두었는가를 물었었다. 그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오래 전부터 그의 회복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되었지만, 완쾌되리라는 확신을 형님 부부가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 도저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우리의 각오보다 너무 빨리, 그 자신이 준비할 새도 없이 와버렸다.

내가 그의 집으로 마지막 문병을 갔던 것은 1992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전 날쯤이었을 것이다. 그는 통증을 참노라 가끔 얼굴을 찡그리고 밤에도 그 아픔

때문에 몇번이나 깨어 약을 먹어야 했다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화롭고 관대했다. 그리고 그는 아마 40킬로그램 미만으로 체중이 떨어지고 식사도 할 수 없어, 가누기도 힘들 만큼 쇠약해진 그의 몸에 영양주사를 맞을 겸, 연말연시의 수선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전에도 정례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곧 입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의식있을 때 그와 가진 마지막 만남이었다. 아니 기억이 분명치 않다. 집으로 병원으로 그에게 자주 갔고 그래서 그를 보고 몇십 분 앉아 이야기도 하며 그의 용태를 살피기도 하는 그 과정과 내용이 너무 비슷하게 반복되었고 그리고 그때의 심방도 그만큼 심상했기 때문에 아리송해진다.

아마 해가 다 가기 전에도 한번쯤 더 깨어 있는 그를 보았을 것도 같다. 어떻든 해가 바뀐 정월 초하룻날 나는 형님댁에 세배를 하고 오는 길에 새해인사를 할 겸 강남성모병원에 들렀고, 그는 잠이 들었든가 약한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든가 해서 말은 나누지 못하고 그의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고는 돌아왔었다. 사나흘 후에 그의 병실에 갔을 때도 여전히 그의 혼수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의 용태는 갑작스레 더 나빠져 있었다. 그는 코와 손목 등에 튜브를 세갠가 꽂고 주사를 맞고 있었으며 입에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머리는 형틀어지고 수염은 더부룩했으며, 거칠게 안간힘을 쓰는 숨을 힘들여 쉬고 있었다. 입원한 그가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에서는 평소보다 센 진통제 주사를 놓았는데, 그의 육체가 너무 쇠약해져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혼수에 빠진 것이라고 부인이 설명해주었다. 의사들은 그가 깨어날 수 있을는지 장담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깨어날 가망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증상은 겉보기와 달리,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의 명은 경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 각오를 해야 할 것이었다. 나는 더 자주 그의 병원에 갔고 매년 정초마다 가져온 문학과지성 동인과 문학과사회 동인들의 간담회 일정을 유보하며 그의 동태를 기다렸다. 그의 혼수상태는 의외로 길었다. 1월 중순쯤 낮에 갔던 그의 병실을, 아무래도 불안해,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다시 가서 그의 다름없는 용태를 살피고 왔었는데, 아내는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의외로 그가 오래 견딜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황변호사 숨소리가, 지금 포기하면 안된다는 듯, 결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듯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들려왔거든요.” 나는 제발, 운명에 저항하는 그 강인한 힘이 결국에는 이겨내서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나는 그가 죽으리라는 것, 그가 이 세상에 없어지리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 그와 비슷한 때 같은 암 진단을 받은 김현이 반년 남짓의 투병 끝에 덧없이 운명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다시 황인철마저 사라진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속에서 다시 그와의 마지막 외출이 회상되었다. 1991년 이른 봄의 어느 주말이었을 것이다. 두번째 암수술에서 얼마만큼 회복된 그와 나는 김치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주 한가한 마음으로 우리집에서 멀지 않은 서오릉에 갔고, 사람도 거의 없는 그 넓은 공원 안을 산책하며, 종이컵으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한답을 나누기도 했다. 봄햇살이 포근하고 공기도 맑았으며 나무들은 이제 막 잎들이 돋기 시작하는 듯 따뜻한 녹색 기운을 펴뜨리고 있었다. 다시 내 회상이 애틋해진다. 그때가 겨울 같기도 하고 가을 같기도 하며 화창하지 않고 옅은 구름으로 음울한 날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다. 내 기억이 틀린 것은 아닐 것이고 그 기억을 윤색한 그 분위기가, 회상의 정황에 따라, 황량하게도 환하게도 만드는 것 같다.

어떻든 그때의 우리는 평범한 얘기들을 했을 것인데도 나는 막막하고 아득한 감회에 젖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 어떤 운명적인 것에 대한 느낌들을 서로 말없이 나누고 있었다는, 침중한 기분에 젖어 있었던 것으로, 그 자리가 실제 와는 관계없이 추억 속으로 떠오른다.

이것이 그와 마지막으로 보는 바깥 풍경이라는 생각은 차마 못했겠지만, 쓸쓸하면서도 아득한, 환히 열려 있으면서도 침울한 이 모습이나마, 과연 우리가 다시 어울려, 가볍고 열린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는지, 그럴 가능성에 대한 희망 없음에, 나는 절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막막하고 아득한 감회가, 따사로울 봄빛에 어둡게 투영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의 회상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가 보았다. 우리는 내친 김에, 그가 대하군을 비롯한 자폐아들의 계명복지생활관을 건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금촌으로 드라이브를 했고, 폐가를 헬어 어떻게 건물을 짓고 시설할 것인지 그의 계획을 들었다. 그러나 나의 심중은 좀체로 펴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고, 피곤해하면서도 모처럼의 외출을 즐거워하게 된 그를, 김치수가 집으로 데려다주었을 것이다.

1993년 1월 20일 오전. 나는 사무실에서, 오후에는 그의 병실에 가보아야지하고 근래 들어 더욱 조마조마해진 마음을 누르며 의례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 “황변호사님이 11시 37분에 운명하셨답니다”라고 직원이 전했다. 돌연 나의 머리속이 텅 비고 눈앞이 하얘졌다. 마침내… 아아, 마침내! 각오하고, 그래서 대기상태에 있어왔음에도, 그 말은 벼락처럼 내게 들려왔고 내 가슴속을 때려왔다. 나는 직원들에게 그의 부음을 문학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지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영안실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 그의 병실로 갔다. 그의 부인과 가족들, 그리고 가족 아닌 사람으로 그의 운명을 유일하게 지켜보았던 김정남, 급히 연락을 받고 쫓아온 홍성우 등 등이 있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오열을 누르며, 그의 침대로 다가갔다. 아, 그의 얼굴, 그의 표정. 내 생애 처음 보는 한 주검의 용자가 그렇게 조용하고 맑고 평화스러울 수가 있을까. 여기저기 꽂혀 있던 주사바늘도 걷히지고 수염도 깎였으며 머리도 단정했다. 얼굴을 곱게 씻어준 모양이었다. 쉼없이 눈물을 닦던 그의 부인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젠 통증도 없고 피로움도 없어졌겠지요.” 나는 서양 사람들이 명복을 빌며 “평화 속에서 안식하기를(Rest in Peace)”이란 말의 진의를 비로소 이해했고 그 말로 그와의 마지막 이별을 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나는 눈을 닦고 이승에서 다시 못 볼 그의 얼굴을 오래, 친절히 바라보았다. 아직 체온이 남아 있어 눈만 감고 있는 듯 평온하기만 한 그 얼굴을 본 시간은 정작 긴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내게 한없이 길게 느껴진 것은, 그의 빈소에서, 그의 장례를 치르며, 안성의 그의 산소에서, 그리고 그 후 이어진 여러 날들을, 문득문득 회상에 빠지면서, 줄곧 그의 마지막 얼굴을 내 눈앞에 떠올려 가지고 다닌 때문일 것이었다. 그 얼굴은 아플 때의 그의 모습보다 담담하고 정직했으며, 그 안색은 건강할 때의 그보다 깨끗하고 단정하며 편안했다.

그는 그렇게, 생일을 며칠 앞두고 만 53년의 생애를 마감했으며 그의 이름을 얻어 영세를 받은 성세바스티아노의 승천일에, 바로 그날을 기다려 그 순교자가 기다리는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

구정을 앞둔 이른 아침인데도 5백 명은 참석했을 명동성당에서의 그의 영결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황인철의 아들 준하군의 절규로써 강론을 풀어나갔다. 이제 겨우 열네 살인 막내는 “우리 아빠는 더없이 훌륭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아빠를 먼저 데려가셨는가요”라고 울음젖은 질문을 던졌고 빈소에서, 그 말을 들은 추기경은 예수의 십자가 못박힘 아래

끊임없이 제기된 이 아포리아에 대한 대답을 그의 어린 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해서도 새삼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우리 카톨릭 교회사상 가장 뛰어난 분일 김수환 추기경의 설교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의로운 분으로서 바로 자신의 수난을 통해 이 세상의 의롭지 못함과 의로운 사람의 존재의 뜻을 증거해주셨다. 고통을 통해 평화가, 싸움을 통해 공의가, 죽음을 통해 사랑이 살아움직인다. 황변호사를 일찍 불러가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슬픔을 통해 참다움의 옳은 뜻을 우리에게 실현시켜주신다. 아니, 먹먹해진 귀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던 참에, 추기경의 그 강론을 대충 내가 그렇게 새겼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도 그를 위한 추도사에서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분은, 결코 길지 않은 그의 진실된 생애를 통해, 이 세상이 얼마나 배람과 설움으로 범벅되어 있는가를 증거해주었고,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의 한스러운 죽음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이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음을 밝게 밝혀준, 당신의 진정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너무 자주 만났으며, 그래서 그 본모습을 거리를 두고 바로보기 힘든 처지였음에도, 그의 생애, 그가 해온 일들, 그의 인품, 그와의 사귐들에 대해, 내가 그에게 바친 경모의 말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이야말로 “자신의 감동적인 생애를 통해, 불의와 어떻게 싸우며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름다운 본으로 보여준 고결한 정신”이었다. . . .

나는 평소의 나의 글쓰기와는 달리, 이 글을 매우 천천히,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거의 한 달 동안에 걸쳐 써왔다. 기억은 생생하고 그것을 되살려내는 감정들은 절절하지만, 그 심정은 막막하고 출거리는 산만했으며, 그것을 기록하는 내 글도 함께 문란해져버리고 말았다. 내가 이처럼 느리게 글을 쓰게 된 데는 날짜의 마감도, 길이의 제한도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렇게 쓰는 동안, 그에 대한, 그와의 회상을 즐기고 있었다. 즐기다!라는 말을 나는 사실없이 쓴다. 회상이란, 그 정황이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돌이켜 떠올리는 사람에게는 감미롭고 따뜻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년기의 아주 조그마했을 때의 아득한 환한 즐거움으로부터 불과 여섯 달 전의 참담한 비탄에 이르기까지, 한창 때 겪고 치르던 괴롭고 숨 가쁨으로부터 우리들끼리의 그 따뜻함과 유쾌함 혹은 잔잔함,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서가 아니라 감미로움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었고, 나는 이 글을

쓰는 동안 아쉬운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소وت한 다정함에 젖어 있었다. 아아, 그 다사로움, 따뜻함… (1993. 7. 29)

\* 필자의 추기 : 나는 이 글을, 누군가가 읽게 된다면, 황인철의 동료 법조인이기보다, 당연히 문학 쪽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썼었다. 이석태 변호사의 주선으로 ‘민변’의 기관지에 실리게 되는 것에, 작고한 친구와의 우정으로 동의했음에도, 혹 동료 변호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나의 사사로운 관계에 대한 회상에서 나온 것이며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이 그 전제였음을 거듭, 이 발표의 자리를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사의와 함께, 밝힌다.(문학평론가, 문학파 지성사 대표)